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운영]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2014. 9.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Daejeon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Center

- 목 차 -

제1장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개요	3
제1절 운영 개요	3
1.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이란	3
2. 2014년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의 특징	3
3. 2014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4
4.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 과정	5
5.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적용 지표	10
제2절 활동 내용	22
1.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1차 워크숍	22
2.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2차 워크숍	22
3.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3차 워크숍	25
제2장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	33
제1절 공원	33
제2절 방문건강관리사업	119
제3절 평생교육	169
제4절 지킴이사업	215
부록.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양식	299

제 1 장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개요

제1절 운영 개요

제2절 활동 내용

제1장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개요

제1절 운영 개요

1.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이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의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은 2012년부터 실시하여 2014년도까지 3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음. 2012년, 2013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은 성인지적 관점을 활용하여 시민 준전문가 집단이 실행하는 현장형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정책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해보는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은, 성별에 따른 정책 사업 수혜 현황 및 욕구 파악과 성평등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사업 집행 방법의 모색을 고민하였음.

정책의 집행자인 공무원이 실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 모니터링은 공무원이나 전문가처럼 정책 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는 없으나, 정책 사업 현장에 나가 직접 수혜자들 및 수행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들이 내놓는 정책 개선안을 성인지적으로 생각해 보고 정리하는 특징을 가짐.

2. 2014년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의 특징

이번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요청에 따라 대전지역의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한 이행점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 모니터링의 특징을 지님.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함께 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음.

이번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은 첫째, 2012년에 작성된 대전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성평등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특정 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성평등 조치사항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시민 모니터단의 심층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개선안 제시 등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음.

이에 대전지역의 시민 모니터단을 모집한 뒤, 관련 교육을 수료한 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음. 이번 모니터링은 시민 준전문가 집단에 의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이행점검 환류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현장에서의 참여와 관찰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정책 개선안까지 제안하도록 추진함.

3. 2014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1) 목표

- ① 2012년도에 작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점검 현황 파악
- ② 시민 모니터단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심층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정책 개선안 제시

2) 추진방향

- ① 2012년도에 작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추진과정에 대해 점검 :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기본 절차의 준수 여부
- ② 시민 모니터단에 의해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제시된 성 평등 조치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점검
- ③ 시민 모니터단에 의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사업담당자 및 사업 이용자 인터뷰 등 참여와 관찰을 통한 심층 모니터링 실시 : 대전시민의 성별 요구가 적절히 반영하여 성 평등 조치사항이 도출되었는지를 모니터링
- ④ 시민 모니터단은 ③번의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개선안 제시

4.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 과정

1)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진행과정

주체	내용	역할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단 모집(3~4월)	모니터단 발굴 및 모집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 & 대전광역시	모니터링 대상 사업 선정(3월)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중 모니터링 시범사업 선정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모니터링 지표 개발(3~5월)	대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교육 운영(4월)	모니터단 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교육 지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 모니터단 & 대전광역시 및 5개 자치구 & 대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단 활동(5~6월)	모니터링을 위해 해당 기관 협조공문 발송 및 모니터링 대상 기관 섭외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1차 워크숍(5월)	모니터단과 모니터링 대상사업 별 지표 수정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2차 워크숍(6월)	모니터단, 전문가, 연구진이 참여하여 모니터링 활동 중간 점검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 & 대전광역시 및 5개 자치구 & 대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3차 워크숍(7월)	모니터단, 전문가, 연구진, 담당 공무원, 기자 등이 참여하여 모니터링 활동 결과 보고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 모니터단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작성(6~7월)	· 센터 : 활동보고서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작성 · 모니터단 : 성평등조치사항 이행점검 및 심층분석 등 작성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발간(8월)	모니터단이 작성한 활동보고서 취합 후 보고서 발간

2) 모니터단 모집

- 모니터단 모집기간 : 2014년 3월 ~ 4월
- 참여대상 :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많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의 성평등을 위해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참여할 대전시민으로서
 - 성 주류화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한 자
 - 혹은 유관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됨.

〈표 1〉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단 구성

구성 및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참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제안 :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지표 개발 :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 협조 : 대전광역시 및 5개 자치구, 대전광역시 교육청
모니터링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광역시 거주, 대전시 정책 및 성 주류화 확산 전략에 관심이 있고, 모니터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 10명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대상 사업 선정 개요

(1)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대상 사업 선정 과정

①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 : 383개

- 정책개선안 제시 여부 분석
- 정책개선안이 제시된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안 내용 분류하기(법령, 예산,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에 대한 개선안으로 구분)

② 심층 모니터링 대상사업 선정 회의

- 참여 기관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의견 수렴 :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지역 전문가 등
- 모니터링 대상 사업 분야 선정

(2)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대상 사업 선정 기준

- ①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작성된 사업
- ② 남녀노소에게 사업 수행의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되는 사업
- ③ 성별영향분석평가가 5개 자치구에서 작성된 사업
- ④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언론에서 거론된 이슈와 관련된 사업

(3) 심층 모니터링 대상 사업 선정 결과 : 4개 분야 19개 사업

기관	심층 모니터링 대상 사업
대전광역시	공원녹지조성(도시숲 조성) ¹⁾ 평생교육지원 및 협력
동구	어린이공원조성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평생학습 자치대학 운영
중구	공원조성 및 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 평생교육지원(평생학습체계구축.평생학습)
서구	산림서비스등산로 정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명품서구자치대학운영
유성구	시민휴식공간 조성 가족보건관리(방문건강관리사업) 유성평생학습문화센터(가칭) 설치
대덕구	도시공원조성(공원 업그레이드 및 노후공원 재정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창조지역사업 배달강좌제
교육청	학생생활지도(배움터지킴이 운영) 학생생활지도(꿈나무지킴이 운영)

4)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단 교육 프로그램

- 일시 : 2014년 4월 17일(목) ~ 18일(금), 22일(화) 13시 ~ 17시(1일 4시간, 총 15시간)
-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단 10여명
- 교육 프로그램

1)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이행점검을 시작하면서, 사업계획서 취합 당시 건설초기단계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 됨.

시기	프로그램	내용
4.17 (목) 1일차	1. 성 주류화 제도의 이해(50분)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지표 이해하기(50분)	• 법령 및 계획,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지표 이해하기(2012년도)
	3.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50분)(50분)	• 실제 작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둘러보기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우수사례
	4. 이동편의성 증진과 교통정책에 대한 이해	• 교통정책이란 무엇인가 • 교통정책 우수사례 살펴보기
4.18 (금) 2일차	5. 모니터링 대상 사업의 이해 I (50분)	• 도시계획 및 공원정책에 대한 이해
	6. 모니터링 대상 사업의 이해II(50분)	• 자치행정정책에 대한 이해(평생교육 중심으로)
	7. 모니터링 대상 사업의 이해III(50분)	• 학교안전정책의 이해(배움터.꿈나무지킴이 사업 중심으로)
	8. 모니터링 대상 사업의 이해IV(50분)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노인건강사업 중심으로)
4.22 (화) 3일차	9. 모니터링이란(50분)	• 모니터링 활동과 목적 • 모니터링 과정에 관한 이해 :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모니터링의 연계
	10. 모니터링 지표의 실제 활용법(50분)	• 모니터링 지표 활용 및 설명 • 모니터링 지표 활용 방법 토론
	11. 모니터링 실습 I (50분)	• [사업 내용 및 수행방식 등]의 정책개선에 대한 모니터링 실습 및 활동가 토론
	12. 모니터링 실습II(50분)	• 모니터링 팀 구성 및 활동방향 논의

5) 이슈별 팀 구성 및 활동

① 팀 활동 내용

- 관심있는 이슈별 사업의 모니터링 활동가를 중심으로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활동 실시
- 정책 사업 실행 현장 1회 이상 방문 원칙
-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사업 체험 및 정책 이용자의 경험 공유
-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이행점검을 확인하고 사업 담당자와의 인터뷰 실시

②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단 특성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단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대전지역에서 여성단체 및 기관 관계자, 여성정책 연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중 7명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2012년부터 시행한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에 참여한 활동가로 구성되어 있음.

〈표 2〉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단 구성

모니터링 대상 사업	모니터단 ²⁾	모니터링 대상지역
공원	2명	5개 자치구 공원
방문건강관리사업	2명	5개 자치구 보건소
평생교육	2명	대전시 및 5개 자치구 평생교육관련 기관
지킴이사업	4명	대전지역 초, 중, 고, 특수학교 등 9개교 및 1기관

6) 모니터링 방법

- ① 문서 등 내용 점검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내용, 홍보물 관련 등의 문서 내용 점검
 - 사업 담당 기관(대전시 및 자치구, 교육청)의 사업계획서 요청 : 전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성평등 조치사항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점검
 - 관련 사업 인터넷 검색
 - 현장 방문 시 비치되어 있는 홍보물 점검
- ② 현장 확인 : 시설 및 환경 관찰
- ③ 관련자 면담 : 사업 담당 공무원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 ④ 모니터링 활동 내용 및 분석을 토대로 활동보고서 작성

2) 시민 모니터단 주요 경력

모니터링 사업	활동가 수	주요경력
공원	2명	· 충남대 박사과정(사회학)
		· 전)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 기획팀장 · 현) 충남대 박사과정(사회학) · 2012년, 2013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방문건강관리사업	2명	· 해천대학 사회복지과 겸임교원 ·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 · 2012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 약학박사 · 충남대 여성정책연구소
평생교육	2명	·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사무처장 · 2012년, 2013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 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전지부 사무국장 · 현) 에너지를 생각하는 학부모 회원 · 2013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지킴이	4명	· 대전여민회 공동대표 · 2012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사무국장 · 2012년, 2013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 대전여민회 활동가 · 2012년, 2013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 구세군 정다운집 사무국장

5.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적용 지표

1)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지표 개발 개요

- (1) 지표 개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2) 지표 개발 목적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평등 조치사항에 대한 정책 반영 정도를 점검하고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해 시민 모니터단을 통한 심층 모니터링의 기준을 마련
- (3) 지표 구성 내용
 - ① 지표 내용은 사업 개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등으로 구성됨.
 - ② ‘사업 개요’ 지표는 모니터링 사업의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사업 내용, 실적, 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작성된 성 평등 조치사항 등으로 구성됨.
 - ③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지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 절차 적정성, 분석평가 충실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④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지표는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점검’ 지표와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등으로 구성됨. 첫 번째,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점검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제시된 성 평등 조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어 실행되었는지를 살펴봄. 두 번째,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은 시민 모니터단이 모니터링 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현장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것임.
 - ⑤ ‘모니터링 결과’ 지표는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지표와 ‘제언’ 등으로 구성됨. 첫 번째, 성평등 조치의 타당성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제시된 성 평등 조치사항이 타당성을 분석해봄. 두 번째 제언은 시민 모니터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정책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음.
 - ⑥ ‘성 평등 조치사항의 심층 분석’ 지표는 모니터링 대상 사업인 공원, 방문건강관리사업, 평생교육, 지킴이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됨.

〈표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지표 구성 내용

모니터링 대상사업	공통 지표	사업별 특성 반영 지표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 모니터링 결과 (성평등 조치의 타당성, 제언)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참여, 접근성, 안전 영역으로 구분하여 적용
방문건강관리사업 ³⁾			참여, 접근성, 서비스제공자 근무여건 영역으로 구분하여 적용
평생교육			참여, 전문성, 접근성, 다양성, 연계성(대전, 서구만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적용
지킴이사업			위상, 선발, 직무 영역으로 구분하여 적용

(4) 지표 수정 절차

- ① 연구자 회의를 통해 지표 수정
- ②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1차 워크숍을 통해 시민 모니터단의 의견 반영

3) 중구, 대덕구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업으로 5개 자치구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상사업으로 선정됨. 이에 모니터링 지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지표가 삭제되고, 사업 개요, 사업 모니터링(참여, 접근성, 서비스제공자 근무여건 영역), 제언 등의 지표로 구성됨.

2) 지표 구성 소개

(1) 사업개요 작성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지표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었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어떤 분석을 근거로 어떤 개선안 내었는지 요약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지표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각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서 제시된 성 평등 조치사항		

⑤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분석

㉠ 공원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이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는가? (※ 단순 시설계획은 제외함)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또는 의견 수렴 단계가 있는가?		
		(그런 단계가 있다면) 어떤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그런 단계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은 어떠한가?	관련 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참여 비율은?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은?		
		여성 위원의 직업군은?		
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참여 장치가 있는가?	공원 관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장치가 있는가?			
	(그런 장치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가? 지역 여성들의 참여 비율은?			
	(그런 장치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접근성	공원의 물리적 환경이 돌봄 책임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는가? (※ 소규모 공원 제외)	. 유모차, 휠체어, 실버카 대여 서비스 (관리사무소 내부나 인근)		
		.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설치		
		. 장애인 화장실 설치 ※ 법령 확인 요		
		. 휴게시설(의자 등)의 규칙적 설치(200m 이내마다) (※ 200㎡ 미만 제외)		
		. Barrier-Free 보행로 : 보도폭 2m이상(최소 1.5m 이상),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 단차가 없거나 2cm 이하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근력 운동 관련 시설의 경우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분리 설치나 높이·무게 등의 조정 가능)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잔디)축구장 설치 시 게이트볼장 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그 밖의 부대시설 설치 시,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한가? (※ 어린이 공원 제외)	대중교통 시설에서 출입구까지 이내도보로 5분 이내—300m— 거리에 위치하여 누구나 이용이 용이한지 점검			
시설 이용 관련 불편사항 접수창구가 개방되어 있으며, 민원 대처는 신속히 이루어지는가?	불편사항을 고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창구(또는 관련 정보)가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되는가?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안전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적용되었는가?	· 야간 조도 (가로등은 20미터 간격이내 또는 3-4m 전방에 있는 사람 얼굴 인식)		
		· 안전한 시야 확보 여부 - 보행로에 개방된 조경 - 휴식공간의 시야확보 - 시설물 주변(화장실 등)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적용되었는가?	· 보호관찰이 용이한 위치에 놀이 공간 설치 여부		
		· 비상시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 설치 여부(대형 공원, 지하 주차장, 화장실)		
		· CCTV 설치 여부 (사각지대 방지에만 활용)		
		· 정기적인 순찰 여부		
	공원 내 설치 시설물의 안전 상태는 적절한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합격 여부(www.cpf.go.kr)		
		·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 여부 (2년마다 검사기관 정기시설 검사)		
		· 놀이터 안내판 : 놀이터 구조물이 2-5세 대상인지 또는 5-12세 대상인지 연령대별 놀이터 디자인 명시 여부		
		· 놀이기구의 안전성 여부 (파손, 돌출, 엇매이면 빠지기 힘든 구조, 충돌 방지 공간 및 낙하할 때 적정 높이)		
		· 벤치와 간이 정자 등 휴게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 방문건강관리사업

㉠-1(동구,서구,유성구 -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는 경우)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수립에 지역 여성 건강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가?		
	(참여한다면)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가?	※ 위원회, 자문단 등 서술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참여 계획이 있는가?		
접근성	관내 사업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자 및 생애전환기검진자 중 검진사후관리 동의자)에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가?		
	정보 제공 방식은 무엇인가?	※ 팸플릿, 홈페이지 등...서술	
	제공되는 정보에는 '검진사후관리 동의'해야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되고 있는가?		
사업 대상자는 성별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가	* 사업대상자인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별 성별 현황.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는 실적 보고서에는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 내 가구수, 등록가구수 현황이 있음.(성별 분리통계 상태는 아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프로그램별 (행태개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 건강문제관리, 다문화 및 이탈주민관리, 장애인 재활관리)성별 대상자 현황 차이가 있는가?		<p>_____ 프로그램남.명여.명</p> <p>_____ 프로그램남.명여.명</p> <p>_____ 프로그램남.명여.명</p> <p>_____ 프로그램남.명여.명</p> <p>_____ 프로그램남.명여.명</p>	
방문건강관리사업 조사(가구조사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보건복지부 실적보고 이외에 자체 모니터링을 의미	※ 가구조사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의 부록 참조		
	누가 모니터링 하는가?		
	모니터링에서 여성 건강문제 인식을 통한 사업개선실적이 있는가?		
대상자 재평가(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없거나, 미방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퇴락하는 대상자의 성별 현황 차이가 있는가?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내부 자원 연계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내부 자원 연계(대상자 기준) 남성 ()명,여성()명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프로그램별 (행태개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 건강문제관리, 다문화 및 이탈주민관리, 장애인 재활관리)성별 대상자 현황 차이가 있는가?		<p>_____ 프로그램남.명여.명</p> <p>_____ 프로그램남.명여.명</p> <p>_____ 프로그램남.명여.명</p> <p>_____ 프로그램남.명여.명</p> <p>_____ 프로그램남.명여.명</p>	
방문건강관리사업 조사(가구조사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보건복지부 실적보고 이외에 자체 모니터링을 의미	※ 가구조사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의 부록 참조		
	누가 모니터링 하는가?		
	모니터링에서 여성 건강문제 인식을 통한 사업개선실적이 있는가?		
대상자 재평가(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없거나, 미방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퇴락하는 대상자의 성별 현황 차이가 있는가?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내부 자원 연계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내부 자원 연계(대상자 기준) 남성 ()명,여성()명	
보건소 외부 자원 연계 대상에는 지역사회 내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고루 포함되어 있는가?		※ 연계 기관명 확인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외부 자원 연계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외부 자원 연계(대상자 기준) 남성 ()명, 여성 ()명	
		남성들에게 주로 연계된 서비스는 무엇인가?	
		여성들에게 주로 연계된 서비스는 무엇인가?	
		무력감과 우울 등의 정서적인 문제 관련 서비스 연계도 추진되고 있는가?	
서비스 제공자 근무 여건	전문 인력 채용시 저소득 및 무직 가구원(특히 여성) 우선 채용(사업지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간호사 1인당 관리 가구 수는 적정한가?	간호사 1인당 ()가구	
	요주의 대상자 방문 시 동행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동행방문여부 주요 동행자	
	다른 성(sex)의 대상자를 방문하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가?		
	가구 방문까지의 이동 여건은 적정한가?	주요 통행 수단 통행 수단 접근성	
	휴게 및 휴식 여건은 적정한가?		

㉠-1(중구, 대덕구 -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없는 경우, 사업 모니터링)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수립에 지역 여성 건강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가?		
		(참여한다면)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가?	※ 위원회, 자문단 등 서술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참여 계획이 있는가?	
접근성	관내 사업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자 및 생애전환기검진자 중 검진사후관리 동의자)에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가?	
		정보 제공 방식은 무엇인가?	※ 팜플렛, 홈페이지 등...서술
		제공되는 정보에는 '검진사후관리 동의'해야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되고 있는가?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p>사업 대상자는 성별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가?</p>	<p>* 사업대상자인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별 성별 현황.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는 실적 보고서에는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 내 가구수, 등록가구수 현황이 있음.(성별 분리통계 상태는 아님)</p>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프로그램별 (행태개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 건강문제관리, 다문화 및 이탈주민관리, 장애인 재활관리)성별 대상자 현황 차이가 있는가?	<p>프로그램별_영여_명 프로그램별_영여_명 프로그램별_영여_명 프로그램별_영여_명 프로그램별_영여_명</p>		
	방문건강관리사업 조사(가구조사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건복지부 실적보고 이외에 자체 모니터링을 의미	※가구조사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의 부록 참조		
		누가 모니터링 하는가?		
		모니터링에서 여성 건강문제 인식을 통한 사업개선실적이 있는가?		
	대상자 재평가(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없거나, 미방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퇴락하는 대상자의 성별 현황 차이가 있는가?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내부 자원 연계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내부 자원 연계(대상자 기준) 남성()명,여성()명		
	보건소 외부 자원 연계 대상에는 지역사회 내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고루 포함되어 있는가?	※ 연계 기관명 확인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외부 자원 연계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외부 자원 연계(대상자 기준) 남성 ()명,여성()명		
		남성들에게 주로 연계된 서비스는 무엇인가?		
		여성들에게 주로 연계된 서비스는 무엇인가?		
		무력감과 우울 등의 정서적인 문제 관련 서비스 연계도 추진되고 있는가?		
서비스 제공 자근 무 의견	전문 인력 채용시 저소득 및 무직 가구원(특히 여성) 우선 채용(사업 지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간호사 1인당 관리 가구 수는 적정한가	간호사 1인당()가구		
	요주의 대상자 방문 시 동행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동행방문여부 주요 동행자		
	다른 성(sex)의 대상자를 방문하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가			
	가구 방문까지의 이동 여건은 적정한가	주요 통행 수단 통행 수단 접근성		
	휴게 및 휴식 여건은 적정한가			

㉔ 평생교육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적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는가?	
		(절차가 있다면) 어떤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절차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주민을 참여토록 할 계획이 있는가?	
	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과정은 누가, 어떻게 모니터링·평가하는가?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진다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주민 참여 모니터링·평가 실시 계획이 있는가?	
전문성	프로그램의 강사진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강사 선발 기준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며, 관련 자격 요건은 구비되어 있는가?	
		강사 구성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강사로 참여하는 데 성별에 따른 제한 요소는 없는가?	
	프로그램의 강사진에게 전문성에 적합한 근무 여건이 제공되는가?	성별에 따른 불평등 요소는 없는가?	
		강사 1인당 수강생 수는 적절한가?	
		휴게 및 휴식 여건은 적절한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접근이 쉬운가?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가?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전달되는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전달되는가?	
	프로그램의 신청·접수는 용이한가?	프로그램 이용자의 성별·연령별 및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는가?	
		프로그램 신청·접수에 필요한 적절한 안내가 제공되는가?	
	교육비/이용료 부담 등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없는가?	교육비/이용료의 1인당 평균 수준은?	
해당 교육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비/이용료가 책정되었는가?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비/이용료 지원이 있는가?			
성별 역할로 인해 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없는가?	교육 시간대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일시 돌봄 지원(연계 또는 정보 제공) 등의 조치가 취해져 있는가?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 기회 접근의 제약 요소가 없는가?	교육 장소가 보행 및 대중교통 접근 가능 지역에 위치하는가?		
		진입부에 장애인과 유모차의 통행을 고려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가?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든' 주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가?	프로그램은 주민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프로그램 정원은 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되는가? 성별 분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예: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제과제빵, 반찬 / 남성 취창업 프로그램-제도, 목공)은 개설되어 있지 않은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대가 '모든' 주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가?	취업자/비취업자의 이용 가능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연계성 (대전 시와 서구만 평가)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이후 후속 프로그램으로 적절히 연결되는가?	해당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또는 구정 참여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있다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가?		
		(효과가 없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 개선 계획은 있는가?		

㉞ 지킴이 사업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위상	'안전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추진체계에 지킴이 활동이 연계되어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구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지킴이 활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의지가 지침 등으로 표명되어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학교 상담기관, 지역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역사회의 여타 활동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 연계 활동 명 확인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의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학교 안전 및 지킴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수렴하는 장치가 있는가?	학교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킴이 활동에 반영되어 있는가?		
(반영되어 있다면) 어떤 장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수렴되는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선발	지킴이 모집과 관련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지킴이 활동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는가?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었는가?		
		홍보 내용은 쉽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는가?		
	지킴이 선정위원회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지킴이 선발을 위한 관련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전문성의 측면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은 적절한가?		
		선정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지킴이 선발 기준은 적절한가?	지킴이 선발 기준이 '안전한 학교'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지킴이 선발 기준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현재의 자격 요건은 직무 관련 필요조건인가?	지킴이 선정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 가운데 특정 성 또는 계층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불필요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사업 수혜에 제한이 있지는 않은가?		
직무	지킴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가?	학교폭력 예방,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과 같은 지킴이 활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가?		
		지킴이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안전 문제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가?		
	지킴이 배치와 근무 여건은 적절한가?	지킴이로서의 업무가 노인일자리 특성을 고려하여 안배되어 있는가?		
		노동 강도나 근로조건 등에서 특정 성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지킴이 역할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처리 창구가 있는가?	고충처리 창구가 상시적으로 열려 있는가?		
		(상시적으로 열려 있지 않다면) 다른 형태의 유사 장치가 존재하는가? 접수된 고충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휴게 공간 또는 관련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킴이들이 업무를 준비/마감하고 필요한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제공되는가?		
		업무 준비와 휴식 등에 필요한 관련 물품들은 적절하게 지원되는가?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활동일지 작성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하는가?	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는가?	
		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적극적인 지킴이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여겨지는 않는가?	

(4) 모니터링 결과

㉑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총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㉒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모니터단의 제언 등을 정리하여 제안

제2절 활동 내용

1.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1차 워크숍

- 일시 : 2014년 5월 16일(금) 10:00~12:00
-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단 및 연구진 등
- 내용 :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지표 수정 논의

- 모니터링 대상 사업 분야 모듬별 해당 모니터링 사업 지표 논의
- 모니터링 사업별 지표 의견을 연구자와 논의하여 지표 수정
- 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작성해야 하는 지표 내용 분류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부분
- 성 평등 조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전체 내용을 고려할 내용 강조
 - a) 정책 환경의 성별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였는가
 - b) 사업수혜에서의 성별특성반영에 대해서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였는가
 - c) 예산배분에서의 성별특성 반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였는가
 - d)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2.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2차 워크숍

- 일시 : 2014년 6월 19일(목) 14:00~16:00
-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단 및 분야별 전문가, 연구진 등
- 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사업별 중간 점검

① 평생교육

- 모니터단 의견

- 5개 자치구와 대전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표를 토대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먼저 논의한 후 각 사업 담당자에게 질의서를 송부함. 그 후 모니터링에 대한 4단계 접근을 계획함.
- 4단계 접근
 - a) 대전시의 평생교육에 대한 점검, 분포현황, 확장시기, 법적근거차이(대전시 평생교육 조례 있음, 유성구는 평생교육조례가 아님)
 - b) 대전시 평생교육사업의 모니터링 의미
 - c) 대전시의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해서 분석평가서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할 때 각 지역의 특성과 의견을 제시
 - d) 지표에 대한 점검 및 종합의견
- 질의서 : 담당자에게 질의서 발송(이메일, 부족한 부분은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질의서 내용은 Y/N로 공

무원들이 직접 작성), 부족한 부분은 질의

➡ 대부분 예라고 응답했지만, 평가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그렇지 않음.

· 모니터링 내용

a) 평생교육프로그램은 거의 낮에 운영되어 여성 참여자가 대부분임.

b) 40 ~ 50대 참여율이 저조하며, 주부 참여는 많았음.

c) 사업담당자가 바뀜

d)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시 관할)이기에 자치구에서 할 역할이 없으며, 프로그램도 이미 구분되어 있음.

e) 일부 평생교육은 특강을 듣는 형식이라, 생산성이라는 특징이 반영되지 못함.

- 전문가 의견

· 첫 번째로 2012년, 2013년 사업계획서를 보고 성 평등 조치가항이 반영되었는지 보고, 그 후 평생교육의 프로그램 분석, 홍보 방법 등을 모니터링

· Y/N에 대한 근거, 서류 혹은 문서상에 제대로 적시하고 있는지 확인. 응답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함.

·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는지, 아이디어 수렴 등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의 개선 부분을 작성하기

· 평생교육, 시민대학에 대한 역할에 대한 제언 필요.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이나 공익성을 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민간에 맡기는 방향, 예) 안전교육 등을 시민대학에서 진행)

② 방문건강관리사업

- 모니터단 의견

· 모니터링 기관이 5개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중구에서 거부하여, 4개구로 진행함. 이후 중구에서 참여 가능하다고 연락이 와 워크숍 이후 모니터링 일정을 계획함. 현재 4개구 인터뷰 완료함.

· 대덕구와 중구는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작성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대한 심층모니터링만 진행함.

· 대덕구 사업 담당자와의 인터뷰는 서비스 대상자는 환자의 개념으로 보기에, 남녀 성별분리에 대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함. 질문에 대한 대답내용도 불확실하여 한가지에 대한 응답을 받아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됨. 추후 보완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음.

· 2012년, 2013년 계획서를 바탕으로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함. 서비스 실적은 양적실적으로 등록되었고, 또한 보건복지부에 가구로 데이터화 되어 있기에 성별통계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함. 그래서 직접 카운팅하여 성별분리통계 자료를 제시함.

· 서비스 제공자인 방문간호사들의 경우 직무상황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 구별 통계를 작성중임. 이 결과는 보고서에 추후 정리될 예정임.

· 서비스 수혜자는 일일이 면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건소 보고서 내부 자체평가부분인 해피콜에서 수혜자 만족도를 바탕으로 수혜자 의견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임.

- 전문가 의견

· 모니터링을 위한 공무원 인터뷰에 앞서 사업계획서, 법적 근거 등을 필히 숙지하고 가야함. 보건복지부에

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음. 이것에 대한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전달되는데, 여기 서식에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하도록 있음.

- 자치구 보건보마다 인적구성이 달라 실적이나, 성별통계부분 등 다른 특성을 가짐. 전문인력도 남녀 구분하여 실적보고 하게 되어 있음.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이 잘 작성되어 있으면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임.
- 사업에 대해 누가 모니터링 하는가에 대한 지표는 매우 중요함. 정책대인에 대한 전문가 모니터링으로 하면 좀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임.
- 거의 대부분 대상자가 성별분리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에 대한 성별분리는 서식에 성별구분이 없음.
- 이 사업은 현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성별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권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에 구체적인 제안을 주면 좋겠음.

③ 공원

- 모니터단 의견

- 현재 2개 공원(유성구와 서구)을 모니터링 함. 서구는 공원 규모가 커 더 시간이 필요함.
- 유성구 시민휴식공간대상사업(쌘지공원)을 모니터링 하여 우선 보고서를 작성함. 쌘지공원은 도시공원 녹지의 법률에 의해 진행된 부분이 아니며, 공원을 초점으로 한 모니터링 지표와 거리가 있음. 가능한 지표를 우선으로 모니터링 함.
- 사업 담당자는 쌘지공원은 녹지축의 일부를 시민휴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원관리법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수목관리만 함. 꽃 담당, 바닥담당, 조명담당 등 다양한 부서에서 일부씩을 담당하고 있음.
- 노은역 주변 쌘지공원은 상가의 네트워킹하여 1화단 가꾸기를 시도하는 네트워킹에 있는 단계임. 우려되는 부분은 상가의 불법 입간판이 많은데 이익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킹으로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모르겠음.
- 경기도의 사례는 쌘지공원 평가단을 구성하여 예산확보, 도시사가 확인 등을 통해 잘 구성되어 있음.
- 민원 처리에 대한 기록이 없음. 민원 전화가 오면 그때그때 처리하여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음.
- 모니터링 결과인 Y/N은 모니터단이 작성함.

- 전문가 의견

- 쌘지공원은 최근에 생긴 것으로, 실질적으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음. 이에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쌘지공원에 대한 새로운 참여, 주체적인 시민참여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 녹지를 만들고 공간이 남은 곳은 쌘지공원으로 만들면 녹지로 분류되지만, 외진 곳에 있으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음.
- 쌘지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주무부서를 두는 것이 더 빠른 방법임.
- 경기도에서는 공원을 위한 설치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고 있음. 쌘지공원은 조명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 감시가 어려우며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함.
- 쌘지공원 지표는 적용가능한 지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수정이 필요함.

④ 지킴이 사업

- 모니터단 의견

- 도시형 학교, 외곽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등으로 구분해서 모니터링 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꿈나무 지킴이 대상인 초등학교부터 모니터링 함.
- 지킴이 안전 등을 주제로 하여, 담당자용, 지킴이용 설문지를 작성함.
-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묻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홍보와 모집은 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하여 60%를 정도 가려서 40%의 인성평가만 할 수 있도록 함. 그렇기에 노인인력개발원 방문 여부를 고민하고 있음. 현재 여성이 선발의 제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이에 진입의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더 고민해봐야 함.
- 지킴이 카페가 운영되어 다양한 정보가 있음. 여성지킴이는 300여명 중 2~3명 있음. 일의 강도나 종류를 물어봤을 때 여성이 못할 일이 없으며, 여성이 했을 때 남녀차이보다 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임.
- 지킴이 사업은 노인일자리와 연동되어 있어 지킴이에 선발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많지 않음. 이런 기준에서 여성의 경우 저소득 노인은 적음.
- 지킴이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데, 학교에 직접방문하기까지 어려웠음. 교육청에서 관련 공문을 송부하였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모니터링을 거부함. 대전 외곽지역의 학교들을 모니터링 하였는데, 각 학교의 지킴이 선생님들을 인터뷰함. 인터뷰 내용은 작은 학교지만 지킴이 2명 필요, 매년 관련 교육(올해 교육은 발대식 때 받은 교육 1회) 확대, 지킴이 업무 내용의 적정성, 배움터 지킴이는 활동일지, 근무내역 출입관계를 지킴 변경으로 작성하지 않음.

- 전문가 의견

- 학교라는 단체가 폐쇄적이지만, 이 사업은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임.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운영상에서의 투명성이 요구됨.
- 아이들이 생각하는 지킴이의 역할을 좀 더 알아봐야 함. 대상자의 욕구도 다르고, 초중고마다 다르다고 생각함. 이러한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3.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3차 워크숍

- 일시 : 2014년 7월 10일(목) 14:00~16:00
- 장소 : 대전도시공사 3층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품앗이카페 풀꽃(대흥동)
- 참석자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단 및 분야별 전문가, 기자, 사업담당 공무원, 연구진 등
- 내용 :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결과 보고

① 평생교육

- 동구

- 부모교육의 경우 성별 분리통계가 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성별 수혜를 파악하기 힘들.
- 만족도 조사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였는데, 결과가 6명의 참여 후 완료되었음. 적은 참여를 통한 조사 결과의 신뢰성 및 대표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결과는 지양해야 할 것임. 이에 제 3자를 통한 평생교육 모니터링을 제안함.
- 남성의 참여도에 대해 시간대는 현재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돌봄 주체로 인식되는 여성을 위해 자격증, 취미, 건강 등의 프로그램 흐름이 있음. 이러한 것은 여성이 비경 제활동이 많고, 돌봄 노동의 주체로 하는 구조로 이끄는 경향이 있을 것임.
- 평생교육 분야에서 성인지 향상 교육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 대덕구

- 배달강좌제는 대덕구 고유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어 대전시로 확대된 프로그램이지만, 현재 대덕구의 특성에 맞게 발전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음
- 현재의 배달강좌제 내용을 보면 가사와 돌봄 관련 프로그램, 여성, 오전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식의 개선을 위해 한번 점검해야 할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질적 제고를 위해 계층별, 연령별 고려가 필요함.
- 또한 강사 휴식시간, 돌보미 파견 등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제안함.
- 평생교육 강사 구조를 살펴보면, 한번 시작하면 계속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신입 강사의 진입이 더 필요해 보임.

- 중구

- 평생교육 강사비의 경우 매우 낮기 때문에 남성강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서구

- 운영시간이 낮 시간으로 여성의 참여가 많음. 남성의 참여를 위한 시간 편성에 대한 의견 제시

- 유성구

- 건물 자체 분위기가 밝고 좋음.
- 현재 12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접근성이 매우 좋음.
- 현재 지하에 엘리베이터가 운영되지 않아 지하 동아리실의 경우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어려움이 있음.

- 공통

- 평생교육에서 성인지 관련 교육의 필수화 방법이 필요해 보임. 여성에 관해 출발한 평생교육센터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성인지관점, 성 주류화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한 후 다른 강의를 수강하는 것에

대해 제안

- 정례화된 모니터링을 제안하면서 이것을 통해 지속적인 기관 모니터링을 제안함.
- 실질적 예산반영으로 질 높은 강사의 발굴이 필요함.

② 공원

- 5개구의 공원을 주/야간에 모니터링하려 노력함.
- 여성들의 정책 개입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의견의 반영이 쉽지 않음. 이것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여성참여에 대한 인식이 낮음.
- 공원이란 물리적인 공간은 행정의 경우 관리주체가 달라 현장의 불편사항이 바로 행정으로 피드백 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음.
- 100여개 이상의 공원을 1명의 담당자가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민원은 수리보수유지가 중심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모니터링 내용이 행정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듦.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현장이 거리가 있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사업 전체가 대상이 되었으며(예. 중구), 현장은 사업의 일부분으로 반영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임. 이러한 측면에서 공무원이 모니터링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사업의 성격상 구청 직접 관리, 대전시 예산 지원 및 구청 관리 등 형태가 다양하며, 이러한 면에서 구청의 관리 부분에 한계가 있음.
- 여성이 선호하는 시설을 설문조사를 통해 반영하라는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보면, 어느 자치구에서는 시공사에서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구두로 조사하였고, 동구의 경우 공원주민위원회를 조직함. 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시도와 과정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됨. 이 과정에 어떤 여성들의 참여가 있었는지 궁금하였지만 자료가 없었음.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과 소통하기 위해 여성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주민위원회 구성을 반영하였으면 함.
- 공원 규모와 성격에 맞는 지표 필요
- 공원 업무가 담당자 및 담당부서가 자주 바뀌어 인수인계의 문제로 자료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
- 정책에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여성의 참여비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 주민위원회를 통해 반영하지만, 단순히 여성참여수를 의미하는지, 혹은 부녀회의 의견인지 이러한 것이 여성의 의견 혹은 참여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김.

③ 방문건강관리사업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점검을 중심으로 이야기 함.
- 서비스 제공자가 대부분 여성으로 인력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그 결과 방문건강가구수가 많아 적절한 방문가구수의 조정이 필요하며, 급여의 부분, 요주의 대상자 방문시의 동행방문 여부가 대부분 아니더라는 결과가 나옴. 특히 요주의 대상자에 대한 동행방문의 경우 추가적인 안전 정책이 필요함.
- 대부분 담당자들은 대상자가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여 성별을 나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각하기에 성별분리가 무시되기 쉬움. 하지만 취약계층은 남과 여로 구성되어 있고, 성별에 따라 욕구가 다를 수 있음.

- 성 평등 조치사항 제안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음. 예. 유성구 성 평등 조치 사항(파스 지급)의 경우 수혜자의 요구도를 수용하여 조치사항을 제시함.
- 어떤 것이 성인지 정책이고,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파스의 사례를 많이 사용함. 파스 지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제안으로 보이지만 성인지적 접근으로 살펴보면 이 사업의 남녀 대상자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파악하여 조치사항으로 제안함. 그 사업에서 남녀 성별 특성을 살펴보고 남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사항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점에서 성별 분리통계가 필요함.

④ 지킴이 사업

- 꿈나무 지킴이(초등학교, 특수학교)
 - 성 평등 조치사항 점검 : 안전, 여성노인인력 참여 등
 - 꿈나무 지킴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되어 있음. 학교 개별채용이 아니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서류 심사 이후 학교로 추천되어, 학교에서 면접 후 봉사자로 위촉됨.
 - 여성노인인력에 대한 인터뷰 : 여성이 참여했을 때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학교 및 활동가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개발원의 경우 어려움은 없지만 학교의 선호도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함.
 - 여성 노인의 수요 욕구가 별로 없어 보이며, 여성노인이 참여를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지킴이의 경우 경제적 상황(저소득층)을 고려하는데, 실제 지킴의 대상자는 퇴직 교원, 경찰, 군인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 자격 요건이 서로 맞지 않음.
- 배움터 지킴이(중고등학교)
 - 성 평등 조치사항 중 성폭력 예방 교육 등에 대한 조치사항은 잘 이행되지 않음.
 - 배움터의 경우 학교에 직접 지원하여 선발됨. 지킴의 대상자 자격은 퇴직교원, 경찰 등이지만, 대상이 되는 여성노인이 별로 없음.
 - 주요업무는 학교질서유지, 등하교, 방문객관리가 주 업무로, 특히 등하교시 교통질서 유지가 중요업무로 이야기함. 이렇게 물리적인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학교에서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밤 10시까지 할 수 있는 여성노인이 있는지, 주변의 취객이나 침입자를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지킴이 사업 성격은 노인 일자리와 거리가 있으며, 사회참여, 봉사 성격이 강함. 이런 수준의 여성노인인 경우 지킴이가 아닌 다른 사회참여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 여성노인의 진입과 참여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리고 실재 현장에서 여성노인 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부분이 개별마다 다름. 여성노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다는 학교가 있음.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파악이 필요함.
 - 지킴이의 신분은 봉사 위촉으로 고용이 아님. 하지만 배움터 지킴이를 하시는 분들은 고용으로 이해하고 계심. 제도 전반에 대해 이러한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 제도가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운영된다는 점을 지킴이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의 확대가 필요함. 타 지역의 운영 사항을 참고하여 분기별 혹은 발대식을 제외한 추가 2회의 교육이 필요함. 특히 안전, 아동청소년발달과정, 학교문제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⑤ 전문가 등 의견

- 각 사업은 추진근거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 보고서에 근거법령이 작성되어 있는데, 헌법적인 근거도 같이 제시하면 좋을 듯함. 법의 기본인 헌법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사업에 대해 실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가지므로, 헌법적인 차원에서 평등하게 잘 운영되기 위한 제언들을 추가하는 것을 제언.
 - 예. 헌법 34조 3항(여성의 복지와 권익), 헌법 31조 5항(평생교육), 헌법 35조 2항(환경권-공원), 헌법 36조 3항(보건권-방문건강관리사업), 헌법이 추구하는 성평등 가치에 사업에 부합하는지를 제언.
- 공원 등의 특성을 보면 예전에는 전문가가 계획하여 설치하지만 지금은 사용자가 요구하여 계획 후 설치되고 있음. 이전에는 어린이 공원의 경우 250미터 당 하나씩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 택지개발계획 시 어린이공원이 제일 먼저 설치됨. 요즘 구시가지의 경우, 당시에는 주택지역이 현재 사업지역으로 바뀌거나 어린이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 그래서 마을마당으로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고 있음. 어린이공원을 폐기해야 하는가? 마을마당으로 변화해야 하는가? 다양한 의견을 받는 주민공청회의 경우 목소리가 없는 혹은 적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움이 있음. 좀 더 노력을 들여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들어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건설과 관련된 경우 거의 반영구적임. 대전시에서 어린이공원을 마을마당으로 만들고 있음. 이런 시점에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할 것임. 기회가 있을 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Q : 현장 실무자들의 성인지 관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현장 실무자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A : 성인지 교육은 전체교육, 담당자교육 등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쉽게 성인 지력이 생기는 것이 어려운 분야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이 확대되고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Q : 모니터링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
 - A : 작년의 경우 워크숍을 통해 참여하신 기자분이 기사화되어 대전시에서 점검한 사례가 있었음. 올해도 이러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는데 여성가족부, 대전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반영방법을 좀 더 상의해야 할 것임. 오늘 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같이 공유하였는데,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반영할 노력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됨. 예산 등의 문제로 쉽게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지만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
- 현재 민선6기는 성평등 5.0이라는 공약을 기반으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 확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데, 오늘 제안한 평생교육에서의 성평등 교육은 좋은 제안임.

제 2 장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

제1절 공원

제2절 방문건강관리사업

제3절 평생교육

제4절 지킴이사업

제2장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

제1절 공원⁴⁾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업 분야	공원·녹지사업(동구)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6월 25일 오후 2시 / 7월 2일 오후 3시
모니터링 장소	가팔어린이공원
인터뷰 대상자	공원과 사업담당자
참고자료	2014년 주민설명회(홍도어린이공원, 진등어린이공원)
작성자	이 채 민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동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공원녹지과	미기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기반시설 정비 4개소(행복 어린이공원)		332	· 공원 디자인 및 시설물 결정 시 이용자를 고려하여 설계 및 반영

4) 공원 분야 모니터링 활동가들은 개인별로 5개 자치구의 보고서 작성함.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 분석평가서 제출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었던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 성인지예산담당관이 협의(세출예산서 근거) · 대상과제 선정에 전문가 참여하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 이후 자치구에서 대면컨설팅 1회 진행,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여아·남아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성인지 관점의 공간 및 시설확대를 제안함 ⇒ 조치사항에 반영됨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되었음. - 공원 디자인 및 시설물 결정 시 이용자를 고려하여 설계 및 반영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반면,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제안된 '공원 이용자가 가장 많은 주부 및 할머니들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대' 및 '공원 내 CCTV설치, 식재 된 수목 전지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개선안은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지 않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공원 디자인 및 시설물 결정 시 이용자를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설계가 실제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었는가?	N	'어린이공원' 이기는 하나, 실제 인근 어르신들의 이용이 높은 공원임. 아파트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 실제 어린이들의 활용이 높지 않음.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이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는가? (※ 단순 시설계획은 제외함)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또는 의견 수렴 단계가 있는가?	Y	2013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여 해당 사업이 없었고, 2014년 테마형마을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공원조성위원회가 발족되어 사전 설명회 개최함. - 홍도 어린이공원 주민설명회(2014.2.), 진등어린이공원 주민설명회(2014.2.)
		(그런 단계가 있다면) 어떤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Y	
		(그런 단계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은 어떠한가?	관련 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참여 비율은?	Y	주민설명회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대부분 여성(7:3)이었음. 주민구성원들은 동네 통장(여성)을 비롯하여 인근주민 20여명으로 구성됨. 직업군은 모르나 대체로 주부일 것으로 추정됨.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은?	N	
		여성 위원의 직업군은?	N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참여 장치가 있는가?	공원 관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장치가 있는가?	N	공원관리와 관련한 지역주민 참여 장치 없음. 특별한 창구가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고, 다만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 관리함. 대개 공원을 새로 구성하기보다는 관리하는 공원이 많기 때문에 직접조성보다는 관리공원 비율이 많음. - 그래서 노후, 보완에 주로 중점을 둬.
(그런 장치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가? 지역 여성들의 참여 비율은?		N		
(그런 장치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N		
접근성	공원의 물리적 환경이 돌봄 책임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는가? (※ 소규모 공원 제외)	. 유모차, 휠체어, 실버카 대여 서비스 (관리사무소 내부나 인근)	N	먼저 공원 내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대여서비스를 실시할만한 시설이 없음. 기저귀 갈이대 역시 없음. 운동 및 체육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밤 늦은 시간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음.
		.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설치	N	
		. 장애인 화장실 설치 ※ 법령 확인 요	Y	
		. 휴게시설(의자 등)의 규칙적 설치(200m 이내마다) (※ 200m ² 미만 제외)	N	
		. Barrier-Free 보행로 : 보도폭 2m이상(최소 1.5m 이상),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 단차가 없거나 2cm 이하	N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근력 운동 관련 시설의 경우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분리 설치나 높이·무게 등의 조정 가능)	Y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잔디)축구장 설치 시 게이트볼장 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N		
	. 그 밖의 부대시설 설치 시,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	N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한가? (※ 어린이 공원 제외)	대중교통 시설에서 출입구까지 이내도보로 5분 이내—300m— 거리에 위치하여 누구나 이용이 용이한지 점검	Y	주거지 내의 작은 근린공원이어서 대체로 접근은 용이함.
	시설 이용 관련 불편사항 접수창구가 개방되어 있으며, 민원 대치는 신속히 이루어지는가?	불편사항을 고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창구(또는 관련 정보)가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N	정기적인 관리보다는 간헐적으로 순찰하고 있음. 대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점검함. 민원이 들어올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함.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되는가?		Y		
안전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 적용되었는가?	. 야간 조도 (가로등은 20미터 간격이내 또는 3-4m 전방에 있는 사람 얼굴 인식)	N	공원내의 조명이 없음(인근이 모두 주택가라 밤이 되어도 크게 불편함은 없음. 그러나 모두 잠든 밤에 공원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함).
		. 안전한 시야 확보 여부 - 보행로에 개방된 조경 - 휴식공간의 시야확보 - 시설물 주변(화장실 등)	Y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 적용되었는가?	. 보호관찰이 용이한 위치에 놀이 공간 설치 여부	N	작은 근린공원이라 관찰이 용이함. 그러나 공간이 분리돼 있음.
		. 비상시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 설치 여부 (대형 공원, 지하 주차장, 화장실)	Y	있기는 하나(1개) 이용가능한지는 확인불가함.
. CCTV 설치 여부 (사각지대 방지에만 활용)		Y	2개 설치돼 있음.	
	. 정기적인 순찰 여부	N	가끔 순찰차가 다니긴 하나, 정기적이진 않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공원 내 설치 시설물의 안전 상태는 적절한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합격 여부 (www.cpf.go.kr)	N	안전검사 관련한 안내판이 없고, 그나마 있는 안내판은 훼손돼 있어 확인 불가능함. 또한 간헐적인 관리로 인해 안전점검 실시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놀이기구의 안전성여부 관련한 별도 안내판은 없음. 정자가 두 개 마련돼 있고, 주로 인근 어르신들이 이용함. 천장의 누수 때문에 1회 보수했으나 여전히 누수로 주민들이 임시 누수안정망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음.
	.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 여부 (2년마다 검사기관 정기시설 검사)	N	
	. 놀이터 안내판 : 놀이터 구조물이 2-5세 대상인지 또는 5-12세 대상인지 연령대 별 놀이터 디자인 명시 여부	N	
	. 놀이기구의 안전성 여부 (파손, 돌출, 엮매이면 빠지기 힘든 구조, 충돌 방지 공간 및 낙하할 때 적정 높이)	N	
	. 벤치와 간이 정자 등 휴게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N	

4]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제안된 정책개선안으로 인해 미진하게나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주민설명회)이 보임. 담당공무원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교육을 받기는 했으나 보고서 작성 시 상당히 모호함을 느끼고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지표와 사례가 교육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임.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① 쓰레기수거공간이 공원 바로 옆에 있어 쓰레기가 많음.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쓰레기 수거공간으로 사용한 곳이라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대낮에 주로 어르신들의 모임장소(노인정이 없음)로 이용되고 있음. 저녁에 우범지역으로 사용될 가능성 높음. 또한 해당 공원의 경우 바로 옆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놀이터가 있어 실제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고 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었음. 향후 실제 이용자들이 누군지를 확인하여 그들에 맞는 서비스와 지역시설이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함. 미약하게나마 '주민공원조성위원회'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는 하나 사회적 약자 및 여성들의 목소리가 투영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

■ 현장 모니터링 사진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공원·녹지사업(동구)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6월 25일(수) 1시 / 7월 2일(수) 2시
모니터링 장소	가팔어린이공원, 동구청 공원과
인터뷰 대상자	공원 사업담당자
참고자료	2014년 주민설명회(홍도어린이공원, 진등어린이공원)
작성자	임 현 정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동구	어린이공원조성사업	공원녹지과	미기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기반시설 정비 4개소(행 복어린이공원)		332	· 공원 디자인 및 시설물 결정 시 이용자를 고려하여 설계 및 반영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 분석평가서 제출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었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 성인지 예산담당관이 협의(세출예산서 근거) · 대상과제 선정에 전문가 참여하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 이후 자치구에서 대면 컨설팅 1회 진행,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여아·남아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성인지 관점의 공간 및 시설확대를 제안함 ⇒ 조치사항에 반영됨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되었음. - 공원 디자인 및 시설물 결정 시 이용자를 고려하여 설계 및 반영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반면,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제안된 '공원 이용자가 가장 많은 주부 및 할머니들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대' 및 '공원 내 CCTV설치, 식재 된 수목 전지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개선안은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지 않음 	

③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공원 디자인 및 시설물 결정 시 이용자를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설계가 실제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었는가?	N	어린이공원이긴 하지만 실제 지역고령자들의 이용빈도가 높음. 이용자를 고려하는 설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어린이가 이용할 유희시설이 너무 적고 공간이 협소함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이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는가? (※ 단순 시설계획은 제외함)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또는 의견 수렴 단계가 있는가?	Y	2014년도 '공원조성위원회'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직하여 사전 설명회 개최함.
		(그런 단계가 있다면) 어떤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Y	동네통장, 자치위원장 등 인근 주민 20여명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동원
		(그런 단계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	자체적으로 주민조직위를 운영함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은 어떠한가?	관련 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참여 비율은?	Y	모두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인근주민으로 구성함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은?	N	전체 60~70%가 여성으로 구성
		여성 위원의 직업군은?	N	알수 없음.(주부일 것으로 추정 됨)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참여 장치가 있는가?	공원 관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장치가 있는가?	N	현행제도에선 관련 장치가 없음
		(그런 장치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가? 지역 여성들의 참여 비율은?	N	현행제도에선 관련 장치가 없음
		(그런 장치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N	현행제도에선 관련 장치가 없음
접근성	공원의 물리적 환경이 돌봄 책임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는가? (※ 소규모 공원 제외)	. 유모차, 휠체어, 실버카 대여 서비스 (관리사무소 내부나 인근)	N	공원내의 관리사무소와 대여서비스 시설이 없음
		.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설치	N	남녀화장실 모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 화장실 설치 ※ 법령 확인 요	Y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화장실 입구의 문이 여닫이이고, 내부에서도 공간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들어보임
		. 휴게시설(의자 등)의 규칙적 설치(200m 이내마다) (※ 200m ² 미만 제외)	N	휴게시설이 부족함. 공원이용자들이 쉴곳이 없음.
		. Barrier-Free 보행로 : 보도폭 2m이상(최소 1.5m 이상),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 단차가 없거나 2cm 이하	N	모니터링 대상지가 지리적이 특성상 2개의 공간으로 분리되는데, 경계부분에 높은 계단이 있어 드나들기에 힘들어 보임.
		. 근력 운동 관련 시설의 경우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분리 설치나 높이·무게 등의 조정 가능)	N	공원에 운동관련시설이 없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잔디)축구장 설치 시 게이트볼장 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N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음
		. 그 밖의 부대시설 설치 시,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	N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음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한가? (※ 어린이 공원 제외)	대중교통 시설에서 출입구까지 이내도보로 5분 이내—300m— 거리에 위치하여 누구나 이용이 용이한지 점검	N	주거지 내의 작은 근린공원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함
	시설 이용 관련 불편사항 접수창구가 개방되어 있으며, 민원 대치는 신속히 이루어지는가?	불편사항을 고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창구(또는 관련 정보)가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N	별도의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 관리를 위한 관계자 순찰은 전혀 없고, 가끔 경찰차의 방범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만 있음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되는가?		N		
안전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 적용되었는가?	. 야간 조도 (가로등은 20미터 간격이내 또는 3-4m 전방에 있는 사람 얼굴 인식)	N	공원내의 조명의 개수가 위, 아래 각 1개밖에 없고, 그나마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부분에 조명은 파손된 지 오래되었음
		. 안전한 시야 확보 여부 - 보행로에 개방된 조경 - 휴식공간의 시야확보 - 시설물 주변(화장실 등)		공간이 높은 단차로 위아래로 단절되어 서로그이 공간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음. 누가 뭘 하는지 전혀 보이지 않음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 적용되었는가?	. 보호관찰이 용이한 위치에 놀이 공간 설치 여부		분리된 공원의 특성상 공간간의 차이가 있어 서로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 비상시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 설치 여부(대형 공원, 지하 주차장, 화장실)	Y	1개 설치되어 있음
. CCTV 설치 여부 (사각지대 방지에만 활용)		Y	2개 공간에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음	
	. 정기적인 순찰 여부	Y	가끔 경찰차가 순찰을 온다고 함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공원 내 설치 시설물의 안전 상태는 적절한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합격 여부(www.cpf.go.kr)	N	안전검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안내판이 없음
	.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 여부 (2년마다 검사기관 정기시설 검사)	N	현장에서는 알 수 없음
	. 놀이터 안내판 : 놀이터 구조물이 2-5세 대상 인지 또는 5-12세 대상인지 연령대별 놀이터 디자인 명시 여부	N	공원현황판이 있지만 심하게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음
	. 놀이기구의 안전성 여부 (파손, 돌출, 얽매이면 빠지기 힘든 구조, 충돌 방지 공간 및 낙하할 때 적정 높이)	N	별도의 표지판은 없지만, 외관상으로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양호해보임
	. 벤치와 간이 정자 등 휴게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N	안내물이 없고, 정자의 천장에 누수가 심함

4]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공원이용자를 고려한 디자인과 시설물이라는 것이 범위가 굉장히 모호함.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관련법령이 없음을 감안하면 보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통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듯함.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등은 인근거주주민이 주요이용자이고, 특히 주거지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여성들이 이용 빈도가 높을 것을 감안한다면 공원과 같은 시설물에 대한 성 평등한 정책개선은 반드시 필요함. 또한 인구특성상 고령자 인구가 늘고 있고, 어린이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어린이공원보다는 고령자들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어르신공원)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공원조성과 관련한 약자를 배려하고, 안전한 공간을 위한 universal design, barrier-free, CPTED 방식을 적용한 점과 기존의 일방적이 사업 계획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수의 견이나마 반영하려는 행정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음.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① 모니터링 대상 사업이 '어린이공원조성사업'으로 범위가 포괄적이고, 연속성이 없는 사업으로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의 반영 여부를 모니터 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 ②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은 2012년도 동구청의 자체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이었고, 2013년도에는 대전광역시 사업으로 대전시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이었음. 그리고 2014년도에는 다시 동구청에서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일관성, 특히 성평등에 관한 조치사항의 반영여부는 모니터되지 않았음.

- ③ 물론 2014년도 동구청에서 추진하는 '어린이공원조성사업(용전어린이공원, 가양동 매봉어린이공원, 성남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원조성위원회'를 조직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점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개선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단순 주민의 사업계획단계에서의 참여이지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의 반영이라고 보기 힘들.
- ④ 또한 '공원조성위원회'의 구성이 여성을 배려한 구성이 아니며, 특히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진 주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민자치위원회와 부녀회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사전에 주민참여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추후 이와 유사한 주민참여는 성인지 교육 지원이 전문기관이나 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면 좋을 듯함.
- ⑤ 인근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임.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주부, 남성, 고령자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실제로 어린이공원이 인근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원인가,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이 무엇인지가 계획 및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그 공간이 주민에게 활용되고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임.
- ⑥ 또한 공원에 대한 순찰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원관리와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특히 순찰의 목적과 방식이 공원녹지과에서는 단순 공원녹지의 수목관리를 위한 업무와 파손된 시설물의 수리와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동구 가팔어린이공원 위치 및 현장 모습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공원·녹지사업(중구)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6월 30일/ 7월 1일
모니터링 장소	우리들 문화공원
인터뷰 대상자	공원과 사업담당자
참고자료	2012년 공원조성관리 사업계획 2013년도 공원조성관리 사업계획
작성자	이 채 민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중구	공원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	공원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 공원 내 수목, 편의시설, 화장실, 기타 시설 관리·공원 환경정비 및 어린이놀이터 정비		826	· 미작성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 분석평가서 제출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었던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 성인지 예산담당관이 협의(세출예산서 근거) · 대상과제 선정에 전문가 참여하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 이후 컨설팅 시행 · 컨설팅은 총 2회로 전화와 서면으로 각각 시행됨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동반 이용자를 위한 유아용 변기 및 귀저기 교환대의 설치 확대 ⇒ 조치사항에 반영됨 · 어린이 의자 및 세면대 등의 설치 ⇒ 조치사항에 반영됨 · 여성 이용자를 위한 가방 걸이 등의 설치 ⇒ 조치사항에 반영됨 · 여성변기의 추가 설치 ⇒ 조치사항에 반영됨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p>본 평가서는 분석평가에서 제안된 개선안이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으며, 새로운 조치사항도 포함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용선반대를 설치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남녀변기수 1:1 맞추도록 예산반영 예정이라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동시에 제안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여성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겠다는 조치사항은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 조치사항이지만,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하여 매우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술된 조치사항으로 판단됨. - 기저귀대 설치, 화장 고칠 수 있는 장소 마련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밝은 분위기는 앞서 분석되지 않은 조치사항임.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 평등 조치사항 중 남녀 변기수 1:1에 대해 성인지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미작성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이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는가? (※ 단순 시설계획은 제외함)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또는 의견 수렴 단계가 있는가?	N	당 구인 중구청은 공원과 관련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출되지 않아 모니터링에서 시행결과를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고, 참여부분에서의 주민수렴단계나 여성의 참여비율 등은 해당사항 없음.
		(그런 단계가 있다면) 어떤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그런 단계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은 어떠한가?	관련 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참여 비율은?	N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은?		
		여성 위원의 직업군은?		
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참여 장치가 있는가?	공원 관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장치가 있는가?	N		
	(그런 장치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는가? 지역 여성들의 참여 비율은? (그런 장치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접근성	공원의 물리적 환경이 돌봄 책임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는가? (※ 소규모 공원 제외)	. 유모차, 휠체어, 실버카 대여 서비스 (관리사무소 내부나 인근)	N	해당 공원은 화장실이 없음. 화장실은 지하 주차장에 남자 2개, 여자 2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그곳 역시 공원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니므로 공원관리 내의 화장실은 없다고 봐야 함. 문화공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자가 잘 구비돼 있었음. 공원 조성시 단차제거를 위한 설계가 있었으나 현재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있어 수리가 필요한 상황임.
		.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설치	N	
		. 장애인 화장실 설치 ※ 법령 확인 요	N	
		. 휴게시설(의자 등)의 규칙적 설치(200m 이내마다) (※ 200m ² 미만 제외)	Y	
		. Barrier-Free 보행로 : 보도폭 2m이상(최소 1.5m 이상),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 단차가 없거나 2cm 이하	Y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근력 운동 관련 시설의 경우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분리 설치나 높이·무게 등의 조정 가능)	N	해당사항 없음.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잔디)축구장 설치 시 게이트볼장 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 그 밖의 부대시설 설치 시,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한가? (※ 어린이 공원 제외)	대중교통 시설에서 출입구까지 이내도보로 5분 이내—300m— 거리에 위치하여 누구나 이용이 용이한지 점검	Y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있으므로 대중교통 시설 이용에 어려움은 없음.
	시설 이용 관련 불편사항 접수창구가 개방되어 있으며, 민원 대치는 신속히 이루어지는가?	불편사항을 고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창구(또는 관련 정보)가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되는가?	Y	이용관련한 민원사항은 수시로 해당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음.
안전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적용되었는가?	. 야간 조도 (가로등은 20미터 간격이내 또는 3-4m 전방에 있는 사람 얼굴 인식)	Y	해당 우리들문화공원은 도심 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권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야간에 특별한 조명이 없어도 안전한 시야는 확보된다고 볼 수 있음.
		. 안전한 시야 확보 여부 - 보행로에 개방된 조경 - 휴식공간의 시야확보 - 시설물 주변(화장실 등)	Y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적용되었는가?	. 보호관찰이 용이한 위치에 놀이 공간 설치 여부	N	해당사항 없음.
		. 비상시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 설치 여부 (대형 공원, 지하 주차장, 화장실)	Y	공원 지하 주차장에 최소 1개의 CCTV 설치돼 있고, 공원에는 5개 정도의 CCTV가 설치돼 있음.
		. CCTV 설치 여부 (사각지대 방지에만 활용)	Y	두 대 설치돼 있음.
	공원 내 설치 시설물의 안전 상태는 적절한가?	. 정기적인 순찰 여부	Y	도심과 가깝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차가 순찰함.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합격 여부 (www.cpf.go.kr)		N	해당 공원은 문화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놀이시설과는 관계가 없음.	
	.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 여부 (2년마다 검사기관 정기시설 검사)	N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 놀이터 안내판 : 놀이터 구조물이 2-5세 대상인지 또는 5-12세 대상인지 연령대별 놀이터 디자인 명시 여부	N	
	. 놀이기구의 안전성 여부 (파손, 돌출, 엮매이면 빠지기 힘든 구조, 충돌 방지 공간 및 낙하할 때 적정 높이)	N	
	. 벤치와 간이 정자 등 휴게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Y	

4]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해당 모니터링 대상 공원인 '우리들 문화공원'의 경우 도심에 위치(대흥동)하여 각종 문화 관련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음. 특히나 주말의 경우 각종 행사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으로 야외행사무대까지 설치돼 있음.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⑥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④ 해당구인 중구청은 공원과 관련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성 평등 조치사항이 작성되지 않아 모니터링에서 시행결과를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음.

■ 현장 모니터링 사진



<파손된 보도블록>



<문화행사 알림판>



<야외행사무대>



<우리들 공원 주위의 벤치>



<주·정차금지 안내판>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공원·녹지사업(중구)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6월 30일(월) 오후 3시 / 7월 1일(화) 오후 2시 / 7월 4일(목) 오후 9시
모니터링 장소	우리들 문화공원, 동구청 공원과
인터뷰 대상자	공원 사업담당자
참고자료	2012년 공원조성·관리 사업계획 2013년도 공원조성·관리 사업계획
작성자	임 현 정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중구	공원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	공원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 공원 내 수목, 편의시설, 화장실, 기타 시설 관리· 공원 환경정비 및 어린 이놀이터 정비		826	· 미작성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 분석평가서 제출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 성인지예산 담당관이 협의(세출예산서 근거) · 대상과제 선정에 전문가 참여하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 이후 컨설팅 시행 · 컨설팅은 총 2회로 전화와 서면으로 각각 시행됨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동반 이용자를 위한 유아용 변기 및 귀저기 교환대의 설치 확대 ⇒ 조치사항에 반영됨 · 어린이 의자 및 세면대 등의 설치 ⇒ 조치사항에 반영됨 · 여성 이용자를 위한 가방 걸이 등의 설치 ⇒ 조치사항에 반영됨 · 여성변기의 추가 설치 ⇒ 조치사항에 반영됨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p>본 평가서는 분석평가에서 제안된 개선안이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으며, 새로운 조치사항도 포함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용선반대를 설치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남녀변기수 1:1 맞추도록 예산반영 예정이라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동시에 제안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여성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겠다는 조치사항은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 조치사항이지만,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하여 매우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술된 조치사항으로 판단됨. - 기저귀대 설치, 화장 고칠 수 있는 장소 마련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밝은 분위기는 앞서 분석되지 않은 조치사항임.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 평등 조치사항 중 남녀변기수 1:1에 대해 성인지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미작성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또는 의견 수렴 단계가 있는가?	N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의 단계가 없음	
	(그런 단계가 있다면) 어떤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N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의 단계가 없음	
	(그런 단계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N	계획없음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은 어떠한가?	관련 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참여 비율은?	N	관련 위원회가 없음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은?	N	
		여성 위원의 직업군은?	N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참여 장치가 있는가?	공원 관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장치가 있는가?	N	구체적인 조직이나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 다만 이용자들의 1회성 민원으로 의견수렴이 되고 있음
		(그런 장치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가? 지역 여성들의 참여 비율은?	N	
		(그런 장치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N	
접근성	공원의 물리적 환경이 돌봄 책임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는가? (※ 소규모 공원 제외)	. 유모차, 휠체어, 실버카 대여 서비스 (관리사무소 내부나 인근)	N	사업계획서 상, 모니터링 현장에서도 해당시설물을 찾아 볼 수 없음
		.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설치	N	공원내에 화장실이 없음.
		. 장애인 화장실 설치 ※ 법령 확인 요	N	지하의 사설 주차장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지만,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위치 안내도가 없어 이용이 어려워 보임
		. 휴게시설(의자 등)의 규칙적 설치(200m 이내마다) (※ 200m ² 미만 제외)	Y	휴게시설로 벤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음. 여름 낮 시간에는 그늘에 의자가 부족해보임
		. Barrier-Free 보행로 : 보도폭 2m이상(최소 1.5m 이상),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 단차가 없거나 2cm 이하	Y	공원 조성시에는 단차가 제거되어 설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곳이 있음
		. 근력 운동 관련 시설의 경우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분리 설치나 높이·무게 등의 조정 가능)	N	해당시설물이 없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잔디)축구장 설치 시 게이트볼장 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N	해당시설이 없음
		. 그 밖의 부대시설 설치 시,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	N	해당시설이 없음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한가? (※ 어린이 공원 제외)	대중교통 시설에서 출입구까지 이내도보로 5분 이내 —300m— 거리에 위치하여 누구나 이용이 용이한지 점검	Y	위치가 도심이라 버스 및 지하철로 접근하기 용이함
	시설 이용 관련 불편사항 접수창구가 개방되어 있으며, 민원 대치는 신속히 이루어지는가?	불편사항을 고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창구(또는 관련 정보)가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N	별도의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기구나 창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되는가?		N	수시로 민원으로 제기되는 사항만 그때그때 처리하는 수준임	
안전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적용되었는가?	. 야간 조도 (가로등은 20미터 간격이내 또는 3-4m 전방에 있는 사람 얼굴 인식)	N	조명등이 야간에 공원내부를 환하게 밝히는 정도로 밝지 않음, 다만, 인근의 상점가에 간접조명이 설치 됨
		. 안전한 시야 확보 여부 - 보행로에 개방된 조경 - 휴식공간의 시야확보 - 시설물 주변(화장실 등)	N	수목이나 기타 환기시설로 인해 공원이 전반적으로 어두움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적용되었는가?	. 보호관찰이 용이한 위치에 놀이 공간 설치 여부	N	공원내 놀이시설이 없음
	. 비상시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 설치 여부 (대형 공원, 지하 주차장, 화장실)	N	해당 시설이 없음
	. CCTV 설치 여부 (사각지대 방지에만 활용)	N	공원내의 CCTV는 없지만, 공원입구의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의 CCTV가 설치되어 있음.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정기적인 순찰 여부	N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순찰은 없음. 시설물 관리를 위한 순찰만 월 2회 정도 실시함
공원 내 설치 시설물의 안전 상태는 적절한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합격 여부 (www.cpf.go.kr)	N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음
	.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 여부 (2년마다 검사기관 정기시설 검사)	N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음
	. 놀이터 안내판 : 놀이터 구조물이 2-5세 대상인지 또는 5-12세 대상인지 연령대별 놀이터 디자인 명시 여부	N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음
	. 놀이기구의 안전성 여부 (파손, 돌출, 엽매이면 빠지기 힘든 구조, 충돌 방지 공간 및 낙하할 때 적정 높이)	N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음
	. 벤치와 간이 정자 등 휴게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N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게시물이 없음

4]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 성평등조치사항이 작성되지 않았음.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모니터링 대상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사업은 너무 방대하고, 구체적으로 지표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의 선정과정에서 보다 섬세한 검토를 거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① 해당구인 중구청은 공원과 관련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아, 모니터링활동의 한계가 있었음.
- ② 모니터링 해당 사업이 '공원조성·관리사업'으로 이 사업은 중구청 공원과 1년간의 공원 관리사업으로 사업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함. 성별분석평가 및 관련 사업의 모니터링을 실행하기에 무리가 있고, 다양한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포인트를 제시하기에도 모호하다는 판단이 들.
- ③ 따라서 전체사업이 아닌 전체 사업 속의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그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관련 사업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의 실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④ 현장 모니터링의 대상지인 우리들 문화공원의 경우는 도심에 위치하여 각종 문화 관련 행사에 활용되도록 만들어진 공원으로 인근의 주민과 지역의 관련 단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임. 특히 주말에는 각종 행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임.
- ⑤ 하지만, 공원내에는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화장실은 공원이하의 주차장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공원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내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았음. 따라서 편의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⑥ 공원이용에 대한 안내물은 주로 문화행사나 공연에 대한 게시판과 일반적인 공원 이용시 주의사항을 위한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을 뿐임. 또한 공원입구의 주변시설 안내지도는 훼손되어 있어서 전혀 내용을 알 수 없었고, 금연시설이라든지, 공원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은 설치되지 않았음.
- ⑦ 또한 CCTV는 공원내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원 주변, 지하주차장 입구와 출구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 실제 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은 전무한 상황이었음. 그리고 우리들 문화공원의 경우는 지하공간의 사설주차장이 있고,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각종 시설물들이 공원내부는 물론 입구에 까지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시선을 가리고 있음.

■ 현장 모니터링 사진



파손된 바닥



파손된 배수구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불편한 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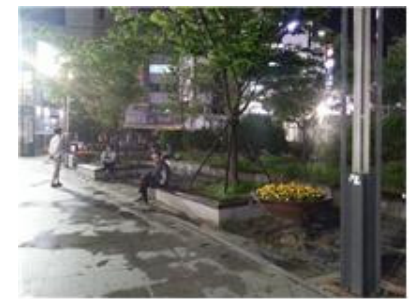
식별이 어려운 이용안내



훼손이 심한 안내도



야간의 흡연자, 어두운 공원



부족한 조명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공원·녹지사업(서구)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6월 13일 / 6월 30일
모니터링 장소	도안근린공원
인터뷰 대상자	서구청 공원녹지과 사업담당자
참고자료	2012년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추진계획 2013년 걷고싶은 숲길 조성 추진계획
작성자	이 채 민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서구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공원녹지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 정비 10km · 월평근린공원(종합안내판, 생태해설판, 구간안내판, 테크계단, 방향안내판, 해설판, 안전웬스 등) · 도안근린공원(종합안내판, 구간 안내판, 안전웬스, 방향표지판, 폐침목 계단 정비, 야생화 식재, 등산로 정비 등) 		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 용역 시 시설물에 대한 설문 실시 반영 · 시설물 설치 시 여성이 선호하는 시설물 위주로 설계 반영 추진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 분석평가서 제출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었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 성인 지예산담당관이 협의(세출예산서 근거) · 대상과제 선정에 전문가 참여하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음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p>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되었음. 또한 앞서 분석되지 않은 조치사항이 포함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 용역시 시설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앞서 분석되지 않은 조치사항임. - 실시설계 용역시 시설물에 대한 설문을 실시 반영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과 예산 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제안된 공원 이용 프로그램 활성화하겠다는 개선안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 평등 조치사항이 성인지 예산서 성과목표 반영되지 않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실시설계 용역 시 시설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반영하였나?	Y	설문지가 따로 배포되지 않았으나 구두로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했음. 여성들의 참여를 위해 부녀회가 참석했으나 관련위원회는 없음.
	시설물 설치 시 여성이 선호하는 시설을 위주로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였나?	N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이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는가? (※ 단순 시설계획은 제외함)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또는 의견 수렴 단계가 있는가?	Y	공원 설계전에 지역주민(부녀회장 및 주민들)의 참여로 주민들과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그러나 자료로 남길만한 설문지같은 것들은 없었고, 주로 구두를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하도록 하였음.
		(그런 단계가 있다면) 어떤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Y	
		(그런 단계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은 어떠한가?	관련 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참여 비율은?	N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은?	-	
		여성 위원의 직업군은?	-	
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참여 장치가 있는가?	공원 관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장치가 있는가?	N	공식적인 제도로 확립된 주민의견창구는 없으며 시설물 관련한 민원창구가 있음. 지역여성들의 참여 비율을 논할 만큼의 해당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음.	
	(그런 장치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가? 지역 여성들의 참여 비율은?	-		
	(그런 장치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접근성	공원의 물리적 환경이 돌봄 책임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는가? (※ 소규모 공원 제외)	. 유모차, 휠체어, 실버카 대여 서비스 (관리사무소 내부나 인근)	N	새로 설치된 공원이 아닌 파손된 부분의 단순 교체작업을 위한 관리수준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 시설은 없음. 있기는 하나 유명무실함. - 화장실 안내판 없고, 화장실 입구 진입로의 경사도가 심해 접근에 어려움. 담당관리가 명확하지 않음. 그 전에 LH 관리였다가 현재 서구청으로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리선이 명확히 처리되고 있지 않음(옥녀봉의 체육공원은 여전히 LH 관리부인이어서 서구청 담당이 아님). 그러나 올해까지 모두 담당관리가 서구청으로 넘어올 예정이어서 추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설치	N	
		. 장애인 화장실 설치 ※ 법령 확인 요	Y	
		. 휴게시설(의자 등)의 규칙적 설치(200m 이내 마다) (※ 200m ² 미만 제외)	N	
	. Barrier-Free 보행로 : 보도폭 2m이상(최소 1.5m 이상),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 단차가 없거나 2cm 이하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근력 운동 관련 시설의 경우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분리 설치나 높이·무게 등의 조정 가능)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잔디)축구장 설치 시 게이트볼장 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그 밖의 부대시설 설치 시,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	N	공원내의 풋살경기장이 있으나 항상 공개된 것은 아니고, 필요시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이용가능한 상태임. 그 밖의 부대시설의 경우 남녀 모두 이용가능하나 정확한 안내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임.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한가? (※ 어린이 공원 제외)	대중교통 시설에서 출입구까지 이내도보로 5분 이내—300m— 거리에 위치하여 누구나 이용이 용이한지 점검	N	해당 공원은 버스정류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 인근의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차량이용이 용이함.	
시설 이용 관련 불편사항 접수창구가 개방되어 있으며, 민원 대처는 신속히 이루어지는가?	불편사항을 고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창구(또는 관련 정보)가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N	아직 LH에서 서구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부분이 명확히 나뉘져 있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불편사항을 고지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위한 창구 등은 설치가 안된 상태임.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되는가?			
안전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	. 야간 조도 (가로등은 20미터 간격이내 또는 3-4m 전방에 있는 사람 얼굴 인식)	Y	있기는 하나 아직 사람들이 거의 이용치 않은 공원이 라 밤에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듯함.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p>려·적용되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시야 확보 여부 - 보행로에 개방된 조경 - 휴식공간의 시야확보 - 시설물 주변(화장실 등) 	N	<p>넓은 지역으로 구성돼 있어 안전한 시야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음.</p>
	<p>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적용되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이 용이한 위치에 놀이 공간 설치 여부 . 비상시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 설치 여부 (대형 공원, 지하 주차장, 화장실) . CCTV 설치 여부 (사각지대 방지에만 활용) . 정기적인 순찰 여부 	N	<p>워낙에 넓은 지역이고, 아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가 안되는 공터같음. 따라서 공원 주변에 필요 시설물 및 방범용 CCTV 설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p>
	<p>공원 내 설치 시설물의 안전 상태는 적절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합격 여부 (www.cpf.go.kr) .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 여부 (2년마다 검사기관 정기시설 검사) . 놀이터 안내판 : 놀이터 구조물이 2-5세 대상인지 또는 5-12세 대상인지 연령대별 놀이터 디자인 명시 여부 . 놀이기구의 안전성 여부 (파손, 돌출, 얽매이면 빠지기 힘든 구조, 충돌 방지 공간 및 낙하할 때 적정 높이) . 벤치와 간이 정자 등 휴게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N	

④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총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여성이 원하는 시설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이해가 필요할 듯 하고, 성평등 정책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고민이 앞서 진행되어야 할 듯함. 주민공원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참여 비율만으로 성평등을 달성한다는 사고를 바꿔야할 듯함. 구체적인 사례제시가 담당공무원들에게 인식돼야할 것으로 보임.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① 시민공청 과정에서의 여성참여비율만으로 여성정책이라는 생각은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봄. 실제로 여성의 참여비율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부녀회에서 담당한다는 답변이 그것임. 부녀회의 구성원이 모두 성평등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임.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민공청 과정에서 단편적인 여성의 비율만을 논하기보다는 지역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역 생협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부터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해 온 장애인을 시민공청 과정에 참여토록 해 실제 어떤 부분이 더 부족한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훨씬 더 풍부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현장 모니터링 사진



<파손된 바닥>



<정리되지 않은 공원 주변>



<관리되지 않은 주변 수목들>



<관리 전의 주변 환경>



<도안 근린공원 종합계획도>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공원·녹지사업(서구)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6월 13일(금) 1시/ 6월 30일(월) 1시
모니터링 장소	도안근린공원, 서구청 공원녹지과
인터뷰 대상자	서구청 공원녹지과 사업담당자
참고자료	2012년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계획 2013년 걷고싶은 숲길 조성 추진계획
작성자	임 현 정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서구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공원녹지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 정비 10km · 월평근린공원(종합안내판, 생태해설판, 구간안내판 테크계단, 방향안내판, 해설판, 안전웬스 등) · 도안근린공원(종합안내판, 구간 안내판, 안전웬스, 방향표지판, 폐침목 계단정비, 야생화 식재, 등산로 정비 등) 		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 용역 시 시설물에 대한 설문 실시 반영 · 시설물 설치 시 여성이 선호하는 시설물 위주로 설계 반영 추진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 분석평가서 제출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 성인 지예산담당관이 협의(세출예산서 근거) · 대상과제 선정에 전문가 참여하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음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p>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되었음. 또한 앞서 분석되지 않은 조치사항이 포함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 용역시 시설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앞서 분석되지 않은 조치사항임. - 실시설계 용역시 시설물에 대한 설문을 실시 반영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과 예산 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제안된 공원 이용 프로그램 활성화하겠다는 개선안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 평등 조치사항이 성인지 예산서 성과목표 반영되지 않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실시설계 용역 시 시설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반영하였 나?	Y	인근지역의 부녀회장과 주변인, 주민자치회 대상으로 구두로 선호 도 조사를 함
	시설물 설치 시 여성이 선호하는 시설을 위주로 설계에 반영 하여 추진하였나?	N	여성이 선호하는 시설물의 정의가 모호함.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또는 의견 수렴 단계가 있는가?	Y	설계전에 지역주민(부녀회장 및 주변인)조직을 참여도록 함
	(그런 단계가 있다면) 어떤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 여하는가?	Y	직접 설계시공하기 전에 여성주민(부녀회장 및 주변인)을 대상으로 구두로 선호도조사를 함
	(그런 단계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 획이 있는가?	-	관련한 법제나 제도가 없어 계획이 없음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관련 위 원회 구성 현황은 어떠한가?	N	공식적으로 조직된 지역주민위원회는 없음
관련 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참여 비율은?	-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은?	-		
	여성 위원의 직업군은?	-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참여 장치가 있는가?	공원 관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장치가 있는가?		N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주민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민원으로 시설물 관련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임
	(그런 장치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가? 지역 여성들의 참여 비율은?		N	해당 장치가 없음
	(그런 장치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N	관련법령이 없어 정책반영을 고려하지 않음
접근성	공원의 물리적 환경이 돌봄 책임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는가? (※ 소규모 공원 제외)	. 유모차, 휠체어, 실버카 대여 서비스 (관리사무소 내부나 인근)	N	화장실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이 없음.
		.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설치	N	없음
		. 장애인 화장실 설치 ※ 법령 확인 요	Y	장애인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지만, 화장실 설치를 알리는 안내판이 없을 뿐 아니라, 화장실입구에 경사도가 심하여 접근하기에 불편해 보임.
		. 휴게시설(의자 등)의 규칙적 설치(200m 이내마다) (※ 200m ² 미만 제외)	Y	해당공원의 모니터장소는 등산로인관계로 휴게시설의 설치규정에 맞지 않지만, 적절하게 의자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 Barrier-Free 보행로 : 보도폭 2m이상(최소 1.5m 이상),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 단차가 없거나 2cm 이하	N	모니터링 대상지가 등산로로 지표를 적용하기 어려움.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근력 운동 관련 시설의 경우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분리 설치나 높이·무게 등의 조정 가능)	N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이라고 보여지지 않음.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잔디)축구장 설치 시 게이트볼장 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N	공원내의 풋살경기장이 있지만, 이용이 제한되어 있고, 잠겨있음.	
	. 그 밖의 부대시설 설치 시,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	N	공원내의 편의시설에 대한 위치도가 없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한가? (※ 어린이 공원 제외)	대중교통 시설에서 출입구까지 이내도보로 5분 이내 —300m— 거리에 위치하여 누구나 이용이 용이한지 점검	N	버스정류장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인근까지 대중교통이 없음. 또한 주변과 공원에 대한 안내도의 개수가 부족하고 안내표식이 되어 있지 않아 찾아보기 힘들다.
	시설 이용 관련 불편사항 접수창구가 개방되어 있으며, 민원 대치는 신속히 이루어지는가?	불편사항을 고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창구(또는 관련 정보)가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N	도안근린공원은 아직 도안지구사업을 담당하는 LH공사에서 관리에 대한 권한을 서구청으로 이관하지 않은 상태임.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되는가?	N	전화 중심의 민원만 처리함
안전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적용되었는가?	. 야간 조도 (가로등은 20미터 간격이내 또는 3-4m 전방에 있는 사람 얼굴 인식)	Y	조명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모니터링 대상지가 넓고 산으로 되어 있어 조명이 부족함
		. 안전한 시야 확보 여부 - 보행로에 개방된 조경 - 휴식공간의 시야확보 - 시설물 주변(화장실 등)	N	공원입구는 화단에 잡초가 무성해서 외부에서의 사야를 다 가리고 있음. 또한 주요구간(화장실인근, 등산로 입구)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④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총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정책개선안은 구체적으로 제안되어 조치사항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임. 다만, 관련한 법령이 없어 행정적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여성들이 선호하는 시설물만 설치한다고 해서 성평등한 정책으로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회의적이라는 판단되고, 정책과 관련한 공무원과 용역설계하시는 분들의 성평등에 대한 인지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판단이 듭.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용역시 시설물에 대한 설문과 여성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방법과 과정에서 남성은 물론 여성들도 평등한 생활에 대한 사전교육이 있어야 정책개선안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평등조치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과 남성과 여성의 생활 속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② 단순 설계전 혹은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해서 성평등한 정책으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③ 또한 지역주민이 여성이 많다고 해서 여성의 이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판단은 근거가 약해 보인다. 단순히 여성을 위한 공원시설물(화장실 등 제외)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원 등의 시설물을 이용객을 남녀 비율을 파악하고, 주요이용시간대 등의 이용패턴 등을 고려한 시설물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④ 서구의 도안근린공원은 도안지구사업을 담당하는 LH공사에서 관리업무가 이관되지 않아 공원과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의 한계가 있었음. 해당 모니터링 사업인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과 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업무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터뷰조사에서 적극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음.

- ⑤ 하지만, 현재 근린공원주변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공원 이용자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관리주체와 책임여부를 떠나 누구나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주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 ⑥ 그런 관점에서 도안근린공원은 전체적으로 전혀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음. 각종 생활쓰레기가 시설물 주변에 널려있고, 여름철 수목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에 의해 공원의 의자는 이용할 수 없었음.
- ⑦ 또한 주변 공지에 주민들이 조성한 텃밭으로 인해 등산입구가 가려져 접근이 어려워 보이고, 전체적으로 근린공원의 안내도가 없어, 등산로의 위치, 주변 시설에 대한 안내가 전혀 되지 않았음.

■ 모니터링 현장 모습 : 서구 도안근린공원



등산로입구의 화장실 주변모습



공원시설 관리상태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공원·녹지사업(유성구)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6월 13일 금요일 / 6월 15일 일요일 야간
모니터링 장소	노은역 쌈지공원
인터뷰 대상자	유성구 공원녹지과 사업담당자
참고자료	2012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설명서 2013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설명서
작성자	이 채 민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유성구	시민휴식공간 조성	공원녹지과	2013년 시책사업 (시 푸른도시과 -13113/2012.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관내 일원 / 나대지 등 · 사업내용 :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등 · 사업기간 : 2013. 1월 ~ 12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신체적 차이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한 시설 도입 등 이용만족도 제고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 분석평가서 제출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었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 성인 지예산담당관이 협의(세출예산서 근거) · 대상과제 선정에 전문가 참여하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 이후 자치구에서 대면컨설팅 1회 진행,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 어린이공원 및 노후공원 재정비를 통해, 지역주민 편의시설 이용효과 향상 ⇒ 조치사항에 반영됨 · 대상과제의 적정함 제시 ⇒ 반영됨 · 분석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전체적인 방법 및 흐름 ⇒ 반영됨 ·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내용 구성 제시 ⇒ 반영됨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p>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신체적 차이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한 시설도입 등 이용만족도 제고라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과,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동일하게 제안된 개선안이 반영되었음.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반영에서 제안된 위치별 특성에 대한 여건분석을 통하여 주이용 시간에 집중투자와 어린이, 노인 등 연령에 따른 요구조건에 대한 분석을 통한 사업추진은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 사업수혜의 성별 특성에서 제안된 쾌적한 녹지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남녀노소가 만족하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개선안도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제안된 성별, 신체적 차이점, 연령에 따른 요구도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추진이라는 개선안도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지 않음 	

③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신체적 차이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이 도입되었는가?	Y	신체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의 단차제거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이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는가? (※ 단순 시설계획은 제외함)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또는 의견 수렴 단계가 있는가?	Y	2012년도 사업시공 전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함
		(그런 단계가 있다면) 어떤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Y	2012년도 사업시공 전에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여성참여인원수 확인 불가능)
		(그런 단계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	(공사진행) 때문에 공원의 형식만 빌렸을 뿐 사실 상가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민휴식공간에 가까움.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은 어떠한가?	관련 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참여 비율은?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은? 여성 위원의 직업군은?	N	해당사항없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참여 장치가 있는가?	공원 관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장치가 있는가? (그런 장치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가? 지역 여성들의 참여 비율은? (그런 장치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	단. 현재 공원녹지관리방식과 관련하여 주변상인회에서 자발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구청과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어떤 화단을 어떤 상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접근성	공원의 물리적 환경이 돌봄 책임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는가? (※ 소규모 공원 제외)	. 유모차, 휠체어, 실버카 대여 서비스 (관리사무소 내부나 인근) .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설치 . 장애인 화장실 설치 ※ 법령 확인 요 . 휴게시설(의자 등)의 규칙적 설치(200m 이내마다) (※ 200m ² 미만 제외) . Barrier-Free 보행로 : 보도폭 2m이상(최소 1.5m 이상),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 단차가 없거나 2cm 이하	- 필요 필요 - -	본 공원이 지하철역 옆으로 지하철역사의 공공화장실을 주로 이용하거나 인근 상가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표지판이 없고, 공공화장실에 대한 안내서가 없어 매우 불편함. 사용가능했던 화장실 역시 시설이 노후하고 장애인용 화장실은 한 사람이 들어가면 딱찰만큼 입구가 좁음. 한편, 공원의 바닥은 건설과 담당이어서 따로 알아봐야 한다고 함. 바닥 역시 아이들이나 여성이 다니기 불편함. 곳곳에 공사 흔적 있음.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근력 운동 관련 시설의 경우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분리 설치나 높이·무게 등의 조정 가능)	-	해당사항 없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잔디)축구장 설치 시 게이트볼장 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부대시설 설치 시,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	-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한가? (※ 어린이 공원 제외)	대중교통 시설에서 출입구까지 이내도보로 5분 이내—300m— 거리에 위치하여 누구나 이용이 용이한지 점검	Y	2012년에는 4번출구 중심으로, 2013년에는 3번출구쪽으로 공사 진행하여 대중교통의(지하철 이용)접근성은 좋음.
시설 이용 관련 불편사항 접수창구가 개방되어 있으며, 민원 대치는 신속히 이루어지는가?	불편사항을 고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창구(또는 관련 정보)가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	해당사항 없음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되는가?	N	민원은 신문고를 통하거나 전화를 통해 상시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공원내에 따로 민원을 받고 있는 곳은 없었음.	
안전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적용되었는가?	. 야간 조도 (가로등은 20미터 간격이내 또는 3-4m 전방에 있는 사람 얼굴 인식)	-	조명은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고, 바로 앞 상가들 때문에 필요도 없음.
		. 안전한 시야 확보 여부 - 보행로에 개방된 조경 - 휴식공간의 시야확보 - 시설물 주변(화장실 등)	-	주변이 상가밀집지역이어서 별도의 안전관련한 시설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보임.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적용되었는가?	. 보호관찰이 용이한 위치에 놀이 공간 설치 여부 . 비상시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 설치 여부 (대형 공원, 지하 주차장, 화장실) . CCTV 설치 여부 (사각지대 방지에만 활용)	-	모니터링 대상지가 공원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도시공원이 아닌 도심 녹지축의 시민휴식공간 차원의 공간(담당자)이기 때문에 제시된 지표의 모니터링에 해당사항 없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 정기적인 순찰 여부		
	공원 내 설치 시설물의 안전 상태는 적절한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합격 여부 (www.cpf.go.kr)	-	
		.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 여부 (2년마다 검사기관 정기시설 검사)		
		. 놀이터 안내판 : 놀이터 구조물이 2-5세 대상인지 또는 5-12세 대상인지 연령대 별 놀이터 디자인 명시 여부		
		. 놀이기구의 안전성 여부 (파손, 돌출, 얽매이면 빠지기 힘든 구조, 충돌 방지 공간 및 낙하할 때 적정 높이)		
		. 벤치와 간이 정자 등 휴게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4]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총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p>현재 삼지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는 벤치뿐이기 때문에 성평등조치사항 관련한 개선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p> <p>실제 해당 공간은 유아를 동방한 주부나 학원밀집지역인 관계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바닥(시설과 담당)의 재보수가 요구되며, 장애인을 위한 시설 역시 미흡하기 때문에 공공화장실 개보수와 이에 관련한 정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p>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④ 해당 모니터 공간인 노은역 삼지공원은 일반적인 도시공원이 아니고, 도심녹지축에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한 사업임. 따라서 삼지공원은 이름만 공원의 형식을 빌려왔을 뿐 공원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도심 휴식공간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담당공무원). 이런 시각에서 공원 시설물 설치와 관리에 대한 담당자의 행정적인 책무성을 요구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어떤 공간이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담당자 및 관련자들의 성평등 의식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같은 공간이나 담당행정부서가 나뉘어져 있어서, 관리의 효율성과 민원처리 등의 절차상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도로, 수목, 화장실, 자전거 거치대 등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부서가 다름).

■ 현장 모니터링 사진



<공원 바닥>



<파손된 공원바닥>



<공원 내의 장애인화장실-입구가 비좁아 실제 사용어려움>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업 분야	공원·녹지사업(유성구)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6월 13일 (금) 10시, 2시 / 6월 5일 (일) 오후5시
모니터링 장소	노은역 쌈지공원, 유성구청
인터뷰 대상자	유성구 공원녹지과 사업담당자
참고자료(별첨)	'2013년 마을마당쌈지공원조성공사 주민설명회 보고서 1부', '마을마당 쌈지공원 조성공사 주민설명회 결과 보고서 1부'
작성자	임 현 정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유성구	시민휴식공간 조성	공원녹지과	2013년 시책사업 (시 푸른도시과 -13113/2012.10.31)	· 대 상 : 관내 일원 / 나 대지 등 · 사업내용 :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등 · 사업기간 : 2013. 1월 ~ 12		150	·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신체 적 차이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한 시설 도입 등 이용만족 도 제고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 분석평가서 제출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었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 성인 지예산담당관이 협의(세출예산서 근거) · 대상과제 선정에 전문가 참여하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 이후 자치구에서 대면컨설팅 1회 진행,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 어린이공원 및 노후공원 재정비를 통해, 지역주민 편의시설 이용효과 향상 ⇒ 조치사항에 반영됨 · 대상과제의 적정함 제시 ⇒ 반영됨 · 분석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전체적인 방법 및 흐름 ⇒ 반영됨 ·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내용 구성 제시 ⇒ 반영됨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p>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신체적 차이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한 시설도입 등 이용만족도 제고라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과,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동일하게 제안된 개선안이 반영되었음.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반영에서 제안된 위치별 특성에 대한 여건분석을 통하여 주이용 시간에 집중투자어린이, 노인 등 연령에 따른 요구조건에 대한 분석을 통한 사업추진은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 사업수혜의 성별 특성에서 제안된 쾌적한 녹지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남녀노소가 만족하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개선안도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제안된 성별, 신체적 차이점, 연령에 따른 요구도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추진이라는 개선안도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지 않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신체적 차이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이 도입되었는가?	Y	신체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의 단차제거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이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는가? (※ 단순 시설계획은 제외함)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또는 의견 수렴 단계가 있는가?	Y	2012년도 사업시공 전 사업설명회를 진행함
		(그런 단계가 있다면) 어떤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Y	2012년도 사업시공 전에 사업대상지에서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진행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견 청취(주민 등 14명 참석)함. 여성참여확인이 불가능함
		(그런 단계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N	다양한 방식의 주민의견수렴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은 어떠한가?	관련 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참여 비율은?	N	모니터링 대상장소가 공원이 아닌 도심녹지공간에 단순 시민들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관련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은?	N	
		여성 위원의 직업군은?	N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참여 장치가 있는가?	공원 관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장치가 있는가?	N	단. 현재 공원녹지관리방식과 관련하여 주변상인회에서 자발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구청과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음(1상가 1화단 관리활동, 화단꽃말 제작의뢰 등)
		(그런 장치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가? 지역 여성들의 참여 비율은?	N	
		(그런 장치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N	
접근성	공원의 물리적 환경이 돌봄 책임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는가? (※ 소규모 공원 제외)	. 유모차, 휠체어, 실버카 대여 서비스 (관리사무소 내부나 인근)	N	모니터링 대상지에는 화장실이 없지만, 대상지가 지하철역 옆으로 지하철역사의 공공화장실을 주로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인근에 '개방화방실' 이 있음.
		.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설치	Y	
		. 장애인 화장실 설치 ※ 법령 확인 요	Y	
		. 휴게시설(의자 등)의 규칙적 설치(200m 이내마다) (※ 200m ² 미만 제외)	Y	
	. Barrier-Free 보행로 : 보도폭 2m이상(최소 1.5m 이상),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 단차가 없거나 2cm 이하	Y	초기 조성단계에서는 보행로에 장애물이 제거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에는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인근 상가의 불법입간 판이 많아 보행에 불편함을 줌.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근력 운동 관련 시설의 경우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분리 설치나 높이·무게 등의 조정 가능)	N	해당 주민 편의시설물이 없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잔디)축구장 설치 시 게이트볼장 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N	해당 주민 편의시설이 없음
		. 그 밖의 부대시설 설치 시,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	N	없음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한가? (※ 어린이 공원 제외)	대중교통 시설에서 출입구까지 이내도보로 5분 이내—300m— 거리에 위치하여 누구나 이용이 용이한지 점검	Y	지하철 역사 바로 옆으로 접근성이 좋음
	시설 이용 관련 불편사항 접수창구가 개방되어 있으며, 민원 대치는 신속히 이루어지는가?	불편사항을 고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창구(또는 관련 정보)가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N	없음.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되는가?		N	공원화단안에 생활쓰레기처리가 안됨 공원바닥이 파손 됨 공원인근상가의 불법광고물이 많음	
안전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적용되었는가?	. 야간 조도 (가로등은 20미터 간격이내 또는 3-4m 전방에 있는 사람 얼굴 인식)	N	공원내의 조명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인접한 자동차도로의 조명이 간접적으로 녹지대까지 밝혀주는 정도임.
		. 안전한 시야 확보 여부 - 보행로에 개방된 조경 - 휴식공간의 시야확보 - 시설물 주변(화장실 등)	N	별도의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주변이 상가밀집지역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적어보임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적용되었는가?	. 보호관찰이 용이한 위치에 놀이 공간 설치 여부	N	모니터링 대상지가 공원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도시공원이 아닌 도심 녹지축에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쌈지공원(담당자 의견)으로 제시된 지표로 모니터링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해당 지역의 녹지대에 있는 수목관리를 위한 순찰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한 순찰은 없음
	. 비상시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 설치 여부 (대형 공원, 지하 주차장, 화장실)	N	
	. CCTV 설치 여부 (사각지대 방지에만 활용)	N	
	. 정기적인 순찰 여부	N	
공원 내 설치 시설물의 안전 상태는 적절한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합격 여부 (www.cpf.go.kr)	N	해당시설이 없음
	.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 여부 (2년마다 검사기관 정기시설 검사)	N	해당시설이 없음
	. 놀이터 안내판 : 놀이터 구조물이 2-5세 대상인지 또는 5-12세 대상인지 연령대별 놀이터 디자인 명시 여부	N	해당시설이 없음
	. 놀이기구의 안전성 여부 (파손, 돌출, 엮매이면 빠지기 힘든 구조, 충돌 방지 공간 및 낙하할 때 적정 높이)	N	해당시설이 없음
	. 벤치와 간이 정자 등 휴게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N	해당시설이 없음

④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총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조치사항의 내용이 포괄적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는 벤치뿐으로 성평등조치사항의 적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사업대상지가 단순시민휴식공단의 제공이기 하지만, 조성단계에서 충분히 반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전반적으로 성평등조치사항의 성과가 크게 부각되지 않음. 실제로 대상지는 유아를 동반한 주부나 야간의 이용자들이 많아 야간시아확보를 위한 직접조명과 다양한 높낮이의 벤치의 설치가 요구됨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① 사업대상지인 노은역 쌈지공원은 일반적인 도시공원이 아니고, 도심녹지축에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한 사업임. 이런 시각에서 공원 시설물 설치와 관리에 대한 담당자의 행정적인 책무성을 요구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제 대상지를 직접 확인하고, 대상지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어떤 공간이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담당자 및 관련자들의 성평등 의식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같은 공간에서 담당행정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어, 관리의 효율성과 민원처리 등의 절차상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도로, 수목, 화장실, 자전거 거치대 등)

■ 현장 모니터링 사진



자전거불법주차



불법광고물



파손된 시설물



파손된수목시설

■ 기타의견

- ① 모니터링활동 대상지는 2012년 시민휴식공간조성사업(2012년 노은역 3번출구 앞, 2013년 노은역 4번출구앞, 2014년 노은역1,2 출구 앞 예정) 대상지 중 노은역 쌈지공원은 기존 녹지공간의 확충과 소규모 휴식공간의 조성을 위한 주민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원관리와 관련한 법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이 아니다. 그렇게 때문에 공원시설물과 관련한 모니터링의 한계가 있었음.
- ② 하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업계획과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그를 위한 행정의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단순 사업설명회는 홍보가 미비하여 참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특히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이를 위한 사전 주민욕구조사라든지 주변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할 듯함.(예. 공원주민회)
- ③ 녹지공간에서 흡연자가 너무 많다. 모니터링 대상지는 노은동에서도 주변에 학원이 밀집된 곳으로 낮 시간과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임을 감안하여, 금연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역의 상점가를 활용한 주민방범대를 조직하여 늦은 시간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
- ④ 또한 주변에 CCTV가 없어 범죄에 대한 노출이 우려되는 곳이기도 함. 주변 학원의 청소년들의 사각지대(건물 코너, 건물과 건물 사이)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
- ⑤ 사후 관리의 방법에서도 현재는 공원시설물의 파손과 관련한 민원(전화에 한함)처리의 차원의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현재 주변 상가회에서 자발적으로 공원수목을 관리하기 위한 주민활동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 수목관리에만 한정되어 있어,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 시민이용을 방해하는 옥외광고물들이 난립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하였음.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불편신고' 함을 설치하고,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이용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관리위원회'를 운영되어야 함.

■ 참고자료 : 2012년 마을마당 쌈지공원 조성공사 주민설명회 결과



마을마당 쌈지공원 조성공사 현장설명



마을마당 쌈지공원 조성공사 현장설명

1. 주민설명회 개요

- 일 시 : '12. 5. 7(월) 16:00 ~ 17:00(1시간)
- 장 소 : 노은역광장 일원(2012년 쌈지공원 조성 대상지)
- 참 석 자 : 14명
 - 주 민 : 노은1동 주민 일원(노인회, 부녀회, 상가번영회)
 - 구 청 : 녹지담당 외 1인
 - 동사무소 : 노은 1동장 박황구 외 2명
 - 시 공 사 : 금성건설(주) 현장대리인 김항섭
- 설명내용 : 마을마당 쌈지공원 조성에 대한 설명 / 설명자 : 녹지7급 김 영 철

2. 주민의견 및 검토사항

- 기존 녹지대 훼손이 많은 실정인데 앞으로 훼손 우려가 없는지?(노봉회)
⇒ 기존 녹지대 폭을 확장하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구획하여 훼손 최소화 할 예정
- 여름철 그늘을 피할 수 있는 녹음수가 식재되는지?(노봉회)
⇒ 노은역 광장주변 버스승차 대기소 옆 녹음수(느티나무) 식재 반영
- 상가 이용객 및 인근 지역주민이 쉴 수 있는 의자가 설치되는지?(부녀회)
⇒ 녹지대에 인접하여 벤치 및 앉음벽을 설치, 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
- 기존 녹지대 내 이팝나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 할 예정인지?(노봉회)
⇒ 녹지대 확폭 및 보완에 따른 일부수목 이식 및 추가식재 예정임을 설명
- 상가내 입주한 학원의 학생들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상가번영회 회장)
⇒ 녹지 사이에 이동 통행로를 개설하여 원활히 이동할 수 있음을 설명

3. 보고자 의견

- 2012년 마을마당 쌈지공원 조성공사에 주민의견 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공원·녹지사업(대덕구)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6월 25일 오후 2시 / 2014년 7월 3일 오후 3시
모니터링 장소	동춘당 공원
인터뷰 대상자	공원과 사업담당자
참고자료	동춘당근린공원 다목적잔디광장 보완계획
작성자	이 채 민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대덕구	도시공원조성 : 공원 업그레이드 및 노후공원 재정비사업	공원녹지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행복어린이공원 조성 · 노후공원재정비 대상지 선정 (2013. 1)		7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수 전지 등의 관리 강화를 통해 공원 외부에서 공원 안까지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안전 사고 발생 예방 · 경사지 완화 및 공원 진입 경계턱 등을 제거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시설 이용의 편리성 제고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 분석평가서 제출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었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 성인지예산담당관이 협의(세출예산서 근거) · 대상과제 선정에 전문가 참여하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 이후 자치구에서 대면컨설팅 1회 진행,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정비사업시 안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대책마련 필요와 여성 친화적인 시설 배치 등을 제안 ⇒ 조치사항에 반영됨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되었음. - 조경수 전지 등의 관리강화를 통하여 공원외부에서 공원안까지의 시야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한다는 개선안은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하였음. - 경사지 완화 및 공원진입 경계턱 등을 제거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시설의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한다는 개선안도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분석에 기반하였음. - 사업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제안된 연령대별, 계층별 사회적 약자층의 편리함을 더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개선안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지 않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적절한 조경수 전지를 통해 공원 외부에서 공원 안까지 시야 확보가 이루어졌는가?	Y	전반적으로 공원내부까지 모두 시야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경사지를 완화하고 공원 진입 경계턱 등을 제거하였는가?	Y	대체로 공원 전체의 경사지가 완만하고, 문화공원차원에서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음. 그러나 공원 주차장 쪽과 화장실 진입로에서 여전히 경사가 가파른 모습을 보였음. 또한 바닥 하수처리 부분에 공사가 미처 진행되지 못한 모습이 있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듯함.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이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는가? (※ 단순 시설계획은 제외함)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또는 의견 수렴 단계가 있는가? (그런 단계가 있다면) 어떤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그런 단계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N	새로 설치된 공원이 아닌 파손된 부분의 단순 교체작업을 위한 관리수준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사항 없음.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은 어떠한가?	관련 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참여 비율은?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은? 여성 위원의 직업군은?	N	해당사항 없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참여 장치가 있는가?	공원 관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장치가 있는가?	N	해당사항 없음.	
	(그런 장치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가? 지역 여성들의 참여 비율은?			
	(그런 장치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접근성	공원의 물리적 환경이 돌봄 책임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는가? (※ 소규모 공원 제외)	. 유모차, 휠체어, 실버카 대여 서비스 (관리사무소 내부나 인근)	N	대여서비스 없음.
		.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설치	N	없음.
		. 장애인 화장실 설치 ※ 법령 확인 요	Y	남녀화장실 모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돼 있으나,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출입구 협소 및 경사길).
		. 휴게시설(의자 등)의 규칙적 설치(200m 이내마다) (※ 200m ² 미만 제외)	Y	규칙적으로 비교적 잘 설치돼 있었음. 낮에는 더워서 활용도가 낮지만, 인근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음.
		. Barrier-Free 보행로 : 보도폭 2m이상(최소 1.5m 이상),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 단차가 없거나 2cm 이하	Y	일부분 설치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근력 운동 관련 시설의 경우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분리 설치나 높이·무게 등의 조정 가능)	N	본 공원은 문화공원(동춘당 공원)으로 문화재청의 관리 역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운동, 체육시설은 없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잔디)축구장 설치 시 게이트볼장 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그 밖의 부대시설 설치 시,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	N	해당사항 없음.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한가? (※ 어린이 공원 제외)	대중교통 시설에서 출입구까지 이내도보로 5분 이내—300m— 거리에 위치하여 누구나 이용이 용이한지 점검	Y	동춘당공원은 버스 출발지이자 최종목적지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매우 용이함.
	시설 이용 관련 불편사항 접수창구가 개방되어 있으며, 민원 대처는 신속히 이루어지는가?	불편사항을 고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창구(또는 관련 정보)가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되는가?	Y	관련정보를 눈에 띄게 보이는 창구 같은 곳은 없으나 공원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음. N 공원 내에 화장실 두 군데가 있는데, 관광객 모두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민원의 전달사항에 문제인 듯함.
안전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적용되었는가?	야간 조도 (가로등은 20미터 간격이내 또는 3-4m 전방에 있는 사람 얼굴 인식)	Y	문화재청(동춘당)의 관리 역시 이뤄지고 있기에 야간에도 이용하기에 무리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전한 시야 확보 여부 - 보행로에 개방된 조경 - 휴식공간의 시야확보 - 시설물 주변(화장실 등)	N	공원내부의 문화재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 원거리 시야확보의 사각지대가 형성돼 안전한 시야가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려움.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적용되었는가?	보호관찰이 용이한 위치에 놀이 공간 설치 여부	Y	비교적 보호관찰이 용이한 편임.
		비상시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 설치 여부 (대형 공원, 지하 주차장, 화장실)	N	없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공원 내 설치 시설물의 안전 상태는 적절한가?	. CCTV 설치 여부 (사각지대 방지에만 활용)	Y	CCTV가 많으나, 그것은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사각지대의 CCTV는 설치돼있지 않음.
	. 정기적인 순찰 여부	Y	공원 내 관리사무소가 있어 정기적인 순찰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이 역시 문화재 관리이고, 공원을 위한 관리는 한 사람이 진행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합격 여부(www.cpf.go.kr)	N	해당사항 없음.
	.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 여부 (2년마다 검사기관 정기시설 검사)	N	
	. 놀이터 안내판 : 놀이터 구조물이 2-5세 대상인지 또는 5-12세 대상인지 연령대별 놀이터 디자인 명시 여부	N	
	. 놀이기구의 안전성 여부 (파손, 돌출, 엮매이면 빠지기 힘든 구조, 충돌 방지 공간 및 낙하할 때 적정 높이)	N	
	. 벤치와 간이 정자 등 휴게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Y	벤치와 간이 정자 등이 비교적 설치가 잘 돼 있음.

④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2012년 동춘당 주변정비사업이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함.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목적 잔디광장이 보완계획 중에 있었으나 예산반영 중 국가문화재 외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문제가 되어 중무문화재과에서 2012년도 국비보조사업 예산신청을 했으나 미반영 되었음. 때문에 지금까지 추가적인 국고보조사업의 결정이 이뤄진 적은 없었으며, 추가적인 사업은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에 따라 2013년도 예산 반영에 검토해봐야 할 사항임. 비교적 공원의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었으나 몇 군데에서의 바닥이 여전히 고르지 못해 장애인들과 유모차를 가지고 나오는 시민들에게는 불편한 부분이 있음(특히 배수시설의 구멍과 경계부분-사진참조).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① 해당 공원은 문화공원으로써 다른 공원들과는 달리 인근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 및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는 없었음. 그래서 공원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공원이기보다는 동춘당이라는 문화재를 이용하기 위한 부대시설 정도임. 이런 맥락에서 설치된 CCTV 역시 해당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의 설치가 목적이지만 공원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 구정홍보판(전광판)이 거의 하루 종일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전력낭비가 예상된다. 공원 내의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으나 두 군데 모두 위생상황이 좋지 않아(청소상태 불량) 여러 번 방문객들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

■ 현장 모니터링 사진



<문화재가 담당하고 있는 CCTV 및 안내표지판>



<관리가 안되고 있는 화장실 및 실제 장애인들의 이동이 불편한 화장실 입구>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공원 · 녹지사업(대덕구)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6월 25일 오후 2시 / 2014년 7월 3일 오후 3시
모니터링 장소	동춘당공원
인터뷰 대상자	대덕구 공원과 사업담당자
참고자료	2012년 동춘당근린공원 다목적잔디공원 보완계획 2013년 동춘당근린공원 다목적잔디공원 보완계획
작성자	임 현 정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 (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대덕구	도시공원조성 : 공원 업그레이드 및 노후공원 재정비사업	공원녹지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행복어린이공원 조성 · 노후공원재정비 대상지 선정 (2013. 1)		7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수 전지 등의 관리 강화를 통해 공원 외부에서 공원 안까지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예방 · 경사지 완화 및 공원 진입 경계턱 등을 제거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시설 이용의 편리성 제고

②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 분석평가서 제출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 성인지에 산담담당관이 협의(세출예산서 근거) · 대상과제 선정에 전문가 참여하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 이후 자치구에서 대면 컨설팅 1회 진행,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정비사업시 안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대책마련 필요와 여성 친화적인 시설 배치 등을 제안 ⇒ 조치사항에 반영됨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되었음. - 조경수 전지 등의 관리강화를 통하여 공원외부에서 공원안까지의 시야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한다는 개선안은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하였음. - 경사지 완화 및 공원진입 경계턱 등을 제거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시설의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한다는 개선안도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분석에 기반하였음. - 사업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제안된 연령대별, 계층별 사회적 약자층의 편리함을 더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개선안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지 않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적절한 조경수 전지를 통해 공원 외부에서 공원 안까지 시야 확보가 이루어졌는가?	Y	전반적으로 공원내부까지의 시야확보가 이루어졌지만, 등산로 진입구에 새롭게 설치한 정자가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었음.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경사지를 완화하고 공원 진입 경계턱 등을 제거하였는가?	Y	대체로 공원바닥 경사가 완만하고 경계턱은 적지만, 공원주차장쪽의 입구는 경사도가 심해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보였다. 또한 바닥의 하수처리부분의 구멍이 크고,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의 간격이 좁아 휠체어가 진입하기 어려워보였음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이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는가? (※ 단순 시설계획은 제외함)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또는 의견 수렴 단계가 있는가?	N	사업의 성격이 기존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임. 주민참여의 경험이 없음 해당 사항이 없음
		(그런 단계가 있다면) 어떤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N	
		(그런 단계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N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은 어떠한가?	관련 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참여 비율은?	N	없음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은?	N		
	여성 위원의 직업군은?	N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참여 장치가 있는가?	공원 관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장치가 있는가?	N	다만, 공원이용자들이 수시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 월 10여건의 민원에 남성이 주로 민원을 제기함(남성:여성=7:3)	
	(그런 장치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가? 지역 여성들의 참여 비율은?	N		
	(그런 장치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N		현행규정상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계획 없음
접근성	공원의 물리적 환경이 돌봄 책임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는가? (※ 소규모 공원 제외)	. 유모차, 휠체어, 실버카 대여 서비스 (관리사무소 내부나 인근)	N	필요성은 느끼지만 예산이 없음
		.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설치	N	사업의 성격이 신규로 시설을 설치할 정도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확보가 어려움
		. 장애인 화장실 설치 ※ 법령 확인 요	Y	남녀화장실 모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금암(연못)인근의 화장실의 설치된 장애인화장실 출입구가 협소하고, 시설물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음
		. 휴게시설(의자 등)의 규칙적 설치(200m 이내마다) (※ 200㎡ 미만 제외)	Y	휴게시설이 규칙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그늘이 없어 낮 시간에 이용자가 거의 없음. (실제 이용자의 인터뷰과정에서 확인함.)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Barrier-Free 보행로 : 보도폭 2m이상(최소 1.5m 이상),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 단차가 없거나 2cm 이하	Y	부분적으로 Barrier-Free 보행로로 조성이 되었음
. 근력 운동 관련 시설의 경우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분리 설치나 높이·무게 등의 조정 가능)		N	해당시설이 없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잔디)축구장 설치 시 게이트볼장 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N	해당시설이 없음. 다만 잔디광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되었다고 판단됨
		. 그 밖의 부대시설 설치 시,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	Y	해당시설이 없음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한가? (※ 어린이 공원 제외)	대중교통 시설에서 출입구까지 이내도보로 5분 이내—300m— 거리에 위치하여 누구나 이용이 용이한지 점검	Y	공원입구 앞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비교적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용이함
	시설 이용 관련 불편사항 접수창구가 개방되어 있으며, 민원 대처는 신속히 이루어지는가?	불편사항을 고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창구(또는 관련 정보)가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N	실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수창구나 유사 설치물을 찾아볼 수 없었음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되는가?	N	이용자들이 공원이용에 불편을 느끼지만 적절한 대처방법을 모르고 있었음	
안전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적용되었는가?	. 야간 조도 (가로등은 20미터 간격이내 또는 3-4m 전방에 있는 사람 얼굴 인식)	Y	야간에 이용하기에 충분히 밝음(이용자가 안전하다고 느낌)
		. 안전한 시야 확보 여부 - 보행로에 개방된 조경 - 휴식공간의 시야확보 - 시설물 주변(화장실 등)	N	동춘당공원의 특징상 규모가 크고, 공원내부에 문화재가 있어서 원거리의 안전한 시야 확보가 잘 안됨. 특히 공원내 편의시설물(정자 등)의 위치가 공원에서도 구석자리에 있어 4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었음.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적용되었는가?	. 보호관찰이 용이한 위치에 놀이 공간 설치 여부	Y	대체로 관찰이 용이한 편임
		. 비상시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 설치 여부 (대형 공원, 지하 주차장, 화장실)	N	해당시설물이 없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설치 여부 (사각지대 방지에만 활용) 	Y	전체 공원 내 주요부분에 CCTV가 3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지만, 사각지대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순찰 여부 	Y	공원내 관리사무소가 있어 관리인이 상근함. 하지만 공원의 수목 및 시설물 관리가 주요업무이고 안전을 목적으로 한 순찰은 아님
공원 내 설치 시설물의 안전 상태는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합격 여부(www.cpf.go.kr) 	N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음. 대상지의 공원이 유적지와 함께있는 공원으로 가족단위의 이용자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 휴게시설이나 놀이시설이 설치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 여부 (2년마다 검사기관 정기시설 검사)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 안내판 : 놀이터 구조물이 2-5세 대상인지 또는 5-12세 대상인지 연령대별 놀이터 디자인 명시 여부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기구의 안전성 여부 (파손, 돌출, 워매이면 빠지기 힘든 구조, 충돌 방지 공간 및 낙하할 때 적정 높이) 	N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치와 간이 정자 등 휴게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Y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고, 시설물들은 잘 관리되고 있음

4]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정책개선안으로 제안된 조치사항들은 실제 공원에서 정책으로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조경수 전지는 관련법령의 관계없이 관계공무원의 관리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또한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접근성이 사회적 약자에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사항이라고 판단됨.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해당 정책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지만,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이 모니터링 되었음. 화장실에 유아 변기 설치와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되어야 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점자블럭의 연계성을 고려한 추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그늘이 있는 쉼터가 부족하여 낮 시간에 이용자에 불편함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음. 따라서 휴식시설의 배치가 수정이 되거나 그늘 안으로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공원의 수목이 잘 정리되어 공원외부에서도 내부가 잘 보이게 수목이 관리 되고 있었음. 경계턱을 제거되었지만 여전히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배수시설의 구멍과 경계부분이 파손되거나, 공간이 커서 위험해 보였음.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① 동춘당 공원은 다른 공원과 달리 공원내의 민간소유의 문화재가 있는 공원임.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공원이라기보다는 동춘당 관광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부대적인 편의시설이라고 판단되었음. 따라서 공원 내의 편의시설은 물론 CCTV등의 설치가 공원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었던 것보다는 문화재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주변과 공원 출입구에 주로 설치되어 있었음.
- ② 이용자들의 낮 시간 이용자, 특히 하절기의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그늘 밑의 휴식공간이 거의 없었고, 정자의 위치가 호수주변이라 여름에 모기와

냄새로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음.

- ③ 예전에 공원 중앙부분의 소나무그늘아래의 '정자'가 있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현재 구정홍보판(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전광판 설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보는 사람이 없는데 하루 종일 켜져 있어 전력이 낭비된다고 공원이용자가 말함)
- ④ 공원 내의 화장실의 청소가 평일에만 이루어지고 있어 공원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전혀 청소관리가 안되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음. 또한 청소하시는 분이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용자의 의견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실제 모니터 당시 화장실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았음.
- ⑤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용하기 용이하게 바닥이 전반적으로 고른 편이지만,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이 부분적으로만 설치되어 있어서 공원의 접근, 특히 공원내의 시설물과 화장실의 이용이 불가능해 보였음. 점자블럭의 연속성이 전혀 없이 단절되어 있음.
- ⑥ 공원 전체 안내지도가 없어, 편의시설과 화장실의 위치를 한눈에 확인하기 힘들었고, 화장실표시가 멀리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아서 찾기 힘들었음. 공원내이용에 대한 안내(특히 금연구역)가 없다. 비상벨이 없고, 특히 화장실 내부에서 비상벨이 없었음.
- ⑦ 공원 내 관리사무소에서 공원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어 공원시설물의 상태는 양호하지만, 관리소 근무 중 공원 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모니터링 되어 이용자에 불쾌감을 주었음.
- ⑧ 동춘당근린공원은 문화재가 있는 문화공원으로 대전광역시가 설계하여 조성한 곳이며, 2010년도에 관리에 대한 업무가 대덕구로 이관되었음. 따라서 전체적으로 공원시설물의 설치등에 대한 업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인지가 전무하고, 예산 또한 관리, 유지 및 보수에 맞도록 책정되어 있어 성평등을 실현을 위한 조치사항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기가 힘들어 보임.

동춘당근린공원 지도



제2절 방문건강관리사업⁵⁾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업 분야	방문건강관리사업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 06. 16. 13:30 ~ 16:00
모니터링 장소	동구보건소 3층 회의실
인터뷰 대상자	보건소 사업 담당자
참고자료	2012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계획 및 실적 2013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계획 지역사회 건강조사(동구보건소)
작성자	윤 지 용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근거 법률	주요 내용	실적	예산 (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동구	방문건강 관리사업	보건소	국민건강증진 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 의 업무) 보건의료기본 법 제31조(평생국 민건강관리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건강문제가 있는 관내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인 력 : 10인(방문간호사 9인, 운동사 1인)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와 증상조절 여부를 조사하 여 군 분류 실시 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각종검사(혈압, 혈당, 당화혈색소 등) 상담 및 교육 - 운동요법, 식이요법지도 및 기초의약품 제공 등 - 대상자 요구에 따른 보건소 내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여성 2,395명 남성 4,123명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과 여성의 형평성 있는 방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가정방문외 에도 남성이 많이 모여 있는 경 로당,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건 강관리 실시 · 의료 및 구료비, 방문건강관리 인 건비 등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예 산편성 ·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방안 마련

5) 방문건강관리사업 모니터링 활동가들은 함께 5개 자치구별로 보고서 작성(작성자 이름은 주요 작성자 이름을 적요)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 분석평가서 제출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등으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었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 성인지예산담당관이 협의(세출예산서 근거) · 대상과제 선정에 전문가 참여하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음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p>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만 반영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과 여성의 형평성 있는 방문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가정방문 외에도 남성이 많이 모여 있는 경로당,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겠다는 개선안은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분석과, 사업수혜의 성별특성 분석에서 동시에 제안된 개선안임. - 의료 및 구료비,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등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예산편성하겠다는 조치사항은 물성적인 조치사항으로 앞서 분석된 사항이 아님. -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방안 마련은 물성적인 조치사항으로 앞서 분석된 사항이 아님.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제안된 남녀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질병의 발생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건강관리를 실시한다는 개선안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지 않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2013년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경로당, 복지시설 등의 기관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포함되었는가?	N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관리대상자를 직접 가정방문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므로 경로당, 복지시설 등은 지역담당간호사가 필요시 방문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였으며 심 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서 경로당, 복지시설에서 건강관리 및 교육을 실시함
	2013년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의료 및 치료비,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등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는가?	Y	의료 및 구료비 증액
	2013년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신규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는가?	Y	의사가 참여하는 방문팀 운영 - 지역담당제를 통한 방문간호사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시 단독 해결이 어려운 경우 보건, 복지관련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팀을 구성, 방문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한논의, 타 사업 및 타 부서와의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관리 - 팀을 구성하여 방문한 후 보건소 전문의와 함께 건강문제 해결 방안 모색
	2013년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신규로 개발된 교육이 있는가?	Y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 교육 (2013.8.5~8.7). 교육내용 :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이해, 리더쉽 및 의사소통 관련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 인력 직무교육 (2013.6.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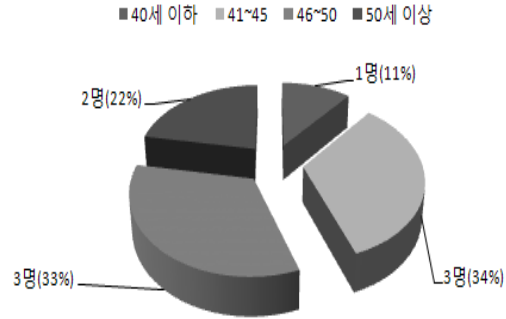
㉞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모니터 의견
참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수립에 지역 여성 건강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가?		
		(참여한다면)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한분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협의체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10명: 남자7명,여성3명)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참여 계획이 있는가?	년 2회 정기적 소집으로 운영회의가 열린다고 하였으나 여성에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음. 대상 프로그램을 계획, 평가, 분석, 모니터링 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임
접근성	관내 사업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자 및 생애 전환기검진자 중 검진사후관리 동의자)에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자 및 생애전환기검진자 중 검진사후관리 동의자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관리하며 그 외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관리함
		누구를 대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자 및 생애전환기검진자 중 검진사후관리 동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대상자와 직접 소통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정보제공 하는 형식이긴 하나 여러 통로를 통해 서로 연계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적극적인 홍보나 대상 확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정보 제공 방식은 무엇인가	전화상담 및 방문
		제공되는 정보에는 '검진사후관리 동의'해야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되고 있는가?	건강검진시 검진사후관리 동의하신분에 한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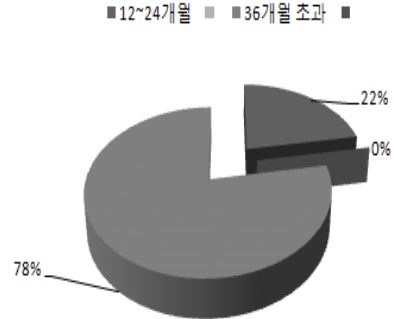
<p>사업 대상자는 성별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가?</p>	<p>* 사업대상자인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별 성별 현황.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는 실적 보고서에는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 내 가구수, 등록가구수 현황이 있음.(성별 분리통계 상태는 아님)</p>	<p>2013.12월말 - 기초생활수급자(남1,860명, 여3,058명) - 차상위계층(남136명, 여316명) - 다문화가족 (남49명, 여56명) - 독거노인(남450명, 여1,412명) - 북한이탈주민(남4명, 여17명) 충분히포괄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지만 시스템에서도 성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실무자 역시도 성별분리 통계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음</p>																																																																																																																																																	
<p>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프로그램별 (행태개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 건강문제관리, 다문화 및 이주민관리, 장애인 재활관리)성별 대상자 현황 차이가 있는가?</p>		<p>보건정보관리시스템(PHIS) -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남2,236명, 여5,273명) - 장애인(남437명, 여469명) - 허약노인프로그램(남31명, 여105명) - 관절관리프로그램(남 506명, 여2,048명)</p>																																																																																																																																																	
<p>방문건강관리사업 조사(가구조사표)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건복지부 실적보고 이외에 자체 모니터링을 의미</p>		<p style="text-align: center;">방문건강관리사업 - 가구 조사 표 -</p> <p>※ 대상: 등록 가구, 조사유기: 1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인구통계</td> <td style="width: 15%;">성</td> <td style="width: 15%;">별</td> <td style="width: 15%;">업</td> <td style="width: 15%;">가구등록번호</td> </tr> <tr> <td>주소</td> <td>시·도</td> <td>구·시·군</td> <td>동·읍·면</td> <td>로</td> </tr> <tr> <td>가구수</td> <td>성별</td> <td>세대</td> <td>세대</td> <td>세대</td> </tr> <tr> <td>인구통계</td> <td>성별</td> <td>세대</td> <td>세대</td> <td>세대</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1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2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3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4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5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6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7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8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9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10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11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12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13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14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15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16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17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18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19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20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21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22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23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24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25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26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27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28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29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30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31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32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33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34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35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36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37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38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39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40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41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42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43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44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45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46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47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48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49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50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51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52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53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54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55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56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57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58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59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60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61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62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63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64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65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66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67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68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69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70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71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72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73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74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75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76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77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78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79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80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81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82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83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84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85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86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87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88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89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90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91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92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93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94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95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96순위</td> </tr> <tr> <td>사업대상</td> <td><input type="checkbox"/> 97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98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99순위</td> <td><input type="checkbox"/> 100순위</td> </tr> </table>	인구통계	성	별	업	가구등록번호	주소	시·도	구·시·군	동·읍·면	로	가구수	성별	세대	세대	세대	인구통계	성별	세대	세대	세대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1순위	<input type="checkbox"/> 2순위	<input type="checkbox"/> 3순위	<input type="checkbox"/> 4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5순위	<input type="checkbox"/> 6순위	<input type="checkbox"/> 7순위	<input type="checkbox"/> 8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9순위	<input type="checkbox"/> 10순위	<input type="checkbox"/> 11순위	<input type="checkbox"/> 12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13순위	<input type="checkbox"/> 14순위	<input type="checkbox"/> 15순위	<input type="checkbox"/> 16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17순위	<input type="checkbox"/> 18순위	<input type="checkbox"/> 19순위	<input type="checkbox"/> 20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21순위	<input type="checkbox"/> 22순위	<input type="checkbox"/> 23순위	<input type="checkbox"/> 24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25순위	<input type="checkbox"/> 26순위	<input type="checkbox"/> 27순위	<input type="checkbox"/> 28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29순위	<input type="checkbox"/> 30순위	<input type="checkbox"/> 31순위	<input type="checkbox"/> 32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33순위	<input type="checkbox"/> 34순위	<input type="checkbox"/> 35순위	<input type="checkbox"/> 36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37순위	<input type="checkbox"/> 38순위	<input type="checkbox"/> 39순위	<input type="checkbox"/> 40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41순위	<input type="checkbox"/> 42순위	<input type="checkbox"/> 43순위	<input type="checkbox"/> 44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45순위	<input type="checkbox"/> 46순위	<input type="checkbox"/> 47순위	<input type="checkbox"/> 48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49순위	<input type="checkbox"/> 50순위	<input type="checkbox"/> 51순위	<input type="checkbox"/> 52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53순위	<input type="checkbox"/> 54순위	<input type="checkbox"/> 55순위	<input type="checkbox"/> 56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57순위	<input type="checkbox"/> 58순위	<input type="checkbox"/> 59순위	<input type="checkbox"/> 60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61순위	<input type="checkbox"/> 62순위	<input type="checkbox"/> 63순위	<input type="checkbox"/> 64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65순위	<input type="checkbox"/> 66순위	<input type="checkbox"/> 67순위	<input type="checkbox"/> 68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69순위	<input type="checkbox"/> 70순위	<input type="checkbox"/> 71순위	<input type="checkbox"/> 72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73순위	<input type="checkbox"/> 74순위	<input type="checkbox"/> 75순위	<input type="checkbox"/> 76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77순위	<input type="checkbox"/> 78순위	<input type="checkbox"/> 79순위	<input type="checkbox"/> 80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81순위	<input type="checkbox"/> 82순위	<input type="checkbox"/> 83순위	<input type="checkbox"/> 84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85순위	<input type="checkbox"/> 86순위	<input type="checkbox"/> 87순위	<input type="checkbox"/> 88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89순위	<input type="checkbox"/> 90순위	<input type="checkbox"/> 91순위	<input type="checkbox"/> 92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93순위	<input type="checkbox"/> 94순위	<input type="checkbox"/> 95순위	<input type="checkbox"/> 96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97순위	<input type="checkbox"/> 98순위	<input type="checkbox"/> 99순위	<input type="checkbox"/> 100순위
인구통계	성	별	업	가구등록번호																																																																																																																																															
주소	시·도	구·시·군	동·읍·면	로																																																																																																																																															
가구수	성별	세대	세대	세대																																																																																																																																															
인구통계	성별	세대	세대	세대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1순위	<input type="checkbox"/> 2순위	<input type="checkbox"/> 3순위	<input type="checkbox"/> 4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5순위	<input type="checkbox"/> 6순위	<input type="checkbox"/> 7순위	<input type="checkbox"/> 8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9순위	<input type="checkbox"/> 10순위	<input type="checkbox"/> 11순위	<input type="checkbox"/> 12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13순위	<input type="checkbox"/> 14순위	<input type="checkbox"/> 15순위	<input type="checkbox"/> 16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17순위	<input type="checkbox"/> 18순위	<input type="checkbox"/> 19순위	<input type="checkbox"/> 20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21순위	<input type="checkbox"/> 22순위	<input type="checkbox"/> 23순위	<input type="checkbox"/> 24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25순위	<input type="checkbox"/> 26순위	<input type="checkbox"/> 27순위	<input type="checkbox"/> 28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29순위	<input type="checkbox"/> 30순위	<input type="checkbox"/> 31순위	<input type="checkbox"/> 32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33순위	<input type="checkbox"/> 34순위	<input type="checkbox"/> 35순위	<input type="checkbox"/> 36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37순위	<input type="checkbox"/> 38순위	<input type="checkbox"/> 39순위	<input type="checkbox"/> 40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41순위	<input type="checkbox"/> 42순위	<input type="checkbox"/> 43순위	<input type="checkbox"/> 44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45순위	<input type="checkbox"/> 46순위	<input type="checkbox"/> 47순위	<input type="checkbox"/> 48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49순위	<input type="checkbox"/> 50순위	<input type="checkbox"/> 51순위	<input type="checkbox"/> 52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53순위	<input type="checkbox"/> 54순위	<input type="checkbox"/> 55순위	<input type="checkbox"/> 56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57순위	<input type="checkbox"/> 58순위	<input type="checkbox"/> 59순위	<input type="checkbox"/> 60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61순위	<input type="checkbox"/> 62순위	<input type="checkbox"/> 63순위	<input type="checkbox"/> 64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65순위	<input type="checkbox"/> 66순위	<input type="checkbox"/> 67순위	<input type="checkbox"/> 68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69순위	<input type="checkbox"/> 70순위	<input type="checkbox"/> 71순위	<input type="checkbox"/> 72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73순위	<input type="checkbox"/> 74순위	<input type="checkbox"/> 75순위	<input type="checkbox"/> 76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77순위	<input type="checkbox"/> 78순위	<input type="checkbox"/> 79순위	<input type="checkbox"/> 80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81순위	<input type="checkbox"/> 82순위	<input type="checkbox"/> 83순위	<input type="checkbox"/> 84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85순위	<input type="checkbox"/> 86순위	<input type="checkbox"/> 87순위	<input type="checkbox"/> 88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89순위	<input type="checkbox"/> 90순위	<input type="checkbox"/> 91순위	<input type="checkbox"/> 92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93순위	<input type="checkbox"/> 94순위	<input type="checkbox"/> 95순위	<input type="checkbox"/> 96순위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97순위	<input type="checkbox"/> 98순위	<input type="checkbox"/> 99순위	<input type="checkbox"/> 100순위																																																																																																																																															
	<p>누가 모니터링 하는가?</p>	<p>방문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성평등조치가 더 현실적이기 위해서는 행정실무자 외에 방문간호사에게도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p>																																																																																																																																																	
	<p>모니터링에서 여성 건강문제 인식을 통한 사업개선 실적이 있는가?</p>	<p>사례관리집담회를 통한 논의</p>																																																																																																																																																	

	대상자 재평가(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없거나, 미방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퇴락하는 대상자의 성별 현황 차이가 있는가?		2년간 미방문자는 없으며 발생하면 퇴락함. 남녀 구분안됨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내부 자원 연계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내부자원 연계(대상자기준) 남성1,109명, 여성2,216명
	보건소 외부 자원 연계 대상에는 지역사회 내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고루 포함되어 있는가?		충남대학교 대전지역암센터, 구청희망복지지원단, 저소득층인공관절무료시술 병원 등 연계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외부 자원 연계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외부자원연계 남성29명, 여성49명
		남성들에게 주로 연계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금연교육, 전립선암
		여성들에게 주로 연계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인공관절
		무력감과 우울 등의 정서적인 문제 관련 서비스 연계도 고려되고 있는가?	동구정신보건센터 연계
서비스 제공자 근무 여건	서비스 제공자 (방문전문인력)를 대상으로 근무여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기간 : 2014. 6. 16 · 설문조사 대상 : 2014년 동구 방문간호사 (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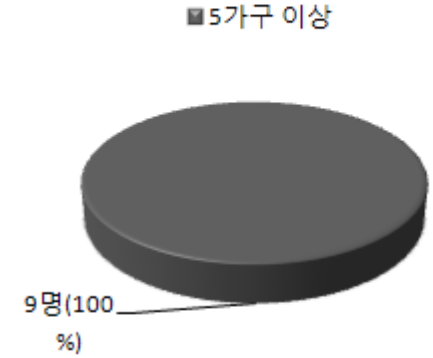
1.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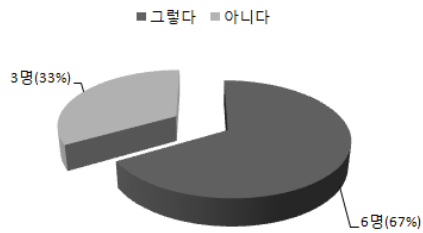
2. 근속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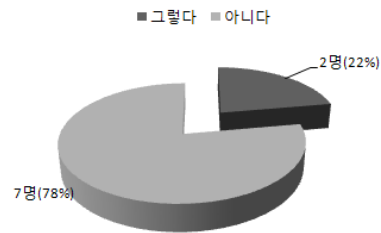
3. 1일 방문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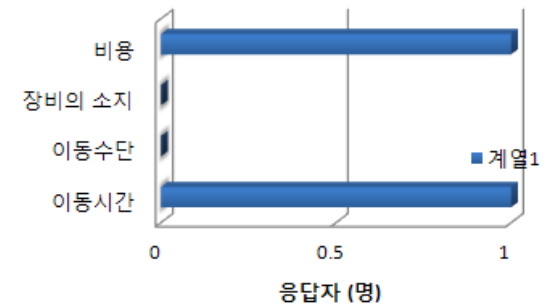
3.1 현재 방문가구수는 적절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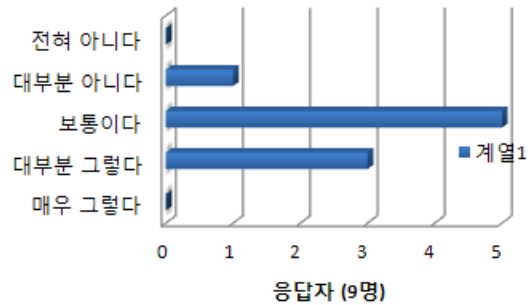
4 이동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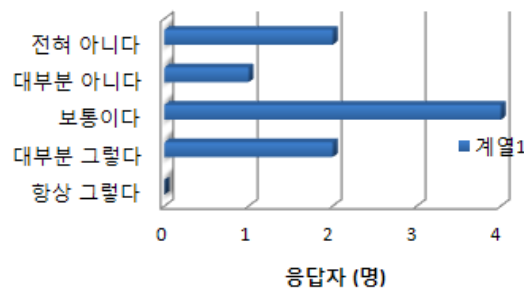
4-1. 불편의 원인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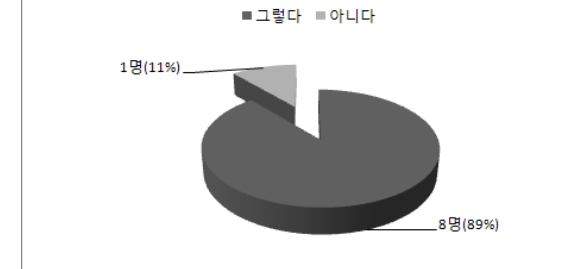
5. 1일 방문일정 중 휴식시간의 적정성



6. 요주의 대상자 방문시의 동행방문 여부



7 참여의사



7. 차년도 방문건강관리 사업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계속고용여부가 불투명하고 해가 갈수록 급여 떨어져 발전이 없어 보이므로 이직을 고려 함.
-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부분이 좋다
- 대상자분들의 생활습관 개선 및 질병예방과 지연을 돕는 일이 보람되지만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해주지 못하는 아쉬움 있음

8. 방문건강관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신분보장 및 급여인상
- 아파트가 일반 단독주택 이다보니 이동시간이 오래 걸린다.
- 다른 구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 신분이 보장 되는데 동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불안하다.
- 고용계약보장 요구
- 신분보호, 신분보장, 출장에 대한 적절한 대우 바람
- 대상자분들은 자주 방문 해주기를 원하지만 방문가구수가 많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④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총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 여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낮은 남성 노인을 대상이 주로 모여 있는 경로당,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계획은 구체적 이었으나 사업 시행부서 이관으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지 못함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 적절함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의료 및 구료비, 건강관리 인건비 등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수치상으로는 증가 되었으나 인건비부분에서 방문인력을 줄인 결과이며 이로 인한 1인당 방문가구수의 증가를 초래 함.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① 담당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교육 받은 적은 있지만 그것을 실무로 연결 짓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하나의 이론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실행시켜야 하는 정책으로 활용되기에는 막연하고 낯설었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모니터링 요원과의 심층 인터뷰를 경험하고 그 필요성이 좀 더 현실적으로 체감(70%정도) 된다고 대답하였음.
- ② 성인지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담당자와 방문간호사에 대한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③ 서비스 대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량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방문전문 인력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함. 참고로 첨부한 내용을 보면 인력 1인의 인건비는 증가 하였으나 예산증가 차원 보다는 인력을 줄임으로써 얻어진 결과로 보임.
- ④ 방문 인력의 수가 적다보니 총 인구수 대비 대상가구수를 적게 산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김. 전년년도, 전년도 총인구수 대비 대상가구수를 고려 할 때 적절한 예측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참고자료 : 대전광역시 동구 방문건강관리사업 참고자료

① <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투입계획 >

	2012 (A)	2013 (B)	증감 (B-A)
인건비	285,640	285,090	-550
가정간호사업 추진관련	15,750	15,750	0
일반운영비	10,000	12,560	+2,560
의료 및 구료비	49,160	64,908	+15,748
(방문건강관리 인력) 활동지원비	25,200	24,960	-240
(방문건강관리 인력 교육)여비	2,000	3,120	+1,120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위탁교육비	0	6,240	+6,240
방문보건 업무추진비	0	2,400	+2,400
방문건강관리 인력 피복비 등	0	7,384	+7,384
인력4대보험 기관부담금	28,000	0	-28,000
계	387,750	422,412	+34,662

② < 인건비 현황 >

	2012 (A)	2013 (B)	증감 (B-A)
인건비 (천원)	285,640	285,090	-550
인력4대보험 기관부담금 (천원)	28,000	0	-28,000
계	313,640	285,090	-28,550
방문건강관리인력 (명)	13	10	
1인당 인건비 (천원)	24,126	28,509	+4,383

③ < 방문건강관리 현황 >

	2011	2012	2013
동구 전체인구수 (명)	248,825 (2011.1.31.)	251,875 (2012.1.31)	251,945 (2012.12.31)
대상 등록가구수 (가구)	4,569 (인구수의 1.8%)	5,485 (인구수의 2.2%)	>4,500 (인구수의 2%는 5038.9)
1인당 방문서비스 횟수 (회)	19,950	23,621	20,000
방문간호사 수 (명)		12	9
간호사 1인당 연간 방문가구수 (가구)		457	>500 (559)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보고서(성별 분석 없는 경우)

사업 분야	방문건강관리사업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 6. 26. 14:00
모니터링 장소	중구 보건소
인터뷰 대상자	중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담당자 및 계장, 방문간호사, 중구청 여성복지과 계장
참고자료	2014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계획 지역사회 건강조사(중구보건소)
작성자	추 수 진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근거 법률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중구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중 노인, 장애인 등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건강조사로 집중관리, 정기관리군으로 분류, 군별 관리주기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가정방문을 통한 질환상담, 건강기초검사 및 보건교육 실시 - 보건·복지기관간 연계망 구축 (동 주민자치센터, 관내소방서,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학교, 의료기관 등) ·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담당제 운영 (전담간호사 1인 1~2개 동 전담) - 가정방문을 통한 포괄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 보건소 내 부서간 및 타지역사회기관 단체 연계 · 방문간호인력 : 간호사 9명 (2014. 6) 	여성 4,194명 남성 2,271명 (2014. 6 현재)	394 (2014년)

2] 사업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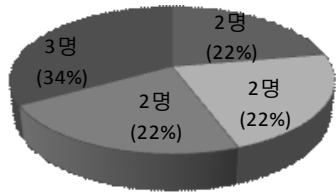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수립에 지역 여성 건강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가?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시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음 방문건강관리사업만을 위한 위원회나 자문단은 현재 없음 사업 관계자들 스스로 본 사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층의 성별 특이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
		(참여한다면)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보건소장 외 9명: 남 6, 여 4)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참여 계획이 있는가?		
접근성	관내 사업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자 및 생애 전환기검진자 중 검진사후관리 동의자)에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검진사후관리 동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검진결과를 방문건강담당에서 상담 관리하고 그 외 대상자는 건강증진담당에서 관리함	
		누구를 대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가?	방문대상자	
		정보 제공 방식은 무엇인가?	전화통화 및 직접 방문	
		제공되는 정보에는 '검진사후관리 동의'해야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되고 있는가?	Y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사업 대상자는 성별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가?	기초생활수급자 (남 1,889명, 여 3,285명) 차상위계층 (남 327명, 여 841명)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 65명) 북한이탈노인 (남 1명, 여 8명) 독거노인 (남 614명, 여 1,181명) (2014. 6월 현재 자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프로그램별 (행태개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 건강문제관리, 다문화 및 이탈주민관리, 장애인 재활관리)성별 대상자 현황 차이가 있는가?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남 1,468명, 여 3,756명) 장애인 프로그램 (남 137명, 여 119명) 허약노인 프로그램 (남 25명, 여 98명) 관절관리 프로그램 (남 285명, 여 1,390명)	
	방문건강관리사업 조사(가구조사표)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Y	매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집담회가 실시되지만, 사업전반에 관한 회의일 뿐 여성의 건강문제가 제기되거나 인식되는 경우는 없음
	누가 모니터링 하는가?	방문건강담당 관련자가 월 1회 집담회 실시 연 2회 사업 자체평가 실시 (보건소장, 방문보건팀, 방문간호사 전원 참석) 연 1회 만족도 조사 실시 (해피콜, 자체 만족도조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자 및 방문간호사가 참여하는 자체평가가 실시되어 현 상황 및 문제점이 제기되어 향후개선안도 마련되지만, 여성의 건강문제는 제기되지 않음. 2012년까지는 해피콜만족도조사, 2013년 이후에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문건강관리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차년도에 반영하고자 함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모니터링에서 여성 건강문제 인식을 통한 사업개선실적이 있는가?	N	그러나, 해피콜조사 및 자체 만족도 조사의 항목은 대부분 방문인력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그쳐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항목은 평가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대상자 재평가(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없거나, 미방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퇴록하는 대상자의 성별 현황 차이가 있는가?	N	2년 이상 미방문시 자동퇴록되며 퇴록자에 대한 성별은 구분되어 있지 않음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내부 자원 연계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내부 자원 연계 (남성 708명, 여성 1,971명)	남성에게는 주로 금연상담, 여성에게는 주로 산전후관리 및 예방접종에 관한 관리가 연계됨
	보건소 외부 자원 연계 대상에는 지역사회 내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고루 포함되어 있는가?	Y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각 사회복지관 인공관절 무료 시술병원 (총 8개 종합병원) 장애인협회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외부 자원 연계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외부 자원 연계 (남성 38명, 여성 91명)	
	남성들에게 주로 연계된 서비스는 무엇인가?	전립선 암검진	
	여성들에게 주로 연계된 서비스는 무엇인가?	인공관절	
	무력감과 우울 등의 정서적인 문제 관련 서비스 연계도 추진되고 있는가?	중구 정신보건센터	
서비스 제공자 근무 여건	서비스 제공자 (방문전문인력)를 대상으로 근무여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기간 : 2014. 6. 27 · 설문조사 대상 : 2014년 중구 방문간호사 총 9인 중 9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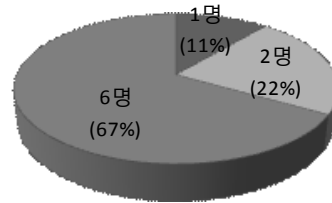
1. 연령

■ 40세 이하 ■ 41-45 ■ 46-50 ■ 51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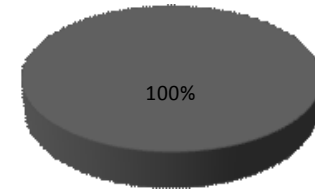
2. 근속연수

■ 12~24개월 ■ 24~36개월 ■ 36개월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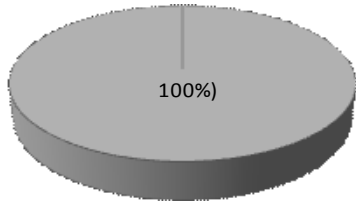
3. 1일 방문가구수

■ 5가구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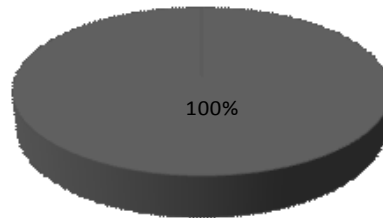
3-1. 현재 방문가구수는 적절한가

■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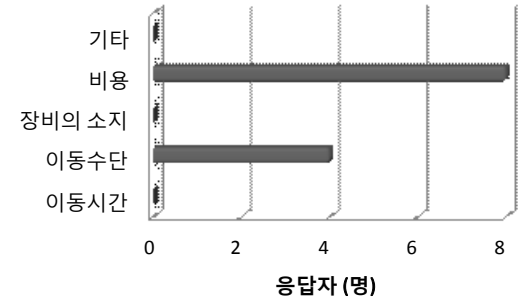


4. 방문가구 이동시 불편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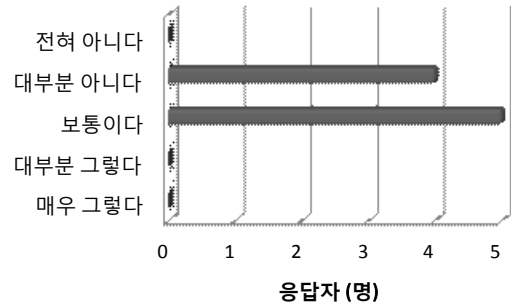
■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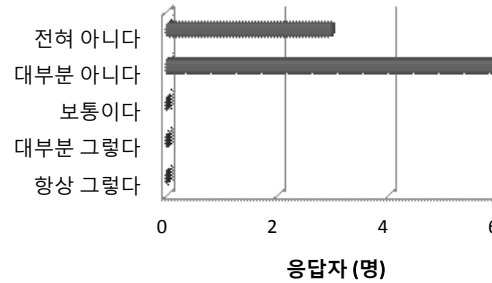
4-1. 불편의 원인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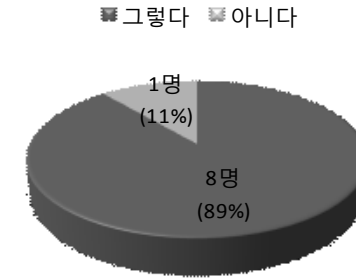
5. 1일 방문일정중 휴식시간의 적정성



6. 요주의 대상자 방문시의 동행방문 여부



7. 차년도 동사업 참여의사 여부



8. 기타 개선 요구사항

- 급여개선
- 질적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관리가구수 감소 (간호사 1인당 300가구가 적정)
- 차량관리비 및 유류비 지원
- 호봉 및 경력 인정

3] 사업에 대한 약평 및 제언

<약평>

- ① 중구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은 아니었으며 2013년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시행되면서 본 사업은 축소된 상황이었음.
- ② 사업담당인력은 공통적으로 본 사업의 성별분리현황파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제언>

- 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담당자들은 본 사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이기 때문에 굳이 남녀의 구분을 두어 사업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

- ② 따라서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정책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실제 사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 ③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고서 (보건복지부 제출) 내 사업실적을 기재할 때 성별분리통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④ 방문전문인력의 근무여건 조사 결과, 1인당 방문가구수가 과다하며 요주의 대상자 방문시 동행방문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⑤ 방문사업의 특성상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교통비, 차량유지비)이 필요하며 더불어 호봉과 경력을 인정하는 급여개선의 요구가 있음.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업 분야	방문건강관리사업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 6. 12. 09:30
모니터링 장소	서구보건소
인터뷰 대상자	서구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
참고자료	2012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계획 및 실적 2013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계획 2014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자	추 수 진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근거 법률	주요 내용	실적	예산 (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서구	방문건강 관리사업	보건소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평생국 민건강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인 력 : 방문간호사 13인(지역담당제)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와 증상조절 여부를 조사하여 군 분류 실시 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각종검사(혈압, 혈당, 당화혈색소 등) 상담 및 교육 - 운동요법, 식이요법지도 및 기초의약품 제공 등 - 대상자 요구에 따른 보건소 내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여성 4,989 명 남성 2,560 명	4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침 변경으로 경로당 등에서도 방문이 가능하게 하면 남성 방문대상자 수가 증가 · 인건비, 홍보, 의료 및 구료비 등 노인복지사업 예산확대 · 만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에서 여성이 높은 만큼 수혜비율도 비례함으로 현재와 같이 진행하며 수혜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 · 남자간호사를 채용하여 남성노인 방문수 증가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 분석평가서 제출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 성인지예산담당관이 협의(세출예산서 근거) · 대상과제 선정에 전문가 참여하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 이후 자치구에서 대면 컨설팅 1회 진행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대상자는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 대상 보건교육을 실시 ⇒ 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차이본문에 반영됨 · 남성노인 방문수 증가를 위한 조치(경로당이나 단체를 방문, 남성간호사 채용) ⇒ 조치사항에 반영됨 · 대상과제의 적정함 제시 ⇒ 반영됨 ·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내용 구성 제시 ⇒ 반영됨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p>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침 변경으로 재가가 아닌 경로당 등에서도 방문하여 남성 방문대상자 수를 증가시키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과,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동시에 제안되어 반영된 조치사항임. - 인건비, 홍보, 의료 및 구료비 등 노인복지사업 예산확대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p>는 물성적인 조치사항으로 앞서 분석되지 않았음. 수혜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앞서 분석되지 않았음. 남자간호사를 채용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앞서 분석되지 않았음.</p> <p>-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제안된 여성 대상 보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개선안은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p>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 평등 조치사항 중 수혜자 만족도 향상에 대해 해피콜 만족도 조사라는 성과목표로 반영됨.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2013년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경로당, 복지시설 등의 기관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포함되었는가?	Y	· 사랑의 효자손사업을 통해 기성동 일대를 비롯한 경로당을 방문하여 혈압, 당뇨 및 저염식 교육을 실시하고 안마 서비스 제공 (사랑의 효자손 사업 결과보고 공문 참고)
	2013년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인건비, 홍보, 의료 및 구료비 등 노인복지사업 예산확대가 이루어졌는가?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도 방문인력이 감소 ('12년 15명 →'13년 13명)함에 따라 인건비도 감소함 · 홍보비에 대한 항목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의료 및 구료비 항목은 축소 (예산안 비교현황 참고)
	2013년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수혜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N	· 2012년도까지 해피콜 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평가하고 점검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시행하지 않음
	2013년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남자간호사를 채용하였는가?	N	· 신규 채용 계획이 없었음

㉞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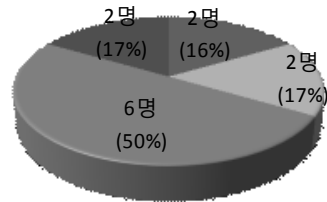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수립에 지역 여성 건강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가?		Y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본 위원회 및 자문단은 사업 전반에 관한 회의이며, 본 회의에서 특별히 여성의 건강문제가 제기되거나 반영되지는 않음
		(참여한다면)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남 12, 여 3명으로 구성) 통합건강증진사업단 (건양대 외 교수진으로 구성)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참여 계획이 있는가?		
접근성	관내 사업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자 및 생애 전환기검진자 중 검진사후관리 동의자)에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Y	건강검진 사후관리 동의자 중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동 간호사에게 배분하여 검진안내 및 암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해 정보를 철저히 제공
		누구를 대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가?	방문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층 등)	
		정보 제공 방식은 무엇인가?	직접안내, 전화안내, 우편발송	
		제공되는 정보에는 '검진사후관리 동의'해야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되고 있는가?	Y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p>사업 대상자는 성별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가</p>		<p>사업대상자 중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남 2,638명, 여 4,270명) - 차상위계층 (남 541명, 여874명) - 북한이탈주민 : 35명 - 독거노인 : 2,022명 - 다문화가족 : 127명 (성별구분 불가)</p>	<p>보건정보관리시스템 (PHIS)에 정보를 입력할 때, 대부분 가구 기준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성별 현황이 쉽게 파악되지 않음 성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모든 대상자들을 일일이 카운트해야 한다고 함. 또한 보건복지부 보고서 양식에 성별분리 현황이 필수가 아니다 보니 대상자들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는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음 시스템 혹은 보건복지부 제출 보고서 상에서 성별 분리실적을 필수로 채택할 필요가 있음</p>
	<p>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프로그램별 (행태개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 건강문제관리, 다문화 및 이탈주민관리, 장애인 재활관리)성별 대상자 현황 차이가 있는가?</p>		<p>PHIS(보건정보관리시스템) -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 (남 2,157명, 여 4,675명) - 장애인프로그램 (남 206명, 여 201명) - 다문화프로그램 (남 103명, 여 187명) - 북한이탈프로그램 (남 9명, 여 39명) - 생애주기 건강문제관리 프로그램(남 60명, 여 126명)</p>	
	<p>방문건강관리사업 조사(가구조사표)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p>		<p>집담회 및 사례관리 실시 (월1회)</p>	<p>매월 실시하는 집담회 및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 및 사업내용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함. 본 집담회 및 사례관리는 사업성과를 위한 점검이므로 여성건강문제 인식을 통한 사업개선이 대두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p>
		<p>누가 모니터링 하는가?</p>	<p>방문간호사</p>	
		<p>모니터링에서 여성 건강문제 인식을 통한 사업개선실적이 있는가?</p>	<p>N</p>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대상자 재평가(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없거나, 미방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퇴락하는 대상자의 성별 현황 차이가 있는가?	최근 2년간 미방문자는 없으며, 퇴락처리함	퇴락자가 없으므로 성별현황 비교불가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내부 자원 연계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내부 자원 연계 (남성 1,584명, 여성 3,634명)		
	보건소 외부 자원 연계 대상에는 지역사회 내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고루 포함되어 있는가?	Y	인공관절무료시술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충남대학교병원, 카톨릭대학교성모병원, 실명예방재단대전보훈병원, 대전산재병원, 대전선병원, 대전한국병원, 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등)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외부 자원 연계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외부 자원 연계 (남성 322명, 여성 640명)	
		남성들에게 주로 연계된 서비스는 무엇인가	전립선 암검진	
		여성들에게 주로 연계된 서비스는 무엇인가	유방암, 갑상선암, 인공관절	
		무력감과 우울 등의 정서적인 문제 관련 서비스 연계도 추진되고 있는가	서구정신보건센터	
서비스 제공자 근무 여건	서비스 제공자 (방문전문인력)를 대상으로 근무여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기간 : 2014. 6. 13 ~ 2014. 6. 20 · 설문조사 대상 : 2014년 서구 방문간호사 총 13인 중 13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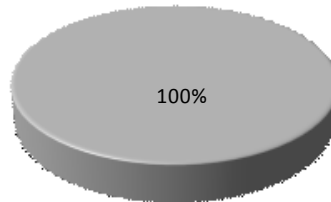
1. 연령

40세 이하
 41-45
 46-50
 51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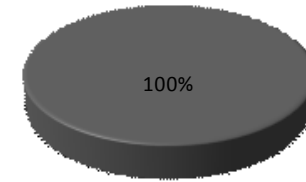
2. 근속연수

24~36개월
 36개월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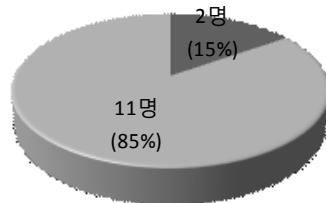
3. 1일 방문가구수

5가구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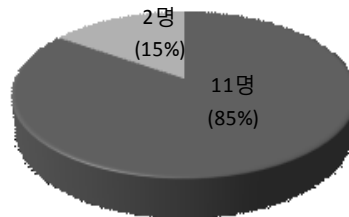
3-1. 현재 방문가구수는 적절한가

그렇다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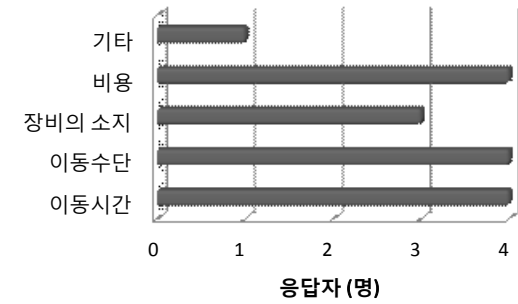


4. 방문가구 이동시 불편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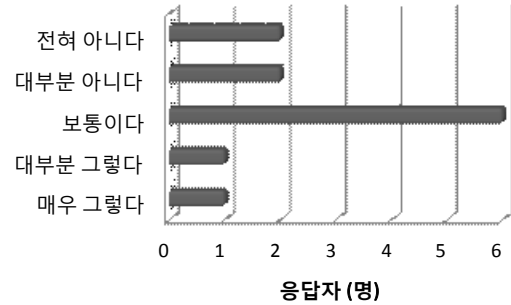
그렇다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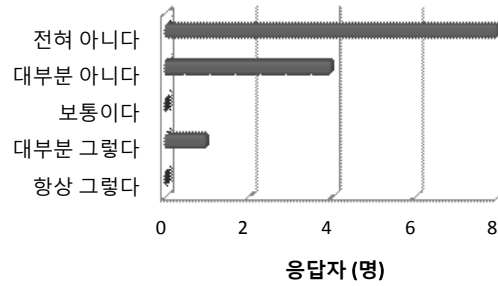
4-1. 불편의 원인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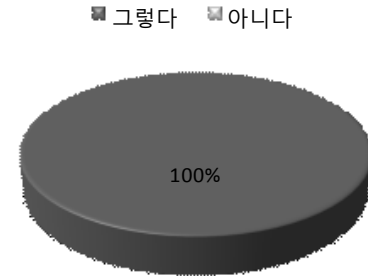
5. 1일 방문일정 중 휴식시간의 적정성



6. 요주의 대상자 방문시의 동행방문 여부



7. 차년도 동사업 참여의사 여부



8. 기타 개선 요구사항

- 질적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1인당 담당 가구수를 현실적으로 조정 (1인당 400가구)할 필요가 있음.
현재 1일 방문가구가 8~10가구인 담당자도 있는 상황.
- 고령 대상자의 경우, 방문여부를 기억하지 못해 방문하지 않는다는 민원불편을 제기하는 역울한 경우도 있어 사기가 저하됨.
- 독거 남성이나 알코올, 정신지체자 가구방문에 따른 위험수당 필요.
- 무기계약직에 준한 복지와 임금개선 필요(월급여, 연금, 출장비, 면허수당, 자녀학자금 등).
- 출장시 사고로 인한 개인차량 파손시 보험급여 필요.

④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종합 평가	성 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사랑의 효자손 사업을 통해 남성대상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남성의 참여가 독려되었다고 할 수 있음 노인복지예산확대 및 수혜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조치는 성평등 조치라 할 수 없음
	정책개선안은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남성참여를 위해 가정방문이 아닌 경로당 방문을 실시하겠다는 조치사항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침에는 합당하지 않은 내용임 수혜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함 신규 방문인력 채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간호사를 채용하겠다는 조치를 내세운 것은 보여주기 행정으로 판단됨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또는 지역여성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에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남성참여를 위해 경로당 방문을 계획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사항임. 단,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내부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임 성 평등 조치사항으로 노인복지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적절하지 못함

㉡ 사업에 대한 약평 및 제언

<약평>

- ① 서구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 평등 조치사항이 대부분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었음.
- ② 사업담당인력은 공통적으로 본 사업의 성별분리현황파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③ 방문전문인력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 때문에 본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대


상자들을 형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친밀하게 유대감을 형성하며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짐.

<제언>


- 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담당자들은 본 사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이기 때문에 굳이 남녀의 구분을 두어 사업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
- ② 따라서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정책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실제 사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 ③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고서 (보건복지부 제출) 내 사업실적을 기재할 때 성별분리통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④ 방문전문인력의 근무여건 조사 결과, 1인당 방문가구수가 과다하며 방문에 필요한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⑤ 또한 요주의 대상자 방문시 동행방문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험수당이 요구됨.
- ⑥ 고령 대상자의 경우, 방문여부를 기억하지 못해 방문하지 않는다는 민원불편을 제기하는 억울한 경우도 있어 사기가 저하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함.

■ 참고자료

새로운 변화와 도약, 큰 도시 명품서구



보건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랑의 효자손사업」 안마서비스(12회) 실시 결과보고

보건소-6099(2012.02.19)호에 따라 농촌지역 어르신 「사랑의 효자손사업」 방문 안마 서비스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합니다.

1. 일 시 : 2012. 4. 8(금) 14:00 ~ 18:00
2. 장 소 : 용촌동 경방경로당
3. 참여인원 : 22명
4. 담당인력 : 5명(안마사 4, 방문보건담당자 1)
5. 내 용 : 안마서비스 실시(14명), 활달검사(7명), 활달검사(1명)

붙임 1. 방문 안마서비스 운영현황 1부.
2. 안마서비스 수혜자 명단 1부. 끝.

*담당부서 : 웰빙순 방문보건담당 임원숙 보건행정과장 권영 04/06 임영선


협조자

시행 : 보건소-12782 (2012.04.08.) 접수 ()


우 802-084 대전광역시 서구 안년로 74(안년동 340) / <http://www.seoou.daejeon.kr/>

전화 (042)611-6371 / 전송 (042)611-6789 / lrs402@seoou.daejeon.kr / 공과

새로운 변화와 도약, 큰 도시 명품서구



보건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2년 하반기 「사랑의 효자손사업」 안마서비스(12회) 실시 결과보고

보건소-12828(2012.04.08)호에 따라 2012년 하반기 농촌지역 어르신 「사랑의 효자손사업」 방문 안마서비스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합니다.

1. 일 시 : 2012. 12. 11.(화) 14:00 ~ 18:00
2. 장 소 : 평촌1동, 평촌2동, 평촌3동 경로당
3. 참여인원 : 128명
4. 담당인력 : 15명(안마사 12, 방문보건담당자와 2)
5. 내 용 : 안마서비스 실시(50명), 활달검사(51명), 활달검사(27명)

붙임 1. 방문 안마서비스 운영현황 1부.
2. 안마서비스 수혜자 명단 1부. 끝.

*담당부서 : 웰빙순 방문보건담당 임정현 보건행정과장 권영 12/11 임영우

협조자

시행 : 보건소-46248 (2012.12.11.) 접수 ()

우 802-084 대전광역시 서구 안년로 74(안년동 340) / <http://www.seoou.daejeon.kr/>

전화 (042)611-6371 / 전송 (042)611-6789 / lrs402@seoou.daejeon.kr / 공과

예산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비고
계	489,216	588,876	- 90,358	
인건비	389,296	278,850	- 90,4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상노인간병 급여율 • 원익관 2013년도 예산 • 12월 인건비 포함
여비	1,800	1,800	-	
방문보건담당 교육상해보험	820	820	-	
방문건강관리인력 출동차량비	27,000	31,200	4,200	
일반운영비	2,500	2,500	-	
의료실구급비	68,000	53,906	- 14,094	
전문인력위탁교육비		6,240	6,240	
방문건강관리사업교육여비		2,600	2,600	
파복비		1,144	1,144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방문건강관리사업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 6. 12. 13:30
모니터링 장소	유성구 보건소
인터뷰 대상자	방문건강관리과 계장, 담당자, 방문간호사
참고자료	2012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계획 및 실적 2013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계획 지역사회 건강조사(유성구보건소)
작성자	추 수 진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근거 법률	주요 내용	실적	예산 (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유성구	방문건강 관리사업	보건소가족 보건담당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평생국민 건강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 허약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건강위험군, 질환군 4,400명 · 인 력 : 간호사 11명, 운동처방사 1명 · 내 용 건강문제 스크리닝 :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행태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생애주기별 건강문제관리,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 기초 재활서비스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4555명 여성: 2,980명 남성: 1,575명	417	의료지원 물품 중 여성 환자에게 파스류 지급 확대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 분석평가서 제출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 성인지 예산담당관이 협의(세출예산서 근거) · 대상과제 선정에 전문가 참여하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 이후 자치구에서 대면컨설팅 1회 진행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의 적정함 제시 ⇒ 반영됨 · 분석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전체적인 방법 및 흐름 ⇒ 반영됨 ·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내용 구성 제시 ⇒ 반영됨 	
분석 평가 총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p>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지원 물품 중 여성 환자에게 파스류 지급 확대라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의 개선안에 동시에 제안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조치사항임.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지 않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여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2013년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여성 환자에게 파스류 지급 확대되었는가?	Y	대상자들의 파스 추가지급에 대한 성별요구사항이 반영된 조치사항. 이에 집중관리가 필요한 300명의 대상자를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파스를 지급하였으며, 그 결과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향상됨

■ 참고자료 : 파스지급 확대 증빙자(서울)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with a sidebar on the left containing navigation links like 'To.do', '세출자료가', '내정보/권한보기', 'Sitemap', '집행현황판', and '사업관리카드'.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성과목표 (Performance Goals):
 - 산출근거: 방문여성대상자에게 지급한 파스 수량
 - Table with columns: 성과목표, 지표, 측정수치(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
 - Row 1: 방문여성대상자 파스류 지급 전년대비 2% 상, 방문여성 대상자 연간 표, 19,000, 18,000, 18,360.
 - Note: ※성과예산서의 내용과 일치, 부서의 성명 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

소요재원 (Required Resources):
 - 자원총계: 293,400
 - Note: ※ 자원총계와 예산구분의 전년도예산액이 일치해야 저장됩니다. (단위: 천원)
 - Table with columns: 재원명, 전년도예산액.
 - Rows: 국고보조금 (0), 광특보조금 (0), 기금보조금 (134,700), 특별교부세 (0), 분권교부세 (0), 광역보조금 (85,350), 특별교부금 (0), 자체재원 (73,350).

㉞ 대상 사업에 대한 성 평등 조치 적정성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수립에 지역 여성 건강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가?	통합건강증진자문단 (건양대 교수진 외) 건강증진재단	현재 본 사업에 대해 통합건강증진자문단 건강증진재단을 통해 자문을 받고 있으나, 이 자문단은 성인지적 관점이 아니라 취약계층 건강관리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 사업 담당자 역시 본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므로 굳이 여성의 입장을 특별히 배려하기 위한 별도의 자문은 필요치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참여한다면)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참여 계획이 있는가?		
접근성	관내 사업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자 및 생애 전환기검진자 중 검진사후관리 동의자)에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방문건강관리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검진결과를 분석한 후, 상담 관리함 (기존등록자 및 신규대상자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수혜자 중 검진사후관리에 동의한 대상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일대일 전화통화를 통해 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누구를 대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가?	건강검진자 중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본인	
	정보 제공 방식은 무엇인가?	전화통화, 직접 방문 위주	
	제공되는 정보에는 '검진사후관리 동의'해야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되고 있는가?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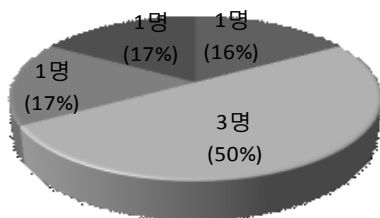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p>사업 대상자는 성별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가?</p> <p>* 사업대상자인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별 성별 현황.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는 실적 보고서에는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 내 가구수, 등록가구수 현황이 있음.(성별 분리통계 상태는 아님)</p>	<p>(2013년 12월말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남 1223명, 여 2361명) - 차상위계층 (남 260명, 여 874명) - 다문화가족 (97명:여성결혼이민자) - 북한이탈주민 : 총 14명 - 독거노인 : 총 1,291명 	<p>보건정보관리시스템 (PHIS)에 정보를 입력할 때, 대부분 가구 기준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성별 현황이 쉽게 파악되지 않음 성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모든 대상자들을 일일이 카운트해야 한다고 함. 또한 보건복지부 보고서 양식에 성별분리 현황이 필수가 아니다 보니 대상자들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는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음 시스템 혹은 보건복지부 제출 보고서 상에서 성별분리실적을 필수로 채택할 필요가 있음.</p>
	<p>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프로그램별 (행태개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 건강문제관리, 다문화 및 이탈주민관리, 장애인 재활관리)성별 대상자 현황 차이가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남 1610명, 여 4675명) - 장애인재활관리 프로그램 (남 220명, 여 7명) - 허약노인 프로그램 (남 19명, 여 88명) - 관절관리 프로그램 (남 6명, 여 78명) 	<p>대상자 대비 수혜자 현황파악 필요. 보건정보관리시스템 (PHIS)</p>
	<p>방문건강관리사업 조사(가구조사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보건복지부 실적보고 이외에 자체 모니터링을 의미</p>	<p>사례관리 집담회 : 월 1회 (참석 :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담당 1인,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등, 내용 : 환자상태 평가 및 치료관리 모색, 통합보건복지서비스 연계)</p>	<p>자체 모니터링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여성의 건강문제가 제기되거나 이슈화되지는 않음</p>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실무운영회 : 분기별 1회 (참석 : 보건소장, 연계사업 담당자, 의료급여 사례관리 담당자 등, 내용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및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유) 자체평가 : 연 1회, 사업담당자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 : 해피콜 설문조사 (대상 : 방문건강관리 수혜자 100명 무작위 추출) 건강증진재단	
		누가 모니터링 하는가?	방문건강간호사 외	
		모니터링에서 여성 건강문제 인식을 통한 사업개선실적이 있는가?	특별히 여성 건강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음	
		대상자 재평가(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없거나, 미방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퇴락하는 대상자의 성별 현황 차이가 있는가?	2년 이상 미방문 시 자동퇴락이며 특별히 구분치 않음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내부 자원 연계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내부 자원 연계 남성 (1356)명, 여성(3217)명 남성에게 연계되는 자원 : 금연, 음주클리닉 여성에게 연계되는 자원 : 요실금관리 (교육 및 물품제공)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보건소 외부 자원 연계 대상에는 지역사회 내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고루 포함되어 있는가?	희망복지지원단 (외식사업연계) 인공관절 무료시술 (9개 종합병원) 장애인 방문 학습지도 사회복지관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외부 자원 연계 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외부 자원 연계(대상자 기준) 남성 (540)명, 여성(811)명	
	남성들에게 주로 연계된 서비스는 무엇인가?	전립선관리	
	여성들에게 주로 연계된 서비스는 무엇인가?	인공관절 무료시술	
	무력감과 우울 등의 정서적인 문제 관련 서비스 연계도 추진되고 있는가?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위탁기관. 대전시립정신병원장이 센터장.
서비스 제공자 근무 여건	전문 인력 채용시 저소득 및 무직 가구원(특히 여성) 우선 채용(사업지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근 신규인력 채용 없음	
	서비스 제공자 (방문전문인력)를 대상으로 근무여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기간 : 2014. 6. 13 · 설문조사 대상 : 2014년 유성구 방문간호사 총 6인 중 6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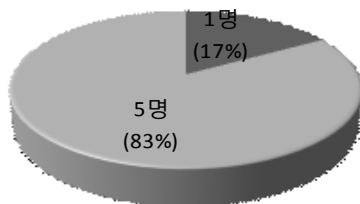
1. 연령

40세 이하 41-45
46-50 51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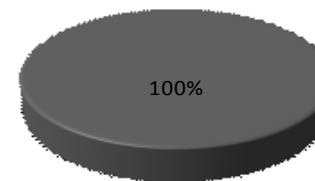
2. 근속연수

24~36개월 36개월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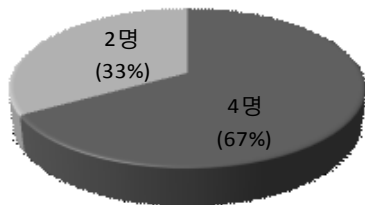
3. 1일 방문가구수

5가구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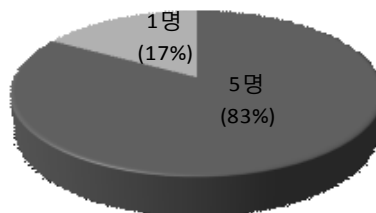
3-1. 현재 방문가구수는 적절한가

그렇다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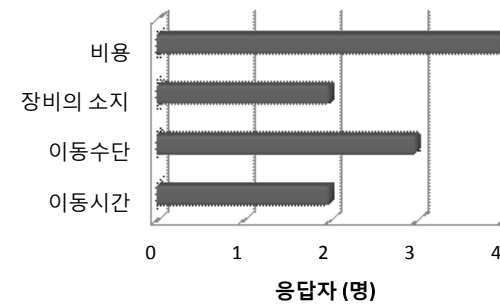


4. 방문가구 이동시 불편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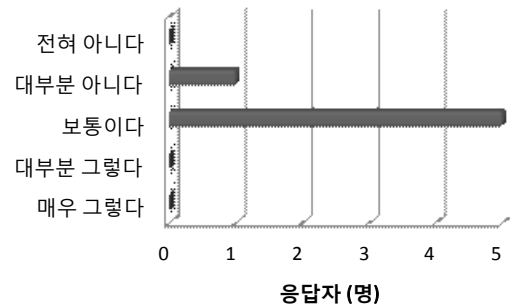
그렇다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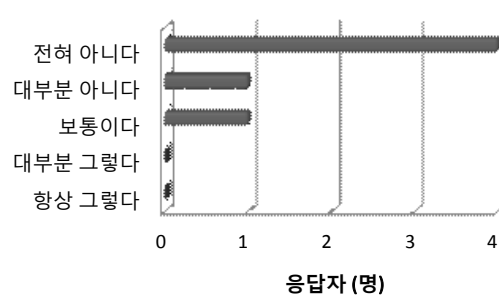
4-1. 불편의 원인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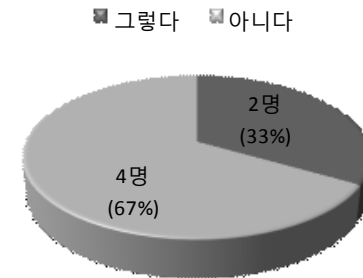
5. 1일 방문일정 중 휴식시간의 적정성



6. 요주의 대상자 방문시의 동행방문 여부



7. 차년도 동사업 참여의사 여부



8. 기타 개선 요구사항

- 자가차량 이용자에게 유류비 지원 (현재 출장비 혹은 주유비 제공되지 않음).
- 통신비 혹은 통신기기 지원.
- 개인 휴대전화 사용으로 개인정보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용 통신수단 절실.
-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보수가 현저히 적음.
- 1인당 담당 방문대상자 수가 너무 많음(현재 500가구 이상 방문, 400가구 정도로 축소 요청).
-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학생실습시 개인차량 이용으로 사고가 날 경우 보험적용 어려움).
- 전산업무의 과중으로 본 업무 (대상자 방문)에 차질.

4]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종합 평가	성 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파스류 지급 확대라는 성 평등 조치사항이 시행되어 대상자들에게 즉시 지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파악됨.
	정책개선안은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파스류 지급 확대라는 성 평등 조치사항은 대상자들의 요구도가 반영된 개선사항으로서, 본 사항은 하위개념이 필요없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안으로 판단됨.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또는 지역여성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에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사업대상자의 65%가 여성으로서, 본 조치를 통해 여성노인들의 불편사항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여겨짐.

㉡ 사업에 대한 약평 및 제언

<약평>

- ① 유성구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성 평등 조치사항은 구체적으로 즉각 실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파악됨.
- ② 사업담당인력은 현재의 실적보고서 양식 및 데이터베이스 상에 성별분리 관리가 요구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성별분리현황파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제언>

- ①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고서 (보건복지부 제출) 내 사업실적을 기재할 때 성별분리통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② 동시에 보건정보시스템 (PHIS)의 방문실적 데이터베이스 관리시 성별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③ 방문전문인력의 근무여건 조사 결과, 1인당 방문가구수가 과다하며 요주의 대상자 방문시 동행방문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④ 방문사업의 특성상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 (교통비, 차량유지비)과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⑤ 방문대상자와의 공적인 연락을 위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함에 따라 개인정보가 노출되며 통신비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상황이므로 업무용 통신수단 및 통신비 제공이 절실함.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보고서(성별 분석 없는 경우)

사 업 분 야	방문건강관리사업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 6. 9. 13:00
모니터링 장소	대덕구 보건소
인터뷰 대상자	대덕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담당자, 방문건강관리 계장
참고자료	2013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계획 지역사회 건강조사(대덕구보건소) 대덕구 통계연보(2012)
작성자	윤 지 용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근거 법률	주요 내용	실적	예산 (백만)
대덕구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보건료기본법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인력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6명 (지역담당 간호사) 내용 - 등록 대상자(가구)를 방문 요구도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행태개선, 만성질환자 관리, 임산부·신생아 및 영유아 관리, 노인 허약 예방,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 장애인 재활 관리 - 보건소 내·외 복지서비스 연계,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정기요양등급외 판정자 연계	등록가구 5,003 등록가구원 6,307 남성 2,231, 여성 4,076 방문건수 20,958건 서비스연계건수 1,880 *2013년도 사업계획서 참고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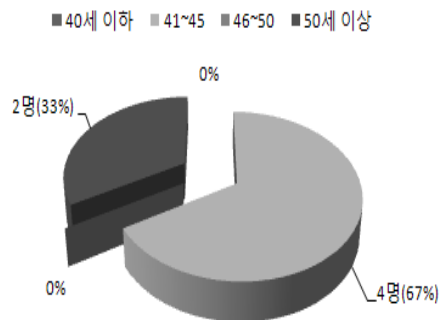
② 사업 모니터링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수립에 지역 여성 건강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가?	Y	담당자 의견은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문제이지 여성국한사업이 아니므로 남녀를 분리해서 볼 수가 없다고 함.
	(참여한다면)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가?	통합건강증진사업단 (교수전문가집단, 성비는 5:5)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참여 계획이 있는가?		
접근성	관내 사업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자 및 생애 전환기검진자 중 검진사후관리 동의자)에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Y	
	누구를 대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가?	대상자의 정보가 넘어오면 전화를 먼저 하고 신청을 희망하면 방문하여 등록함.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취약계층이라는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기술이 필요함.
	정보 제공 방식은 무엇인가?	전화, 보건소 홈페이지	전화는 대상자와 직접 통화하여 접수를 하도록 권유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빈번하지는 않으나 가끔 자녀가 질의하는 경우 있어 정보제공방식에서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의 여지가 있음
	제공되는 정보에는 '검진사후관리 동의'해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되고 있는가?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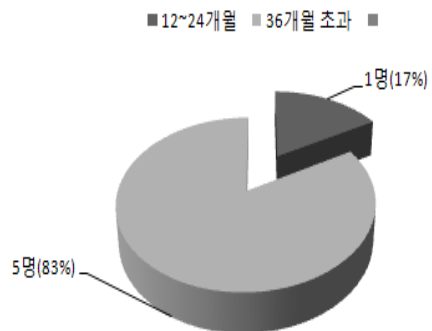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p>사업 대상자는 성별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가?</p> <p>* 사업대상자인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별 성별 현황.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는 실적 보고서에는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 내 가구수, 등록가구수 현황이 있음.(성별 분리통계 상태는 아님)</p>	<p>Y</p> <p>사업대상자 외에도 자녀는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거주지역에 가면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 직접 또는 주변에서 도움요청을 하기도 하고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지원팀, 암센터, 병원 등에서 의뢰가 오기도 함.</p>	<p>보건복지부의 시스템 자체가 성별분리통계가 되지 않게 되어 있으며 현장 담당자 역시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음.</p>
	<p>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프로그램별 (행태개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 건강문제관리, 다문화 및 이탈주민관리, 장애인 재활관리)성별 대상자 현황 차이가 있는가?</p>	<p>____프로그램(남_명,여_명) ____프로그램(남_명,여_명) ____프로그램(남_명,여_명) ____프로그램(남_명,여_명) ____프로그램(남_명,여_명)</p>	<p>성별 구분 되지 않음.</p>
	<p>방문건강관리사업 조사(가구조사표)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건복지부 실적보고 이외에 자체 모니터링을 의미</p>		<p>교수진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이외에 포괄적인 위원회운영 또는 모니터링이 정례화 되어야 함.</p>
	<p>누가 모니터링 하는가?</p>	<p>통합건강증진사업단</p>	
	<p>모니터링에서 여성 건강문제 인식을 통한 사업개선실적이 있는가?</p>	<p>모니터링자체평가결과는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 되지만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음</p>	<p>-</p>
	<p>대상자 재평가(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없거나, 미방문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퇴락하는 대상자의 성별 현황 차이가 있는가?</p>	<p>성별 분리 통계 없음</p>	<p>대부분의 서류들이 가구 수 또는 가구원으로 기록되어 담당자는 성별분리통계필요성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p>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내부 자원 연계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내부 자원 연계(대상자 기준) 남성 ()명, 여성()명	-
	보건소 외부 자원 연계 대상에는 지역사회 내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고루 포함되어 있는가?	Y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외부 자원 연계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전년도에는 월 1회 사례회의를 통한 사례보고가 있었으나 통합관리가 시행된 이후 방문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들은 축소되고 있음.
		남성들에게 주로 연계된 서비스는 무엇인가?	알콜,정신질환관련-병원연계
		여성들에게 주로 연계된 서비스는 무엇인가?	대상자 탈락과 구제관련-구청복지지원팀, 주민센터연계
		무력감과 우울 등의 정서적인 문제 관련 서비스 연계도 추진되고 있는가?	정신보건센터연계
서비스 제공자 근무 여건	<p>서비스 제공자 (방문전문인력)를 대상으로 근무여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기간 : 2014. 6. 27 · 설문조사 대상 : 2014년 대덕구 방문간호사(6명) 		

1.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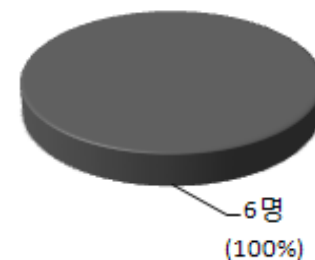


2. 근속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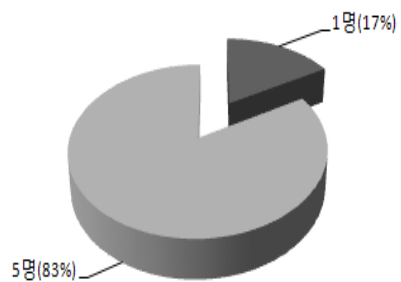
3. 1일 방문가구수

■ 5가구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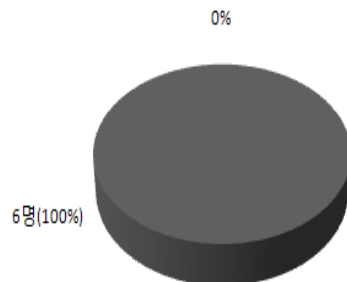
3. 현재 방문가구수는 적절한가

■ 그렇다 ■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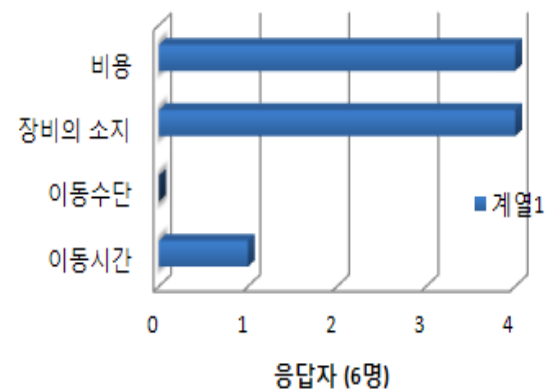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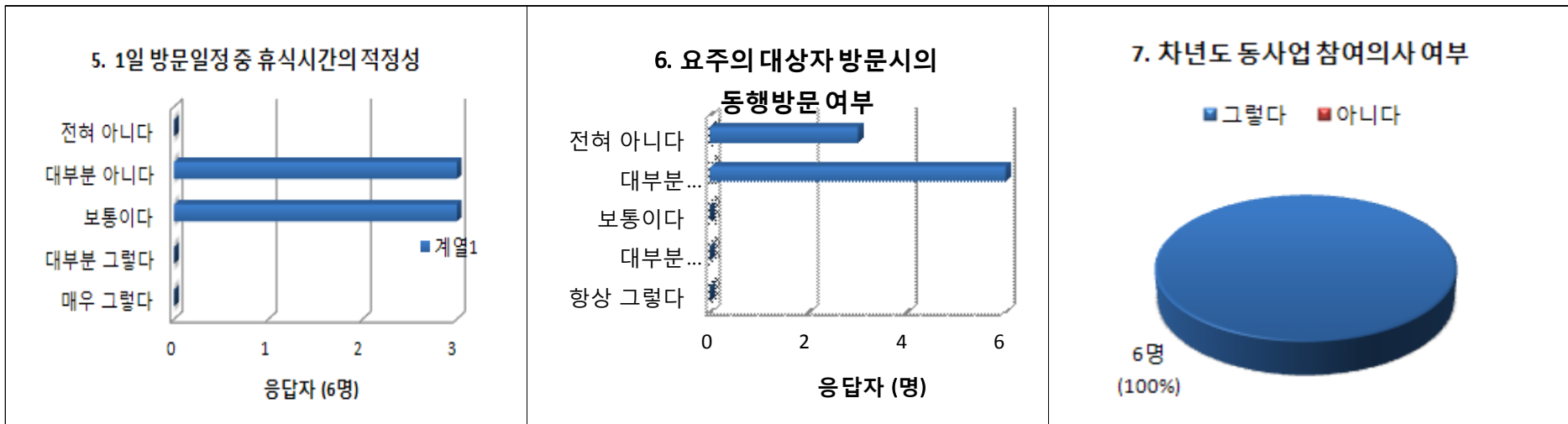
4. 방문가구 이동시 불편함 여부

■ 그렇다 ■ 아니다



4-1. 불편의 원인 (복수응답)





7. 차년도 방문건강관리 사업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낌.
- 대상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숙련. 방문 시 보람을 느낍니다. 가정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 사업에 대한 숙련과 대상자와의 긍정적 관계.
- 방문대상자와의 관계유지와 방문시의 보람을 느껴서.
- 방문 대상자 지속적 관리로 효과적 결과를 위함. 가계의 안정화를 위하여.

8. 방문건강관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대상자와 시간 맞추려면 어렵다. (일찍 방문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무실 출근 후 나가려면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다.)
- 대상자 수가 너무 많아서 다음 방문까지 기간이 길어져 대상자들의 민원이나 불만이 있으며, 친밀감 형성이나 대상자 상황 파악에 애로가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 방문지 까지 방문지에서 보건소로 이동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 소비가 많아요. 보건소에 출근하지 않고 직접 현장으로 갔으면 합니다.
- 차량 유지비와 통신비 지급을 요함.
- 자차 사용(대부분) 시 유류비 지급과 위험수당 지급, 출장비 지급, 원거리 방문 시 바로 근무지로 출근 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 실시 요합니다.
- 현실적인 출장비와 위험수당.(방문 시 자차사용으로 사고나 차량유지비를 본인이 부담함)
- 탄력근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동차 유지비가 필요해요. 계절관계로 탄력근무를 원합니다. 출장비 지급.
- 자동차 유지비 필요. 출장비 필요. 계절관계로 탄력근무제 필요.

③ 사업에 대한 약평 및 제언

<약평>

- ① 보건복지부 내부보고서에서 성별 분리통계가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음.
- ② 이로 인하여 좀 더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나 결과검증에 제한점이 있음.
- ③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 업무 피로도가 높아 보임.

<제언>

- ① 담당자나 방문전문인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성병영향 평가나 분석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이었으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② 다른 도시나 구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으며 성인지 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담당자와 방문간호사에 대한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됨.
- ③ 서비스 대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위 설문 결과에서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문전문 인력의 처우개선에 대한 보완책의 필요성을 제안함.

♥ 2014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자 (방문전문인력)의 근무여건 조사 ♥

안녕하십니까?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 요원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성 주류화 전략 실천을 목표로 대전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자인

방문전문인력의 근무여건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시정사업 개선조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 및 제언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 (joosch@cnu.ac.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 령 (만 세) ♠ 성 별 (남 / 여)
♠ 소 속 ① 동구 ② 서구 ③ 중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1.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 ① 간호사 ② 영양사 ③ 운동(처방)사 ④ 사회복지사 ⑤ 기타()

2. 본 기관에서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 ① 6개월 이하 ② 6~12개월 ③ 12~24개월 ④ 24~36개월 ⑤ 36개월 초과

3. 1일 평균 방문 가구수는?

- ① 1~2가구 ② 2~3가구 ③ 3~4가구 ④ 4~5가구 ⑤ 5가구 이상

- 3.1. 귀하의 1일 방문 가구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2. 아니더라도 답하신 경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1일 방문 가구수는? ()

4. 가구 방문시 이동에 따른 불편함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1.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이동시간 ② 이동수단 ③ 장비의 소지 ④ 비용 ⑤ 기타 ()

제3절 평생교육⁶⁾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업 분야	평생교육지원 및 협력(대전시)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7월 15일
모니터링 장소	서면 인터뷰
인터뷰 대상자	대전평생학습진흥원 사업담당자, 배달강좌제 모니터링단 블로그 '달링놀이터'
참고자료	2012, 2013 평생학습진흥원 사업계획서
작성자	임원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대전시	평생교육 지원 및 협력	기획관리실 교육협력 담당관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0조 (평생교육진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강좌신청 · 배달강사 모집/선정 · 배달강사양성/역량강화 · 모니터링단 운영 		배달강좌 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특화 배달강좌 안내 및 홍보 (11월중 만족도 조사 실시) · 남성 참여 독려 위한 이벤트 · 대전 시내 직장시설의 참여율을 높 이도록 홍보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 교육 참여 확대 홍보 방안

6) 평생교육 분야 모니터링 활동가들은 함께, 1개 본청, 5개 자치구별로 보고서를 작성(작성자 이름은 주요 작성자 이름을 적요)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 분석평가서 제출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 성인지 예산담당관이 협의(세출예산서 근거) · 대상과제 선정에 전문가 참여하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 이후 컨설팅 시행 · 컨설팅은 총 3회로 대면 1회, 서면 2회 실시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내용 구성 제시 ⇒ 반영됨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p>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중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남성 특화 배달강좌 안내 및 홍보를 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이 성별 특성 분석,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동시에 제안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남성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를 기획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직장 시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홍보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과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교육 참여 확대 등 지속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예산 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하여 제안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 성인지예산서 작성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 평등 조치사항 중 남성특화 배달강좌 안내 및 홍보가 남성 참여율이라는 성과목표로 반영됨.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남성 특화 배달강좌 안내 및 홍보조치가 이루어졌는가?	N	2012년도 배달강좌제에 대한 성별 치우침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선의견은 제시되었으나 실제 추진되지는 않음.
	남성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가 실시되었는가?	N	
	대전 시내 직장시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홍보하였는가?	Y	연초 사업계획서, 배달강좌제 운영지침 조례, 홈페이지 등을 검토한 바 직장시설의 참여를 높이는 별도 접근과 홍보는 없었음.
	배달강좌 만족도 조사를 실시(2012년 11월)하였는가?	Y	수강생을 중심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홈페이지에 온라인 설문조사 창이 있지만 현재까지 게시되지는 않았음.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Y	배달강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에 별도로 "소외계층"이라고 명시하여 신청을 받고 있음.

㉞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적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는가?	Y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음. 2013년 신문기사 인용 “ 대전시 관계자는 수강생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41.9%가 배달강좌가 배움의 즐거움은 물론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하는 청량제 역할을 했다”면서 “ 앞으로 장애인, 노년층의 확대는 물론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배려한 배달강좌도 확대해 나갈 방침 [출처] 대전시, 배달강좌 신청하세요작성자 씨티타임즈” 프로그램 개발을 앞둔 사전적인 의견수렴의 구조 필요함
		(절차가 있다면) 어떤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만족도 설문방식	
		(절차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주민을 참여토록 할 계획이 있는가?		
	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과정은 누가, 어떻게 모니터링·평가하는가?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가 이루어지는가?	Y	배달강좌제 모니터링단(딜링, Dilling) 44명이 매일 현장 점검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함. 이는 개설에 대한 개입이 아닌 운영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임. 실제 교육내용을 모니터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임.
		(이루어진다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 요원이 현장 점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주민 참여 모니터링·평가 실시 계획이 있는가?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전문성	프로그램의 강사진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강사 선발 기준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며, 관련 자격 요건은 구비되어 있는가?	Y	홈페이지 강사등록 안내에 세부적으로 설명이 게시되어 있음. 남성이 강사로 많이 등록되어 있는 교육과정-통기타, 서예, 대덕학, 지리학, 생활안전, 풍수지리, 바둑, 골프, 숲해설, 탁구 등이고 그 외 대다수 프로그램의 강사는 여성임.
		강사 구성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Y	
		강사로 참여하는 데 성별에 따른 제한 요소는 없는가?	Y	
	프로그램의 강사진에게 전문성에 적합한 근무 여건이 제공되는가?	성별에 따른 불평등 요소는 없는가?	Y	프로그램 구분에서도 역사, 전통, 계승, 체육 등의 영역 강사진은 남성이 많고, 유아, 생활 문화, 건강, 상담 등의 영역은 여성강사진이 훨씬 많음.
		강사 1인당 수강생 수는 적정한가?	Y	배달강좌제는 5인부터 복지관 등에 소외계층을 위한 강좌는 십여명 이상도 되고 있음. 수강생 수의 기준이 프로그램마다 다름
		휴게 및 휴식 여건은 적절한가?	Y	자율적으로 휴식하는 분위기. 정해진 시간에 쉬는 것은 아님.
접근성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접근이 쉬운가?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가?	Y	배달강좌제 홈페이지, 구정/시정 소식지, 주민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됨. 그럼에도 남녀의 역할 패턴이나 여성 내부의 여건과 차이를 고려한 특징을 살린 홍보는 되고 있지 않음. 모든 시민의 범주로 홍보하는 것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성인지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음.
		쉽게 눈에 띄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전달되는가?	Y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전달되는가?	Y	
	프로그램의 신청·접수는 용이한가?	프로그램 이용자의 성별·연령별 및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는가?	Y	일반 신청자와 소외계층을 별도로 분리해냈지만 실제 소외계층이라는 낙인과 분리로 인해 프로그램 수강신청시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가질 수 있음.
		프로그램 신청·접수에 필요한 적절한 안내가 제공되는가?	Y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교육비/이용료 부담 등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없는가?	교육비/이용료의 1인당 평균 수준은?		무료 (재료비만 부담)	교육비용과 기회의 동등함은 있지만 취약계층을 소외계층으로 구분함으로써 대체할 만한 용어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 실제 소외계층이라고 하지만 여성한부모 비율,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부족, 여성노인의 독거노인으로서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어려운 여건의 여성들의 접근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
	해당 교육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비/이용료가 책정되었는가?		Y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비/이용료 지원이 있는가?		Y	
	성별 역할로 인해 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없는가?	교육 시간대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Y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 기회 접근의 제약 요소가 없는가?	일시 돌봄 지원(연계 또는 정보 제공) 등의 조치가 취해져 있는가?	Y	
		교육 장소가 보행 및 대중교통 접근 가능 지역에 위치하는가?	Y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든' 주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가?	교육 장소가 보행 및 대중교통 접근 가능 지역에 위치하는가?	Y	강사진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은 복지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약요소는 없음.
		진입부에 장애인과 유모차의 통행을 고려한 경사도가 설치되어 있는가?	Y	
		프로그램은 주민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Y	대전시 배달강좌제의 일정정도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강의를 많음. 전업주부나 직장인, 청소년, 남성,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요구보다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중장년 여성 등에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
	프로그램 정원은 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되는가?	Y	프로그램 정원은 프로그램마다 다름.	
	성별 분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예: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제과제빵, 반찬 / 남성 취창업 프로그램-제도, 목공)은 개설되어 있지 않은가?	Y	성별 분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남녀 강사의 교육영역이 분리되기도 함. 역사, 전통 영역 남성 많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대가 '모든' 주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가?	취업자/비취업자의 이용 가능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Y	주로 오전과 오후 시간에 운영되며 취업자를 위한 저녁 시간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취업자를 위한 낮 시간에 직장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고려함. 그러나 실제 직장에서의 배달강좌제는 근무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활용하거나 업무시간 내 배려를 받아서 해야 할 것임.
연계성 (대전시와 서구만 평가)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이후 후속 프로그램으로 적절히 연결되는가?	해당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또는 구정 참여 효과가 있는가?	Y	배달강좌제의 강사 등록으로 연계한 일자리창출은 있지만 실제 강의 수강생의 일자리 참여 효과는 미비하다고 보임. 또한 구정 참여 효과도 거의 없는 것 같음.
		(효과가 있다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가?	Y	
		(효과가 없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 개선 계획은 있는가?		배달강좌제의 한 축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어린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일정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모든 시민, 또는 구정/시정 참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생활문화 영역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④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강사와 모니터링,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별 통계를 생산해서 제시하는 것 필요. 또한 소외계층 내 성별/연령별 통계 제시도 필요함. 이러한 내용을 배달강좌 운영규정에 명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필요함.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남성특화와 남성참여를 독려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특화된 추진은 시행되지 않았으며, 직장시설내 배달강좌 비율도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모니터링 블로그에도 기록을 찾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음.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취약계층의 교육제공을 위한 복지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많지만 취약계층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교육을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① 대덕구로부터 시작된 배달강좌의 본래 취지가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오히려 소외계층의 프로그램 지원적 성격이 강해짐. 한편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배달강좌제에 대한 동기과 취지를 살려서 참여하는 본래의 의미를 대전시에서 확산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음. 애초 본래 사업이 확산되고 정착되는 것과 동시에 성인지성을 발휘해서 질적 향상을 끌어올리는 것을 제고해야 함.
- ② 강사진/참여자/모니터링단의 성별 통계 제시 필요
- ③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특화된 방안을 실질적으로 추진 필요
- ④ 강사진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사업설명회 때 제공 필요
- ⑤ 대전형 배달강좌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에 성인지적인 고려로 여성, 남성의 참여 확대 필요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평생학습자치대학운영(동구)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7월 7일
모니터링 장소	서면인터뷰
인터뷰 대상자	사업담당자 서면 회신
참고자료	동구청 평생교육사업계획서
작성자	임원정규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동구	평생학습 자치대학 운영	평생학습원	평생학습 지원조례 제13조(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아카데미 - 25만 구민 1인 1자격, 전문가 양성 · 교육아카데미 - 교육지식 및 정보 제공 · 경제아카데미 - 재테크, 자산관리 등 · 가족아카데미 - 가족간 화합 프로그램 	3,000명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수강생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기획 · 프로그램에 따른 성별만족도 조사 통계자료구축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 분석평가서 제출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 성인지예산담당관이 협의(세출예산서 근거) · 대상과제 선정에 전문가 참여하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 이후 자치구에서 대면 컨설팅 1회 진행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성별이 고른 참여도를 위해 시간대조정 및 성별프로그램 욕구조사와 만족도 조사 통계자료구축 제시 ⇒ 조치사항에 반영됨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p>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수강생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기획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하여 제안된 조치사항임 - 프로그램에 따른 성별만족도 조사 통계자료 구축이라는 조치사항은 사업 수혜의 성별특성 분석에 기반한 조치사항임.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제안된 가족아카데미를 주말에 진행하여 남성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강사연수에 남성강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는 개선안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지 않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남성수강생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이 기획되었는가	Y	예) 가족아카데미 사업계획서를 참조할 때 사업모집시 초등학생 참가자와 부모로만 명시되었고, 프로그램은 성 중립적이고, 주말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가족단위를 유도함. 별도의 아버지 참여를 위한 내용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음.
	프로그램에 따른 성별만족도 조사가 통계자료로서 구축되었나	Y	실제 사업추진실적 검토를 통해 성별에 따른 참여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적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는가?	Y	위탁교육을 통한 사업으로서 위탁교육기관의 의견 수렴이 된 것으로 보임.
		(절차가 있다면) 어떤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조사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내 설문조사 란에 가서 전체 평생학습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함. 실제 참여자는 매우 저조하므로 이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절차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주민을 참여토록 할 계획이 있는가?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과정은 누가, 어떻게 모니터링·평가하는가?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가 이루어지는가?		Y	추후 재점검 필요.
	(이루어진다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학습자 만족도 조사	실제 참여하는 주민의 만족도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접근이 어려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주민 참여 모니터링·평가 실시 계획이 있는가?			주최측과 수혜자의 모니터링에 대해 객관성을 갖도록 제3자의 평생교육모니터링단의 평가가 배치되어야 할 것임.
전문성	프로그램의 강사진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강사 선발 기준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며, 관련 자격 요건은 구비되어 있는가?	Y	해당 강의 내용에 맞는 강사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의 서류 제출로 1차 강사 선발이 되겠지만, 실제 수년간 평생학습원이 설립된 이후 강사가 계속 갱신해서 강의를 진행함. 한편으로는 초기 강의교육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관계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음. 당연히 강사 중에도 여성이 많을 것임.
		강사 구성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Y	
		강사로 참여하는 데 성별에 따른 제한 요소는 없는가?	Y	
	프로그램의 강사진에게 전문성에 적합한 근무 여건이 제공되는가?	성별에 따른 불평등 요소는 없는가?	Y	여성강사, 여성수강생이 현재는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현재는 불평등 요소는 보이지 않지만 남성과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될 때 성인지력, 성평등, 안전, 성희롱예방 등의 교육이 의무화 되는 것 고려할만한 요소임.
		강사 1인당 수강생 수는 적정한가?	Y	강좌마다 다르게 나타남.
		휴게 및 휴식 여건은 적절한가?	Y	명시된 휴식시간이 아닌 자발적 휴식시간으로 휴식하며, 별도 휴게공간은 없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접근성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접근이 쉬운가?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가?	Y	일반적인 홍보 접근방식으로 다양한 경로로 홍보를 하고 있음. 그럼에도 남녀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 여건 등 특성을 고려한 홍보는 없음.
		쉽게 눈에 띄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전달되는가?	Y	온오프라인 공식 홍보게시판을 활용하여 전달되기 눈에 띄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전달되겠지만, 실제 공식홍보를 접하는 대상은 성별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전달되는가?	Y	행사의 전반적 취지와 개요를 중심으로 정보의 전달. 성명적일 수 있음.
	프로그램의 신청·접수는 용이한가?	프로그램 이용자의 성별·연령별 및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는가?	Y	프로그램 내용이 가족, 건강, 자녀 등의 우리사회 돌봄과 관련된 영역의 프로그램(자격, 취미, 교양 등)이 편성되어 있음. 이는 사회 통념적으로 돌봄의 주체가 되는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남성에 비해 여성참여가 많을 것으로 보임.
		프로그램 신청·접수에 필요한 적절한 안내가 제공되는가?	Y	
	교육비/이용료 부담 등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없는가?	교육비/이용료의 1인당 평균 수준은?	월1만원	강의를 듣고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선의 강의임. 그러나 실제 강의의 차별화와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균 강의료의 전후로 탄력적인 교육비 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해당 교육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비/이용료가 책정되었는가?	Y	최근 수강료 유료화를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을 유추해 보면, 취약계층 위주의 평생교육제공으로 무료가 많았고, 1만원 교육비를 내면서의 참여자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비/이용료 지원이 있는가?	Y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그 가족,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미성년자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경로우대자 등 수강료 감면 대상자로 명시됨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성별 역할로 인해 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없는가?	교육 시간대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Y	주로 낮 시간에 편성, 주말에 캠프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남성의 생계부양으로 인해 어떠한 시간대를 제공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임. 시간대의 문제는 부차적일수도 있음.
		일시 돌봄 지원(연계 또는 정보 제공) 등의 조치가 취해져 있는가?	N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 기회 접근의 제약 요소가 없는가?	교육 장소가 보행 및 대중교통 접근 가능 지역에 위치하는가?	Y	관할지역의 접근도가 높은 곳에 주로 평생교육이 위치
		진입부에 장애인과 유모차의 통행을 고려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가?	Y	공공기관 건물은 장애인 접근성을 이전부터 잘 마련했기 때문에 경사로가 있음.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든' 주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가?	프로그램은 주민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Y	모든 주민보다는 여성, 노인, 취약계층 중심의 강의가 주로 운영되고 있음.
		프로그램 정원은 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되는가?	Y	
		성별 분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예: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제과제빵, 반찬 / 남성 취창업 프로그램-제도, 목공)은 개설되어 있지 않은가?	N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대가 '모든' 주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가?	취업자/비취업자의 이용 가능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N	주로 여성, 노인, 어린이의 프로그램 위주로 인해 다양한 시간대보다는 특정 시간대를 선호(낮 시간 프로그램)

④ 모니터링 결과

①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정책개선안이 해당 사업을 통한 현상적인 접근위주(단순히 남성참여방안 높이는 것 위주)이며, 본질적인 접근(우리 사회 여성과 남성의 역할 제고 등)은 사실 한계가 있음.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남성 수강생의 참여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교육 내용 자체가 여성의 역할을 현실적인 위치에서 고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임. 단순히 반찬과 요리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이 아니었지, 실제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사회의 돌봄 주체로 요구되는 여성에게 적합한(예. 자녀를 잘 키우고, 노인을 잘 돌보고, 비경제활동주체로의 삶을 위한 취미 등이 제공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참여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맥락이 반영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임.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정책개선 내용(- 남성수강생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기획, - 프로그램에 따른 성별만족도 조사 통계자료구축) 이 실제 2013년 해당 사업에 반영되지 않음을 사업계획서를 통해 유추할 수 있었음.

②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① 홈페이지 정보공개시 교육참여자에 대한 성별통계 현황 개시 필요
- ② 우리 사회의 남녀의 역할 고착을 벗어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식향상 교육이 필요.
- ③ 자격,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을 시행하는 맨 첫 번째 시간에는 성인지력 향상 교육 제공

- ④ 기존 강의 내용은 여성의 가사노동과 관련된 직접적 교육은 아니지만 더 큰 틀에서의 돌봄 주체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교육임. 향후 교육의 점차적 변화를 위한 정책결정단위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필요.
- ⑤ 교육모니터링을 수혜자와 주최측 내용만이 아닌, 제3지대 영역에서의 교육모니터링, 특히 성인지적인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고 재정이 뒷받침 되어서의 질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구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협약이 필요함.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업 분야	평생교육 지원(중구)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6월 16일 - 6월 25일
모니터링 장소	중구문화복지관
인터뷰 대상자	사회복지과 사업담당자 및 강사
참고자료	인터넷, 담당자 질의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중구문화복지관 프로그램운영계획서
작성자	황 현 영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중구	평생교육 지원	사회복지과	평생교육법 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운영	124명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강사 위촉 시 동일 조건 시 남성 강사 채용으로 남성 강사의 비율 높임 · 남성강사 비율 높임으로써 수혜자의 성비 조정해 성평등 예산 구현

②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 분석평가서 제출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 수정 요청(사업내용 구체적 기술 등) 후 반영결과 제출서 제출됨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 성인지예산담당관이 협의(세출예산서 근거) · 대상과제 선정에 전문가 참여하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음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음. · 남성강사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수혜자의 성비를 조정하겠다는 조치사항과 신규 강사 위촉 동일 조건 시 남성 강사 채용으로 남성 강사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조치사항은 예산 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 평등 조치사항 중 남성강사 비율 증가라는 성과목표로 반영됨.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신규강사 위촉시 동일 조건시에 남성 강사를 채용하였나	Y	주중 낮 시간대에 진행되는 강의에 시간의 여유가 있는 전업주부들의 이용률이 높음. 주부대상의 강의를 많이 개설되어 남성강사의 비율이 낮음
	남성강사 비율을 높임으로서 수혜자의 성비가 조정되었나	N	강사란 직업이 파트타임이므로 직업으로는 정규직을 원하는 남성들의 지원을 하락으로 여성강사의 비율이 높음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적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는가?	Y	평생학습 요구 분석 결과 반영
		(절차가 있다면) 어떤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Y	설문지를 통해 수강생의 개설 희망 강의를 조사함.
		(절차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주민을 참여토록 할 계획이 있는가?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과정은 누가, 어떻게 모니터링·평가하는가?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가 이루어지는가?	Y	설문지 조사 결과 및 주민 요구 수렴
		(이루어진다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Y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에게 프로그램 종료 시 설문지를 통해 실시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주민 참여 모니터링·평가 실시 계획이 있는가?		
전문성	프로그램의 강사진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강사 선발 기준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며, 관련 자격 요건은 구비되어 있는가?	Y	강사 선발 시 자격증 유·무와 경력 사항 확인함.
		강사 구성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Y	적절한 자격과 경력을 참고하여 선정함
		강사로 참여하는 데 성별에 따른 제한 요소는 없는가?	Y	제한 요소 없음
	프로그램의 강사진에게 전문성에 적합한 근무 여건이 제공되는가?	성별에 따른 불평등 요소는 없는가?	Y	평등하게 제공함
		강사 1인당 수강생 수는 적정인가?	Y	15명 ~ 20명 정원임
		휴게 및 휴식 여건은 적정인가?	Y	적정함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접근성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접근이 쉬운가?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가?	Y	홈페이지, 중구소식지, 팸플릿을 제공함
		쉽게 눈에 띄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전달되는가?	Y	중구소식지, 팸플릿 등을 다중 집합장소 게시판에 비치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전달되는가?	Y	팸플릿, 전화로 상담함
	프로그램의 신청·접수는 용이한가?	프로그램 이용자의 성별·연령별 및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는가?	Y	홈페이지, 전화, 방문접수 가능
		프로그램 신청·접수에 필요한 적절한 안내가 제공되는가?	Y	복지관 사무실에서 안내함
	교육비/이용료 부담 등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없는가?	교육비/이용료의 1인당 평균 수준은?	월 1만원	적정함(4개월 4만원)
		해당 교육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비/이용료가 책정되었는가?	Y	월 1만원의 저렴한 교육비로 책정됨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비/이용료 지원이 있는가?	Y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은 무료로 수강함
	성별 역할로 인해 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없는가?	교육 시간대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Y	오전10시, 11시, 오후1시,2시, 저녁7시
		일시 돌봄 지원(연계 또는 정보 제공) 등의 조치가 취해져 있는가?	N	돌봄 지원 없음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 기회 접근의 제약 요소가 없는가?	교육 장소가 보행 및 대중교통 접근 가능 지역에 위치하는가?	Y	대전고 앞 4개의 버스노선 및 6개 노선(612, 108, 311, 513, 317, 614) 지하철 1호선 중구청하차,
		진입부에 장애인과 유모차의 통행을 고려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가?	Y	설치되어 있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든' 주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가?	프로그램은 주민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Y	설문을 통한 결과와 전년도 출석률이 저조한 야간반 폐지 및 신규 야간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반영함
		프로그램 정원은 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되는가?	Y	20명에서 40명 신청자 중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음
		성별 분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예: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제과제빵, 반찬 / 남성 취창업 프로그램-제도, 목공)은 개설되어 있지 않은가?		여성 취업, 창업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천연화장품 만들기 개설되어 있음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대가 '모든' 주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가?	취업자/비취업자의 이용 가능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오전10시,11시, 오후 1시, 2시, 저녁 (서예, 성악, 캘리그래피, 댄스스포츠 7시)

4]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신규 강사 위촉을 위하여 홈페이지 접수 및 내방하여 강사를 모집하기 때문에 성 주류화 조치사항에 적용됨,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신규 강사 위촉시 동일 조건시 남성 강사 채용으로 남성 강사의 비율을 높이려 했으나 강사가 파트타임 직업이라 정규직을 원하는 남성의 지원율 하락으로 여성강사 비율이 높음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정책개선안이 향후 프로그램 남성강사의 지원률을 높이는 것에 크게 반영되지는 못하다

⑥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① 중구에는 기관 및 사설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수가 203개임. 중구문화복지관의 강사의 수강료는 1시간당 3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30분이 넘으면 20,000원을 더 받기 때문에 남성 강사는 저렴한 강사비와 파트타임 직업이라 남성의 지원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음. 동일 시간으로 타 기관에서 강의를 할 경우는 3.4배의 강사 비를 받기 때문에 문화센터의 강사를 꺼려한다고 함. 봉사나 재능기부를 위한 강사를 할 경우는 부담스럽지 않지만 생계목적일 경우는 저렴한 강사비와 파트타임 직업이라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함. 강사비를 조금 더 지원이 되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됨.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명품서구자치대학 운영 (서구)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6월 16일 - 6월 21일
모니터링 장소	서구청 대강당, 메일로 질의응답
인터뷰 대상자	문화체육과 사업담당자, 교육생
참고자료	인터넷, 담당자 질의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명품서구 자치대학 운영계획안
작성자	황 현 영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서구	명품서구 자치대학 운영	문화체육과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학습 조례 제3조 (기본원칙)	· 매주 금요일 / 총 10회 2시간(14:00 ~ 16:00)	831명	34	· 수강생 교육만족도 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 다양한 대상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 다양성 모색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 분석평가서 제출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 성인지에 산담담관이 협의(세출예산서 근거) · 대상과제 선정에 전문가 참여하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음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되었음. · 수강생 교육만족도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 다양한 대상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의 다양성을 모색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사업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조치사항임.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제안된, 남성들의 교육성향, 교육욕구 분야 강좌개설,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0대 이후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개선안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 평등 조치사항 중 다양한 대상자 참여라는 계획이 남성의 참여율 향상이라는 성과목표로 반영됨. 	

③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수강생 교육만족도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나	Y	수강생 교육만족도 조사와 남성들의 참여율 높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다양한 대상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하였나	Y	남성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남성들의 교육성향, 교육욕구 분야 강좌 개설함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과정은 누가, 어떻게 모니터링·평가하는가?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가 이루어지는가?	Y	지역주민과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 의견 수렴함
		(이루어진다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Y	12년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수강생의 관심과 호응도 높은 강의분야를 반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주민 참여 모니터링·평가 실시 계획이 있는가?		
전문성	프로그램의 강사진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강사 선발 기준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며, 관련 자격 요건은 구비되어 있는가?	Y	분야별 국내유수의 석학 및 저명인사로서 분야별, 인지도, 선호도 고려 강사 선정
		강사 구성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Y	지난해 수강생들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강좌로 선정함
		강사로 참여하는 데 성별에 따른 제한 요소는 없는가?	Y	제한 요소 없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프로그램의 강사진에게 전문성에 적합한 근무 여건이 제공되는가?	성별에 따른 불평등 요소는 없는가?		Y	없음
	강사 1인당 수강생 수는 적정한가?		Y	대강당에서 강의하므로 많은 주민이 참여함
	휴게 및 휴식 여건은 적절한가?		적정	
접근성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접근이 쉬운가?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가?	Y	입간판 및 플랜카드 제작, 서구 소식지 게재 및 지방 일간지, SBN(대전 서구 인터넷 방송국), SNS 홍보, 구 홈페이지 팝업창 및 배너함 설치, 갤러리아 타임월드 LED전광판 홍보, 아파트 라인별 홍보, 평생학습 기관홍보 및 수강생 모집요청 등
		쉽게 눈에 띄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전달되는가?	Y	서구소식지, SNS홍보, 아파트라인별 홍보, 갤러리아 타임월드 LED전광판 홍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전달되는가?	Y	팸플렛, 플래카드 제작함, 전화 상담함
	프로그램의 신청·접수는 용이한가?	프로그램 이용자의 성별·연령별 및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는가?	Y	서구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구·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접수 가능
		프로그램 신청·접수에 필요한 적절한 안내가 제공되는가?	Y	구·동주민센터 사무실에서 안내함
	교육비/이용료 부담 등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없는가?	교육비/이용료의 1인당 평균 수준은?	무료	
		해당 교육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비/이용료가 책정되었는가?		
	성별 역할로 인해 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없는가?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비/이용료 지원이 있는가?		
		교육 시간대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N	주1회 금요일날 14:00~16:00 교육
	일시 돌봄 지원(연계 또는 정보 제공) 등의 조치가 취해져 있는가?	N	돌봄 지원 안됨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 기회 접근의 제약 요소가 없는가?	교육 장소가 보행 및 대중교통 접근 가능 지역에 위치하는가?	Y	시내버스 216, 916, 514, 618, 918
		진입부에 장애인과 유모차의 통행을 고려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가?	Y	설치되어 있음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든' 주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가?	프로그램은 주민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Y	수강생의 관심과 호응도 높은 강의 분야 반영하여 선정함
		프로그램 정원은 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되는가?	Y	대강당에서 많은 수강생이 참여함
		성별 분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예: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제과제빵, 반찬 / 남성 취창업 프로그램-제도, 목공)은 개설되어 있지 않은가?	Y	21세기 평생학습 시대에 걸맞은 자기계발과 의식전환 분야인 성공스토리, 의식, 세계정세 흐름 등 강의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대가 '모든' 주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가?	취업자/비취업자의 이용 가능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N	매주 금요일 14:00-16:00에 운영
연계성 (대전시와 서구만 평가)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이후 후속 프로그램으로 적절히 연결되는가?	해당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또는 구정 참여 효과가 있는가?	Y	자기계발 및 의식전환 분야강의로 일자리 창출 및 구정 참여에 관심을 보임
		(효과가 있다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가?	N	교육이 금요일 낮 시간에 이루어지다보니 40~60세이하 남성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음
		(효과가 없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 개선 계획은 있는가?		낮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져 남성들의 참여가 낮음. 남성들의 관심분야인 세계정세 흐름 및 성공스토리 등 다양한 경제분야를 강의하려고 노력함

4]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총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서구 소식지 및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홍보를 유도하고 남성들을 위하여 자기계발과 의식전환분야인 성공스토리 및 세계정세 흐름 등을 강의함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구 홈페이지 팝업창 및 메너함 설치 및 시민의 통행량이 많은 갤러리아 타임월드 LED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를 중점으로 성평등한 강의를 함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수강생의 성별, 연령층을 고려하여 흥미롭고 탄력있는 강의를 하여 성평등한 자발적 주민참여 유도함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① 서구에는 대전 5개구 중 가장 많은 283기관에서 평생교육을 운영함.
- ②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자발적 주민참여 유도로 명품서구 자치대학을 운영함.
- ③ 매주 금요일 14:00~ 16:00까지 강의를 하니 성별영향분석을 하니 주로 낮 시간대에 이용이 편리한 가정주부가 대상이 됨.
- ④ 시간대를 저녁시간대로 변경을 하여 성평등하게 가족구성원 모두가 참여 대상이 되었으면 함.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평생학습센터 설치(유성구)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6월 11일 - 6월 22일
모니터링 장소	메일로 질의응답 및 유성구평생학습원
인터뷰 대상자	평생학습원 사업담당자, 수강생 및 도서관이용자
참고자료	인터넷, 담당자 질의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구)방송통신대학교 청사 매입 및 활용계획안
작성자	황 현 영

□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유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성별은 설치, GB는 작은도서관운영 경비지원)	평생학습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대지2,486.4m ² (752坪) · 2012년~2013년(2년)지하 1층,지상4층. · 평생학습 시설, 도서관부 속시설		10	-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었던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 성인지예산담당관이 협의(세출예산서 근거) · 대상과제 선정에 전문가 참여하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음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음. · 유성구 평생학습 요구조사 실시를 통하여 남성들이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야간 및 토요 프로그램 등으로 증설하여 운영한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지 않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올해 2014년도 상반기 통계생산 여부	Y	유성발전 중장기 핵심과제로 방통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유성평생학습문화센터로 활용함
	올해 상반기 성별과 연관지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면 서술	Y	개관이 2013년도 하반기에 준공하여 성평등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평등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고 작은도서관이란 말처럼 초등학교 전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선배멘토와 멘티(1개 반당 4명 이내 모집)를 연계하여 영어, 수학을 학습할 수 있음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적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는가?	Y	평생학습 요구 분석결과 반영함
		(절차가 있다면) 어떤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Y	주민설명회(2013년 1월)와 설문지를 이용하여 참여함.
		(절차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주민을 참여토록 할 계획이 있는가?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과정은 누가, 어떻게 모니터링·평가하는가?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가 이루어지는가?	Y	설문조사 결과 및 센터에 바라는 주민 요구를 수렴함
(이루어진다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Y	평생교육사가 프로그램개발, 분석, 평가에 의한 방식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주민 참여 모니터링·평가 실시 계획이 있는가?				
전문성	프로그램의 강사진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강사 선발 기준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며, 관련 자격 요건은 구비되어 있는가?	Y	강사선발기준은 매년 정기 채용형식을 갖추어 실시하며, 자격요건이 정하여져 있음
		강사 구성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Y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및 해당 경력자로 구성되어 있음
		강사로 참여하는 데 성별에 따른 제한 요소는 없는가?	N	제한 없음
	프로그램의 강사진에게 전문성에 적합한 근무 여건이 제공되는가?	성별에 따른 불평등 요소는 없는가?	Y	평등함
강사 1인당 수강생 수는 적정한가?		Y	적정함(15~30명) 전통국악(한국무용, 우리춤체조)와 문화예술15과목중(댄스스포츠, 흥겨운라인댄스, 건강다이어트요가, 레크댄스노래교실) 30명 모집함	
휴게 및 휴식 여건은 적절한가?		Y	적정함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접근성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접근이 쉬운가?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가?	Y	홈페이지, 현수막, 아파트게시판, 주민자치센터전단지 배부 등
		쉽게 눈에 띄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전달되는가?	Y	홈페이지, 아파트 게시판에 비치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전달되는가?	Y	팸플렛, 전화로 상담
	프로그램의 신청·접수는 용이한가?	프로그램 이용자의 성별·연령별 및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는가?	Y	인터넷접수 후 컴퓨터랜덤 추첨형식으로 이루어져있고 컴맹은 학습상담실에서 인터넷접수 상담사가 접수함
		프로그램 신청·접수에 필요한 적절한 안내가 제공되는가?	Y	직원 및 상담사를 통해 제공함
	교육비/이용료 부담 등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없는가?	교육비/이용료의 1인당 평균 수준은?	Y	3개월 3만원
		해당 교육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비/이용료가 책정되었는가?	Y	요구조사 및 자치구 지원형태로 저렴하게 책정함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비/이용료 지원이 있는가?	Y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20세미만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3급 이상, 기초수급대상자무료.
	성별 역할로 인해 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없는가?	교육 시간대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Y	평일오전, 오후, 야간, 주말 오전 및 오후 편성함
		일시 돌봄 지원(연계 또는 정보 제공) 등의 조치가 취해져 있는가?	N	돌봄기능 갖추고 있지 않음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 기회 접근의 제약 요소가 없는가?	교육 장소가 보행 및 대중교통 접근 가능 지역에 위치하는가?	보통	103번, 312,704, 마을버스 3번, 5번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진입부에 장애인과 유모차의 통행을 고려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가?	보통	양쪽입구에 설치되어 있음, 일요일은 장애인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진입부는 잠겨있어 재 기능을 못함.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든' 주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가?	프로그램은 주민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Y	120여개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함(유아부터 가족(엄마와 유아)단위 일반 및 직장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됨)
		프로그램 정원은 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되는가?	Y	모집인원 대비적정 배분하고 있음 (15 ~ 30명)
		성별 분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예: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제과제빵, 반찬 / 남성 취창업 프로그램-제도, 목공)은 개설되어 있지 않은가?		성별 분리하지 않고 통합 운영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대가 '모든' 주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가?	취업자/비취업자의 이용 가능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Y	아동청소년, 가족형, 직업능력향상교육, 전통국악,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각 분야별 골고루 배분운영하고 있음.

④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총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지역간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원도심 문화 욕구 해소와 성평등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및 가족형 직업능력향상 교육, 전통국악, 인문교양,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다양하나 남성보다는 낮 시간대에 자유로운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음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성평등하게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④ 유성구는 평생교육기관이 156기관이 위치해 있는데 도시적 기능이 쇠약해지고 문화, 학습시설이 빈곤한 온천동 지역 문화시설 설치에 오랜 성평등한 주민 숙원사업으로 84,000여 온천1.2동 주민들에게 여가활동 및 문화향유의 중심시설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있음.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4층만 이용이 되어 지하에 위치한 동아리반은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출입이 불편하고 장애인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자체가 힘들. 동아리반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층수에 편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듦.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배달강좌제운영(대덕구)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7월 8일(화)
모니터링 장소	서면질의
인터뷰 대상자	사업 담당자
참고자료	대덕구 배달강좌 관련 사이트, 언론검색, 배달강좌 사업계획서 등
작성자	임원정규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대덕구	배달강좌제운영(창조지역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평생학습원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 대덕구중장기발전계획(평생학습도시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달강좌제강사료(415백만원) · 마을만들기(65) 	5,235명	4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과 장소를 불문 강사 파견 · 신청에 의한 사업수행임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 분석평가서 제출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 성인지예산담당관이 협의(세출예산서 근거) · 대상과제 선정에 전문가 참여하지 않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 이후 자치구에서 대면컨설팅 1회 진행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여성역할교육 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인권교육 등 강사풀 확보를 대전시에 건의하도록 제안 ⇒ 반영되지 않음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p>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분석과 사업 수혜의 성별특성 분석에서 동시에 개선안으로 제안된 신규 학습자 발굴 및 배달강좌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개선안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 평등 조치사항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성과목표는 남성 참여율 제고로 제시됨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시간과 장소를 불문 강사 파견	Y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강사를 파견하지만 실제 강사의 활동시간대는 오전, 오후 시간대 비중이 많음. 덧붙여 여성들의 참여가 많은 관계로 아이들 학교 보낸 이후 오전시간이 가장 많이 강사가 활동하는 시간대임을 유추할 수 있음.
	신청에 의한 사업수행임	Y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신청에 의한 사업수행임에도 주민 중 여성의 신청이 남성에 비해 많은 것이 현실임. 그러다보니 가사와 돌봄영역에 필요한 강좌를 신청하는 경향이 많음.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적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는가?	N	배달강좌제의 특성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보다는 프로그램 욕구에 맞춰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이어서 신청 자체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봄. 하지만 배달강좌제의 수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살펴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식의 점검은 할 필요가 있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절차가 있다면) 어떤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모니터를 활용 의견수렴 실시함	대전시의 전체적인 학습모니터 활용 의견뿐만 아니라 대덕구 자체적으로 그룹간(행정 내부, 민관협치를 통한 위원회, 강사,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견수렴을 통한 배달강좌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절차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주민을 참여토록 할 계획이 있는가?			
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과정은 누가, 어떻게 모니터링·평가하는가?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가 이루어지는가?		Y	참여자의 만족도, 강사의 의견, 공무원 내부의 평가 등 각각 주체가 분리된 평가를 비공식적으로 하되,
	(이루어진다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학습모니터 현장점검시 실시함	학습 모니터 현장 점검을 통한 절차적 점검 정도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임. 현상적으로 보이는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뿐만 아니라 향후 근본적인 배달강좌제의 취지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질적 평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주민 참여 모니터링·평가 실시 계획이 있는가?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전문성	프로그램의 강사진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강사 선발 기준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며, 관련 자격 요건은 구비되어 있는가?	Y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 오랫동안 구축되면서 강사의 변화 추이가 크지 않을 것이며, 초기부터 오랫동안 맡아 온 강사와 신규강사의 비중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실제 강사 모집 내용이 부족강사에 대한 신규강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프로그램의 강사진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강사 구성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Y	강사 구성은 학습동아리와 행복배움터에는 여성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여성이 원하는 강의 프로그램 성격상 여성강사가 많음. 대신 대덕구 특화프로그램인 도시농업, 대덕학, 생태학 전문가 양성의 과정은 남성 강사진의 포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됨
	프로그램의 강사진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강사로 참여하는 데 성별에 따른 제한 요소는 없는가?	Y	배달강좌제의 필수 과정인 대덕학과 생태학에서의 강사는 주로 남성 비중이 많음. 필수과정에서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 내용이 반영되는 것 필요
전문성	프로그램의 강사진에게 전문성에 적합한 근무 여건이 제공되는가?	성별에 따른 불평등 요소는 없는가?	Y	강사비 수령으로 수혜자의 요청에 의해 강의를 하겠지만 실제 강사 구성원 중 여성강사는 저녁시간에 움직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임.
	프로그램의 강사진에게 전문성에 적합한 근무 여건이 제공되는가?	강사 1인당 수강생 수는 적정한가?	Y	5명으로 강의를 지원하기에 적은 숫자가 집중적으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소규모로 적정함.
	프로그램의 강사진에게 전문성에 적합한 근무 여건이 제공되는가?	휴게 및 휴식 여건은 적절한가?	Y	가정집에서 강좌를 배달해서 하다 보니 소요시간 2시간동안 강의진행을 하고, 별도의 휴게 및 휴식은 마련되고 있지 않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접근성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접근이 쉬운가?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가?	Y	구청소식지, 홈페이지, 동사무소, 아파트 게시판 등 관내 다양한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함. 그럼에도 여성은 정보 접근이 있지만, 남성의 관심을 유도할 만큼의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차별화가 없었음.
		쉽게 눈에 띄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전달되는가?	Y	수년간 강좌가 마련되어 진행하다보니 여성에게는 눈에 띄 수 있지만, 남성에게는 특화된 내용으로 보이지 않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전달되는가?	Y	여성 중에서도 기혼여성, 그중에서도 비경제활동영역에 있는 여성들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며, 1인가구, 싱글여성,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노력은 하지만 실제 쉽게 정보 접근을 하지 못함. 이것은 게시내용의 위치나 장소에서의 접근보다는 내용적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의 신청·접수는 용이한가?	프로그램 이용자의 성별·연령별 및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는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지역정보화 교육의 수혜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초교육과정에서 더 많이 분포하는 사례를 참조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정보화 교육에 뒤늦게 참여하거나 뒤쳐져 있을 수 있음. 여성의 가사와 돌봄 노동으로 인해 육아세대와 중년여성의 일부가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것이지, 실제 모든 여성의 접근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인터넷 신청뿐만 아니라 배달강좌제를 경로당에서도 여성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접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 신청·접수에 필요한 적절한 안내가 제공되는가?	Y	홈페이지를 통한 자세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홈페이지를 접근하지 않을 때의 대체홍보는 동사무소 또는 구청소식지 배포시 참고할 수 있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교육비/이용료 부담 등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없는가?	교육비/이용료의 1인당 평균 수준은?		없음	교육비가 아닌 재료비 본인부담.
	해당 교육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비/이용료가 책정되었는가?		해당없음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비/이용료 지원이 있는가?		해당없음	
성별 역할로 인해 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없는가?	교육 시간대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Y	주로 평일 오전시간에 교육시간대 비중이 많음.
	일시 돌봄 지원(연계 또는 정보 제공) 등의 조치가 취해져 있는가?		해당없음	육아세대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배달강좌제를 할 경우 아이들을 별도로 돌보지 않으면서 프로그램 할 경우, 아이를 돌보면서 강의를 하는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 있음. 돌봄매니저를 보조인력으로 배치해볼 수 있도록 신청접수란 체크와 프로그램 계획시 고려하는 것도 필요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 기회 접근의 제약 요소가 없는가?	교육 장소가 보행 및 대중교통 접근 가능 지역에 위치하는가?		Y	참여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강사가 파견되는 사업으로, 일일이 찾아가야 함.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경우, 재료비와 강의 진행 준비물 등을 갖고 방문할 때 자가용 선호가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하면 강사비 지급시 교통비 고려도 필요함.
	진입부에 장애인과 유모차의 통행을 고려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가?		해당없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든' 주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가?	프로그램은 주민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Y	주민 중 기혼여성(주부 중심)의 프로그램이 가장 많음. 대덕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1인가구, 직장인, 여성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지 않지만, 오래전부터 고정 강사진이 있기에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전체적인 배달강좌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 정원은 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되는가?	Y	
		성별 분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예: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제과제빵, 반찬 / 남성 취창업 프로그램-제도, 목공)은 개설되어 있지 않은가?	개설되어 있음	기혼여성(주부)중심의 프로그램이 대다수 배달강좌제로 요청되기 때문에 성별 역할 분리의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음.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대가 '모든' 주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가?	취업자/비취업자의 이용 가능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Y	수강생이 모인 곳에 찾아가는 방식의 배달강좌는 오전오후 낮 시간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 대부분 집 공간에서 모이기 때문에 밤시간 모이기는 불편

④ 모니터링 결과

①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정책개선 내용으로 5인 이상의 구민이 배달강좌를 신청하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강사를 파견하고, 신청에 의한 사업 수행임을 명시하였지만 실제 표면적이거나 절차적으로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 것임. 성인지성을 고려한 강의 내용과 질적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재검토 되어 반영될 필요가 있음.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배달강좌제의 강의내용 순환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강의와 계층 참여 유도, 기혼 여성(주부)을 넘어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1인가구, 직장여성 등 여성 내부의 차이를 고려한 교육지원방식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함.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각각 주체별 배달강좌제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민관협치를 통한 통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②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① 배달강좌제의 수요자 내부의 차이를 고려한(여성 내부의 차이, 여건, 현실) 강좌 마련 및 접근방안 유연성 발휘 필요.(예. 여성노인의 배달강좌 욕구 및 찾아가는 경로당 배달강좌제, 대덕구 내 청년층의 발굴과 네트워크를 위한 취업, 창업 연계한 강좌 마련)
- ② 현재 기혼 여성 중 육아세대 여성의 배달강좌제 신청시 보육돌보미 보조강사 파견여부 검토
- ③ 배달강좌제 평가 및 모니터 등 민관협치를 통한 주체별 협력으로 발전방안 모색
- ④ 대덕학, 생태학, 도시농업 등 특화된 교육내용 배치시 성인지교육 의무이수 마련
- ⑤ 배달강좌제 강사의 일정 기간 강의 이후 신규 강사 및 새로운 교육내용 마련 순환시스템 제안

제4절 지킴이사업7)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업 분야	학교지킴이사업(꿈나무지킴이운영)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6월11일(수) /7월2일(수)
모니터링 장소	A초등학교/B초등학교/대전C학교
인터뷰 대상자	지킴이 각각1인/지킴이 2인
참고자료	2014년도 꿈나무지킴이 운영계획
작성자	강 전 희

1] 사업 개요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학생생활지도 (꿈나무지킴이 운영)	초등교육과	꿈나무지킴이 운영 계획 [시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738(2013.0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특수학교 147교 · 295명(1교 1~3명씩 배치) · 만60세 이상 전직공무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으로 초등학생 지도 및 선도 업무가 가능한 자 * 한국노인개발원 중부지역본부에서 참가자 모집, 홍보 	295명 (여성8명)	1,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전과' 집행유예 기록을 가진 신청자 선발 제외 대상화 · (노인인력개발원)여성 꿈나무지킴이 인력풀 확대(여성 노인의 고급 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보이는 각종 사업체에 홍보 강화) · 집행유예 기록을 가진 신청자 제외되는지 모니터링 실시

7) 지킴이 분야 모니터링 활동가 4인은 꿈나무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사업에 대해 개인별로 보고서를 작성함.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등으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 선정(세출 예산서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컨설팅 1회 진행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관련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분석 내용 보강 ⇒ 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차이 본문에 반영됨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음. - 배움터 지킴이 선발시 성폭력 관련 집행유예의 기록을 가진 신청자는 제외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여성노인의 인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4~5학년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꿈나무 지킴이를 배치 하는 것을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여성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체에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특성 분석과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 결과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 성인지예산서 작성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 평등 조치사항 중 여성노인의 인력참여를 꿈나무 지킴이 여성비율이라는 성과목표로 반영됨.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 (노인인력개발원)에 여성 인력풀 확대 관련 조치를 취했나	Y	2014년도 꿈나무지킴이 운영계획에 있는 '선정 시 유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음.
	· '성폭력 전과' 집행유예 기록을 가진 신청자 선발 제외 대상화하는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나	Y	
	· 지킴이 선발과정에서 집행유예 기록관련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나	Y	

㉞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위상	'안전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추진체계에 지킴이 활동이 연계되어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구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3월에 실시하는 발대식 때 지침서 배부 및 교육실시	학생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사항의 활동내용이 지킴이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에 의지가 보임. 그러나 다양하면서 질적향상을 요하는 교육이 요구됨.
		지킴이 활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의지가 지침 등으로 표명되어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학교 상담기관, 지역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역 사회의 여타 활동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증빙자료미흡	· 학교폭력이나 상담의 필요성을 있을 경우는 생활지도교사 혹은 위센터에 연계하지만 사안이 거의 없었음.
	지킴이 활동이 학교 상담기관, 지역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의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는가?	증빙자료미흡	
	지킴이 활동이 학교 상담기관, 지역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증빙자료미흡	
	학교 안전 및 지킴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수렴하는 장치가 있는가?	학교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킴이 활동에 반영되어 있는가?	·	· 꿈나무지킴이는 주로 교내에서 활동하므로 학교 밖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장치의 필요성을 못 느낌. · 주민들도 지킴이에 대한 요구는 거의 없는 편임.
(반영되어 있다면) 어떤 장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수렴되는가?		·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선발	지킴이 모집과 관련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지킴이 활동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는가?	Y	인터넷과 노인인력개발원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었는가?	Y	
		홍보 내용은 쉽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는가?	Y	홍보내용은 어려움이 없었다고 함.
	지킴이 선정위원회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지킴이 선발을 위한 관련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학교관계자: 교장.교감선생님, 교무선생님 등
	지킴이 선정위원회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전문성의 측면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은 적절한가?	.	2014년도 꿈나무지킴이 운영계획의 '선정방법'에 위원회구성 내용을 지키지는 않음.
		선정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	남녀구분 없이 학교관계자로 구성함.
	지킴이 선발 기준은 적정한가?	지킴이 선발 기준이 '안전한 학교'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적절함	지킴이가 계셔서 학교선생님들은 만족함.
		지킴이 선발 기준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확대하길 바람.	자원봉사자로서의 일자리창출로 적합하다고 사료됨.
	현재의 자격 요건은 직무 관련 필요조건인가?	지킴이 선정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 가운데 특정 성 또는 계층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N	특수학교(지체장애아)경우는 돌발행동의 응급대처가 요구되며, 교탈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수시로 순찰을 해야함. 여성의 경우 위험할 수도 있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여성지킴이가 필요함. 특수학교는 여성지킴이를 포함한 3인이 요구됨.
		불필요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사업 수혜에 제한이 있지는 않은가?	N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직무	지킴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가?	학교폭력 예방,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과 같은 지킴이 활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가? 지킴이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안전 문제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가?	. 따로 교육받는 것은 없음.(문서나 공문으로 충분) . 성폭력예방교육은 학교선생님과 함께 받음.	발대식 이후 교육은 현재까지 없었음.
	지킴이 배치와 근무 여건은 적절한가?	지킴이로서의 업무가 노인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배되어 있는가?	Y	A초는 1인 배치로 인해 화장실이용이나 식사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불편함을 호소함. 학교정원에 관계없이 최소2인 보강이 요구됨. 초등학교의 고학년 여학생은 몸의 변화에 예민하여 지도에 불편함이 있어 1인은 여성으로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함.
	지킴이 배치와 근무 여건은 적절한가?	노동 강도나 근로조건 등에서 특정 성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상황별, 대상별 다를 수 있음	특수학교의 경우는 여성이 힘들 수도 있음. 그러나 일반 학교는 여성이 활동하기에 어려운 점은 발견되지 않음.
	지킴이 역할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처리 창구가 있는가?	고충처리 창구가 상시적으로 열려있는가? (상시적으로 열려 있지 않다면) 다른 형태의 유사 장치가 존재하는가? 접수된 고충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학생생활지도교사에게 연계함.	활동하는 것은 비교적 편리하며, 건의사항을 교무실에 보고하면 잘 들어주시는 편임.
	휴게 공간 또는 관련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킴이들이 업무를 준비.마감하고 필요한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제공되는가?	Y (편백나무)	A초 : 휴게공간의 물품은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나 지킴이1인 배치로 쉴 시간이 없어서 공간 활용이 안 되고 있음.
업무 준비와 휴식 등에 필요한 관련 물품들은 적절하게 지원되는가?		Y	A초 물품지원 : 조끼와 모자, 호루라기 등을 개인이 직접 구입하고 있음. →각 학교마다 운영비 예산 점검이 요구됨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p>활동일지 작성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하는가?</p> <p>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는가?</p> <p>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적극적인 지킴이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여겨지는 않는가?</p>	N	출근부작성, 지킴이활동일지 및 학교출입자 기록 작성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편함이 없다고 함. 외부인에 의한 폭력사건으로 학교출입자 기록은 배움터지킴이도 작성해야한다고 사료됨.

4] 모니터링 결과

①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킴이 선발 시 조치사항은 개선안이 반영되어 2014년 운영계획에서 실행하고 있음. · 여성노인의 인력참여의 성과 목표는 구체적이지 않아서 실행이 어려움. 2014년 운영계획에 '1명 이상의 여성 지킴이가 채용될 수 있도록 협조'로 표기되어 있음. · 여성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체에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조치사항은 너무 포괄적이며, 모호함.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요구됨(예: 선정대상의 인권영역의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폭을 확대하여 여성노인의 인력참여 비율증대 노력이 필요함)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킴이 선발 시 조치사항은 개선안이 반영되어 2014년 운영계획에서 실행하고 있음. · 여성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체에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조치사항은 너무 포괄적이며, 모호함으로 성가라고 보기어려움.

㉞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④ 꿈나무지킴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해 제안된 개선안은 비교적 반영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개선안이 환류 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행해야함. 사업 주체(교육공무원)들의 성인지감수성의 인식전환과 환류의 의지가 요구됨.

■ 참고자료

* 꿈나무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의 차이 * (2014운영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함)

	꿈나무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비고
대상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고등학교	
활동일지	작성	작성금지	
활동년수	2년활동 후 1년 쉬	계속	꿈나무지킴이와 동일하길 요구됨
1인 활동비	38,000원	38,000원	
활동일		230일	
명찰제작 패용	실시	실시안함	
위촉절차	학교장이 자원봉사자로 위촉(채용·계약아님)	학교장이 자원봉사자로 위촉(채용·계약 아님)	
운영지원비	꿈나무지킴이 여비와 용품구입 등에 사용하고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활동비로 사용 할 수 있음.	여비(워크숍),학생보호인력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명찰, 장갑, 모자조끼, 활동복구입) 등에 사용하고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음.	

→ 꿈나무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의 부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음.

*** 결과 및 모니터 의견**

- ① 교육과정이 현재는 년1회 실시하고 있으나, 분기별 내지는 년2회 실시하여 안전교육(학생의 위기관리 등), 성인지감수성교육, 청소년의 연령별로 발달특성에 따른 지킴이역할 교육 등이 필요함.
- ② 대부분의 학교는 학부모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환경이므로 학교규모에 상관없이 최소2인이 근무해야하며, 그중에 1인은 여학생의 지도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여성으로 채용되어야함.
- ③ A초는 대전의 외곽에 위치한곳으로 지킴이분들이 사시는 곳과 지킴이 활동지역의 불일치로 이동시간 소요에 따른 불편함이 있음. 원하는 지역을 신청은 하지만 신청자가 많을 시는 2차 지역으로 배정됨. 따라서 대전의 외곽에 위치한 곳의 지킴이는 가능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안배가 요구됨.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업 분야	학교지킴이사업(꿈나무지킴이운영)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6월 11일(수) 11:00~ / 7월 2일(수)15:00~
모니터링 장소	B초등학교, A초등학교, 대전C학교
인터뷰 대상자	꿈나무 지킴이, 학교 교사
참고자료	2012~2014 꿈나무지킴이 운영 계획
작성자	김 순 영

1] 사업 개요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학생생활지도 (꿈나무지킴이 운영)	초등교육과	꿈나무지킴이 운영 계획 [시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738(2013.0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특수학교 147교 · 295명(1교 1~3명씩 배치) · 만60세 이상 전직공무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으로 초등학생 지도 및 선도 업무가 가능한 자 * 한국노인개발원 중부지역본부에서 참가자 모집, 홍보 	295명 (여성8명)	1,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전과' 집행유예 기록을 가진 신청자 선발 제외 대상화 · (노인인력개발원)여성 꿈나무지킴이 인력풀 확대(여성 노인의 고급 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보이는 각종 사업체에 홍보 강화) · 집행유예 기록을 가진 신청자 제외되는지 모니터링 실시

②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었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 선정(세출예산서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컨설팅 1회 진행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관련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분석 내용 보강 ⇒ 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차이분문에 반영됨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p>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터 지킴이 선발시 성폭력 관련 집행유예의 기록을 가진 신청자는 제외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여성노인의 인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4~5학년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꿈나무 지킴이를 배치하는 것을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치사항임. - 여성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체에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특성 분석과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 결과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 평등 조치사항 중 여성노인의 인력참여를 꿈나무 지킴이 여성비율이라는 성과목표로 반영됨.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①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 (노인인력개발원)에 여성 인력풀 확대 관련 조치를 취했나	Y	배재대와 새일센터에 채용공고를 내었음
	· '성폭력 전과' 집행유예 기록을 가진 신청자 선발 제외 대상화하는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나	Y	채용 된 이후에 관할경찰서에서 성폭력에 관한 점검을 하고 각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지킴이 선발과정에서 집행유예 기록관련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나	Y	

㉞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위상	'안전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추진체계에 지킴이 활동이 연계되어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구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Y	꿈나무지킴이 활동의 추진배경과 기본 목적이 안전한 학교, 폭력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임
		지킴이 활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의지가 지침 등으로 표명되어 있는가?	Y	
	지킴이 활동이 학교 상담기관, 지역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역사회의 여타 활동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Y	지킴이 활동은 단순히 아이들의 출입관리, 학교 방문객의 기록 및 점검사항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 보고하고 학교에서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음 단, 지킴이들이 직접 관여는 하고 있지 않음.
	지킴이 활동이 학교 상담기관, 지역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의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Y	
	학교 안전 및 지킴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수렴하는 장치가 있는가?	학교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킴이 활동에 반영되어 있는가?	N	· 시골학교의 경우 주민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매우 멀리에 거주하고 있어서 지킴이에 대한 요구는 거의 없는 편임. · 또한 학교 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므로 외부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 함.
		(반영되어 있다면) 어떤 장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수렴되는가?	N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N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선발	지킴이 모집과 관련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지킴이 활동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는가?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인력개발원(가양동 위치/ B초) · 서구노인인력개발원(A초) · 한국노인인력개발원(C학교) 등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인터넷에 구인모집광고를 내어서 접수하고 있음 · 채용되신 분들은 응모하기에 어려운 점은 없었다고 함.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었는가?	Y	
		홍보 내용은 쉽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는가?	Y	
	지킴이 선정위원회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지킴이 선발을 위한 관련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공히 학교관계자(교장, 실장, 교무선생님 등)로 구성됨.
	지킴이 선정위원회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전문성의 측면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은 적절한가?	Y	· 남녀의 구분없이 학교관계자로 구성되므로 전문성은 인정되나 여성비율은 따질 필요 없음.
		선정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지킴이 선발 기준은 적절한가?	지킴이 선발 기준이 '안전한 학교'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교 모두 회사원출신, C학교의 2분중 1분은 군인출신이며 회사원출신들은 경비, 임업훈련원 등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 · 선정대상자의 기준처럼 퇴직교원, 상담사, 복지사 등은 아니지만 회사를 다녔던 경험으로 초등학생 지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음. · 학교지킴이 분들은 선정이 되는데 이러한 자격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
지킴이 선발 기준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로 적합하다고 봄. ·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현재의 자격 요건은 직무 관련 필요 조건인가?	지킴이 선정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 가운데 특정 성 또는 계층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가운데 특정 성에 불리한 점은 없었지만 인식의 문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봄. → B·A초 : 시골학교 특성상 아이들,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문으로만 다니지 않아서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지킴이를 경비의 특성으로 보기 때문에 여성근무자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봄. → C학교 : 장애특성상 자해·폭력·교탈 등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음. 선발의 우선기준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체력이 관건임. → 이에 따라 여성인력이 채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봄.
		불필요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사업 수혜에 제한이 있는가?	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킴이 선정에 제외되어야 할 사람으로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있는데 특별히 채용하지 않아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
직무	지킴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가?	학교폭력 예방,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과 같은 지킴이 활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가?	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의 경험상 하루 일정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성교육, 학생교육, 학교근무현황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되나 올해는 3학교 모두 발대식 이후 교육이 7월 초까지 없었다고 함. · 문서나 공문으로 교육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학교의 교사들이 성폭력예방교육, 기타 교육을 받을 때 같이 참석하여 받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은 받은 기억이 없는 것으로 인터뷰 됨.
		지킴이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안전 문제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가?	N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지킴이 배치와 근무 여건은 적절한가?	지킴이로서의 업무가 노인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배되어 있는가?	Y	잡다하게 신경쓸 일들은 많으나 몸은 힘들 것 없고 노인 일자리로서는 좋다고 하심.
	지킴이 배치와 근무 여건은 적절한가?	노동 강도나 근로조건 등에서 특정 성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Y	대부분 일하는 것이 노인에게 맞다고 생각하며 여성도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지킴이 역할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 처리 창구가 있는가?	고충처리 창구가 상시적으로 열려있는가?	Y	지내는 것은 편하고 어려운 점들을 교무실에 보고하면 학교에서 담당교사를 통해 건의사항은 잘 들어주시는 편임.
		(상시적으로 열려 있지는 않다면) 다른 형태의 유사 장치가 존재하는가?		
		접수된 고충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휴게 공간 또는 관련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킴이들이 업무를 준비.마감하고 필요한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제공되는가?	Y	학교측, 노인회에서 물품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함. 단, A초의 경우 조끼와 모자, 호루라기 등을 개인이 직접 구입하고 있었음.
		업무 준비와 휴식 등에 필요한 관련 물품들은 적절하게 지원되는가?	Y	
활동일지 작성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하는가?	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는가?	N	출근부작성, 지킴이 활동일지, 학교출입자 기록 등 매일 하는 일에 발생하는 것만 기록하면 되므로 일지 쓰는 것은 큰 문제 없음.	
	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적극적인 지킴이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여겨지지 않는가?	N		

④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총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전과나 집행유예 기록을 가진 신청자는 신청시에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채용된 이후에 학교에서 서류로 제출을 요구하므로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음. · 여성인력풀의 확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실제로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노인인력개발원에 여성구직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 · 지킴이의 하는 일과 목적을 학교에서는 경비로 인식하는 것과 교육청 및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일탈행위의 차단으로 생각한다면 여성노인의 일자리로 자리잡기는 힘든 상황일 것임.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봄. · 성폭력전과, 집행유예 기록을 점검하는 성평등의 방향을 개선한다기보다는 아동과 함께 하는 봉사요원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봄.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5명의 지킴이 중 8명이 여성이라고 한다면 전년도와의 비교가 되지도 않으며 성과로 보기는 숫자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봄.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① 근무하다가 시간이 나면 집에도 다녀오고 일도 볼 수 있는데 왜 지역사람을 안쓰고 외부인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는데 시골학교 특성상 외부인이 지킴이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고 공평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 학교지킴이가 하는 일을 학부모와 인근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봄.
- ② 구직 시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해야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선정대상의 요건으로 볼 때 선정요건을 갖춘 여성노인구직자들이나 여성들이 하는 일이 주로 단순일자리이거나 일상에서 보살핌의 노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여성구직자들이 일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는 노인일자리라고 생각됨.
- ③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학교폭력예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학교에서 인지하는 지킴이의 역할이 아동의 등하교 지도와 경비의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에 한한 일자리로서의 개념이라면 통상적인 생각으로 여성이 근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노인일자리라고 생각됨.
 - 전체적으로 출입관리, 문제중심과 안전사고 조절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등하교시의 아동의 문제(예: 복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를 신경 쓰는 생활관리의 상황이 아닌 단순 등하교 지도의 근무, 취약지역 순찰, 문제 발생시에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업무.
 - 학교 내 근무의 성격과 성인지관점으로서 여성일자리의 문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함.
- ④ 지킴이가 두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초등학교의 특성상 외부인, 학부모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1사람만 배치되어있으므로
 - 식사 시, 심지어 화장실에 가더라도 자리를 비우는 문제로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음.
 - 잠시라도 다른 일을 보다보면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을 꼼꼼히 체크할 수 없음.
(실제로 초등학교를 방문해보면 방문객이 그냥 드나들어도 지킴이가 알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매우 많음)
 - 이에 따라 쉴 공간은 잘 만들어져 있으나 제대로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
 - 두사람의 학교지킴이가 배치될 경우 그중에 한 사람이 여성으로 배치되어 채용된다면 3), 4)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의 일상지도의 도움도 가능하다고 봄.
 - 성별이 다른 지킴이가 같이 있으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학교의 아이들이나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성과 여성의 지킴이가 배치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봄.
 - 현재도 지킴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2년 일을 하면 1년을 쉬고 다시 일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도 좋다고 봄.

- ⑤ 보수교육과정이 연 1회로는 마땅하지 않으며 학기 초에 여러 시간을 할애하여서 다양한 교육(성평등, 학생의 위기관리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지킴이를 처음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작하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 선정된 이후, 발대식 이전에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봄. 발대식 이전에 교육이 어렵다면 근무 초기에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서 오후나 야간강좌라도 개설하여(오후 3시 이후에는 근무가 끝나므로) 안전 및 성평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학교에서 교사들과 같이 교육을 받거나 공문, 서류로 교육을 받는다고는 하나 교사들은 매년 연수 때마다, 수시로 교육을 받지만 지킴이 분들은 익숙지 않은 내용이므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됨.

- ⑥ C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의 특성상 학생들의 돌방행동이 많거나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한 학교에서 근무를 한다면 차라리 배움터지킴이처럼 노인인력개발원보다는 소방서, 경찰서, 군인 등에 공문을 보내어 퇴직하시는 분들을 지킴이로 채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함.
 - 학교와 지킴이 선생님들을 인터뷰한 결과 지킴이들은 일을 하실 만 하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 염려하는 문제를 들으니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고 봄.

- ⑦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급여가 적다는 것을 토로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일터로서의 지킴이이지만 봉사자의 개념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 ⑧ 꿈나무지킴이 선정기준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데 수급권자가 지킴이를 할 수 없다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상식적으로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듦.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에 배치되는 두명 중에 한명은 저소득층 일반인 중에 할 수 있도록 지침까지 되어있는데 꿈나무지킴이가 수급자를 제외시킨 것은 특정계층을 배제시키는 결과라고 생각됨.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학교지킴이사업(꿈나무지킴이운영)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6월 17일 오후 2시 ~ 4시 2014년 6월 25일 오후 4시 ~ 4시 30분 / 7월 4일 2시 ~ 2시 30분
모니터링 장소	- 대전 00초등학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
모니터링 방법	- 00 초등학교 방문면접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화 인터뷰
인터뷰 대상자	- 00 초등학교 꿈나무 지킴이 사업 담당 교사 - 00 초등학교 꿈나무 지킴이 봉사자 2명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 일자리 관련 지킴이 사업 담당자
인터뷰 학교 일반 현황	. 학교 현황 : 학급수 : 20학급 / 학생수 360명 . 주변환경 : 학교앞 6차선 대로 / 아파트 거주 학생 등곳길 도심 철길 통과 학교 주변 주택가
참고자료	- 2013 학년도 꿈나무지킴이 운영 계획 (대전광역시 교육청) - 인터넷 00학교 홈페이지 - 배움터 지킴이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jikimi2008)
작성자	안 명 희

1] 사업 개요 (2013년 기준)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천원)	성 평등 조치사항
학생생활지도 (꿈나무지킴이 운영)	초등교육과	꿈나무지킴이 운영 계획 [시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738(2013.0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특수학교 147교 · 295명(1교 1~3명씩 배치) · 만60세 이상 전직공무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으로 초등학생 지도 및 선도 업무가 가능한 자 * 한국노인개발원 중부지역본부에서 참가자 모집, 홍보 	295명 (여성8명)	2,170,966 (교육청 1,229,627 시청 941,3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전과' 집행유예 기록을 가진 신청자 선발 제외 대상화 · (노인인력개발원)여성 꿈나무지킴이 인력풀 확대(여성 노인의 고급 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보이는 각종 사업체에 홍보 강화) · 집행유예 기록을 가진 신청자 제외되는지 모니터링 실시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 선정(세출예산서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컨설팅 1회 진행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관련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분석 내용 보강 ⇒ 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차이본문에 반영됨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p>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터 지킴이 선발시 성폭력 관련 집행유예의 기록을 가진 신청자는 제외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여성노인의 인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4~5학년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꿈나무 지킴이를 배치하는 것을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여성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체에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특성 분석과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 결과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 평등 조치사항 중 여성노인의 인력참여를 꿈나무 지킴이 여성비율이라는 성과목표로 반영됨.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 (노인인력개발원)에 여성 인력풀 확대 관련 조치를 취했나	Y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 인터뷰 결과 교육청에서 여성 노인에 대한 홍보를 하게 협조 요청되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배재대 새일센터에 홍보한바 있음.
	· '성폭력 전과' 집행유예 기록을 가진 신청자 선발 제외 대상화하는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나	Y	· 최종 선정시 각 학교에서 하고 있음.
	· 지킴이 선발과정에서 집행유예 기록관련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나	Y	· 최종 선정시 각 학교에서 하고 있음.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및 모니터 의견
위상	'안전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추진체계에 지킴이 활동이 연계되어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구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에 명시되어 있음. · 실제 현장 활동과 차이가 있음.
		지킴이 활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의지가 지침 등으로 표명되어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학교 상담기관, 지역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역사회 여타 활동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에 명시되어 있음. · 실제 현장 활동과 차이가 있음.

②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및 모니터 의견
위상	지킴이 활동이 학교 상담기관, 지역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의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는가?	· 없음 · 지킴이 활동의 역할이 타 조직이나 기관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문제 발생시 교사나 교장선생님 회의실 전달 정도에 연계가 있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 없음 · 지킴이 활동의 역할이 타 기관이나 조직과 연계될 만큼의 상담이나 폭력 등을 직접적으로 지도하거나 관련할 정도의 역할이 부여되지 않았음.
	학교 안전 및 지킴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수렴하는 장치가 있는가?	학교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킴이 활동에 반영되어 있는가?	· 없음 · 1년에 2차례의 학부형 및 학생 대상 설문조사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이는 대부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었음.
		(반영되어 있다면) 어떤 장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수렴되는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 없음 · 지역의 요구가 있다면 교장선생님이나 교사의 전달로 이뤄지는 형태이나 요구나 의견수렴이 거의 없음. · 없음 ·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으며 개선 계획은 없었음.
선발	지킴이 모집과 관련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지킴이 활동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는가?	· 지킴이 사업의 홍보 및 접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개발원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었음.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었는가?	· 홈페이지가 주로 활용됨.
		홍보 내용은 쉽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는가?	· 내용은 전달됨.
	지킴이 선정위원회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지킴이 선발을 위한 관련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있음 · 교사2인, 학부모2인, 지역주민센터동장, 지역지구대소장 등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절한 구성이라 생각됨 .

영역	지표		결과 및 모니터 의견
선발	지킴이 선정위원회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전문성의 측면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은 적절한가?	·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의 안전 관련 기관과 학부모 교사로 이뤄져 적절한 구성이라 생각 됨.
		선정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 비율이 높고 참여하는 학부모 역시 대부분 어머니들이 참석하여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임. 00 초등학교의 경우 전원 여성이었음.
	지킴이 선발 기준은 적정한가?	지킴이 선발 기준이 '안전한 학교'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 선발 기준은 100점 기준으로 경제상황(60%)에 따라 점수를 나누고, 희망학교에 따라 개발원에서 담당하여 선발하여 대상 학교에 추천, 학교에서는 역량평가(40%)후 선정, 경제상황은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으로 낮은 순으로 점수를 가산하고, 대상 학교와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학교에 추천함. 역량평가(40%)는 학교 선정위원회의 면접으로 진행되며, 사업 이해도, 전문성, 건강수준 등으로 점수화하여 선발하고 있음. · 사전 선별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창출 측면이 상당부분 고려됨.
		지킴이 선발 기준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 사전 개발원 선별에서 경제상황(60%)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납입기준이 우선되어 저소득층 진입을 우선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에 적절함.
	현재의 자격 요건은 직무 관련 필요 조건인가?	지킴이 선정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 가운데 특정 성 또는 계층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 지킴이 자격요건은 60세 이상의 퇴직교원, 제대군인, 전직 경찰,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등으로 요건으로 되어 있으나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이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하였으며, 기존의 자격요건은 노인 일자리와 지킴이 사업을 연계하는데 그 자격이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임.
		불필요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사업 수혜에 제한이 있지는 않은가?	· 60세 이상의 퇴직교원, 제대군인, 전직 경찰,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라는 자격 요건은 노인 일자리 참가자들에게 적합한 요건은 아니라는 의견이며, 특히 여성노인에게는 지원에 있어 많은 제약임. 현재 개발원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특별히 자격 요건에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추천하고 있으며, 학교 또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영역	지표		결과 및 모니터 의견
직무	지킴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가?	학교폭력 예방,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과 같은 지킴이 활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가?	· 1년에 2회정도 워크숍 형태의 교육이 진행되며 이는 지킴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역할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음.
		지킴이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안전 문제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가?	· 정기적 교육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임.
	지킴이 배치와 근무 여건은 적절한가?	지킴이로서의 업무가 노인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배되어 있는가?	
직무	지킴이 배치와 근무 여건은 적절한가?	노동 강도나 근로조건 등에서 특정 성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 없음 · 학교에는 2인의 지킴이가 배치되어 있고, 교대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강도나 조건면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음.
	지킴이 역할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처리 창구가 있는가?	고충처리 창구가 상시적으로 열려있는가?	· 없음.
		(상시적으로 열려 있지는 않다면) 다른 형태의 유사 장치가 존재하는가?	· 별도의 장치는 없었으며, 애로사항이 있으면 담당교사에게 전달하거나 개발원에 연락하기도 함. 크게 반영되는 것은 아님.
		접수된 고충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 00 학교의 경우 크게 개선되어질 고충 처리는 없었으며, 활동 지킴이 입장에서 봉사라는 의미와 위촉관계(?) 입장에서 크게 고충을 호소하지 않음
	휴게 공간 또는 관련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킴이들이 업무를 준비.마감하고 필요한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제공되는가?	· 00 학교의 경우 교문 옆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두명이 활동하기에 약간 협소함.
업무 준비와 휴식 등에 필요한 관련 물품들은 적절하게 지원되는가?		· 별도의 휴식 물품(소파)등은 없었으며. 활동을 위한 일지, 필기구 등이 지원됨.	

영역	지표	결과 및 모니터 의견
	활동일지 작성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하는가?	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는가? · 없었음.
		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적극적인 지킴이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여겨지지 않는가? · 없었음.

4]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 '성폭력 전과' 집행유예 기록을 가진 신청자 선발 제외 대상화 '성폭력 전과' 집행유예 기록을 가진 신청자 선발 제외 대상화 하는 것은 타당하게 뒷받침되어 추진되고 있음.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 성평등한 개선 방안으로 여성 꿈나무 지킴이 인력풀 확대를 위하여 고급 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체에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크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음. 단순 홍보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현실을 파악하여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 전과' 집행유예 기록을 가진 신청자 선발 제외 대상화 '성폭력 전과' 집행유예 기록을 가진 신청자 선발 제외 대상화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임.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 성과 미비함.

㉞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① 꿈나무 지킴이 사업의 경우 학교 안전 활동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두가지 정책이 연계되어 있음.
- ② 학교 안전 정책과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연계되려면 현실에 맞게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③ 대상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60세 이상의 퇴직교원, 제대군인 및 경찰, 전직공무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을 명시한 것은 큰 의미가 없음.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모집 선발시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에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대상 자격요건을 가진 노인의 경우 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선발 대상에 들지 않은 노인이 대부분이며 또한 지킴이의 활동 역할은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지역 교내 순회지도 등이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담 및 폭력예방 교육,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은 역할에서 상당부분 제외되는 상황임. 꿈나무 학교 현장에서도 자격 요건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서 요건에 구애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 할때도 크게 의미가 없음.
- ④ 여성 노인의 고급 인력풀을 확대하기 조치사항으로 여성 고급인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였으나, 사업 자체에 진입을 원하는 여성 노인 자체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명시된 대상요건에 부합하는 60세 이상 여성노인 대상자체나 활동욕구가 저조한 한 편임.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경제적 상황 순위에서 사전 선별 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하지 않음.
- ⑤ 사업에 규정되어 있는 역할과 요건이 너무 과대 확대 되어 있어 실제 활동에 맞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봄.
- ⑥ 신분에 있어서 봉사활동으로 위촉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 활동은 고용 관계로 볼 수 있어서 그에 따른 복리가 뒷받침 되어야 함.

■ 참고자료 : 학교 지킴이 관련 인터뷰 설문 내용(꿈나무)

▣ 방 법	전화 인터뷰
▣ 일 시	2014년 6월 27일 오후 4시 ~ 4시 30분 / 7월 4일 2시 ~ 2시 30분
▣ 대상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사 꿈나무 지킴이 사업 담당자
<p>1. 꿈나무 지킴이 관련하여 홍보는 어떻게 하는가? - 모집 시기가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로 공고를 낸다.</p> <p>2. 여성노인 참여를 위하여 별도의 홍보를 하는가? - 올해의 경우 배재대 새일센터에 홍보를 했다.</p> <p>3. 여성 노인이 몇분 정도 활동 하시는가? - 2개 학교 정도에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p> <p>4. 만약 여성이 선발된다면 예상되는 애로점은 무엇인가? - 꿈나무 지킴이의 경우 특별한 애로점은 없을 것 같다. - 간혹 학교에서 남성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p> <p>5. 여성이 지킴이 봉사로 활동한다면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좀더 세심하고 친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 봤다. - 위촉은 학교에서 하는데 학교에서 선호하거나 역량평가(면접)시 점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p> <p>6. 지킴이 사업을 포함해서 현재 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여성 참여자는 많은가? - 남성 참여자에 비해 많지 않다. 특히 지킴이 사업은 별로 많지 않다.</p> <p>7. 여성 참여가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는가? - 60세 이상 여성 노인 일자리 참여자 자체가 많지 않다. - 지킴이 사업의 경우 그리고 학교에 특성상 학력이라든지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른 것 같다. - 학교의 선호도도 있는 것 같다.</p>	

8. 선정대상에 부합하여 모집하는가?

- 꼭 그렇지는 않고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원래 만 60세 이상의 퇴직교원, 제대군인 및 경찰, 전직공무원 등 이 있지만, 그런 분들도 있고,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신청하실 수 있다. 선발기준에서 경제상황이 60%, 역량평가가 40% 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경제 상황을 볼 때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으로 점수를 배점한다.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

9. 성폭력 전과와 관련한 확인은 어떤식으로 이뤄지는가?

- 일단 학교 면접이 끝나고 채용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학교에서 하고 있다.

10. 활동하시는 지킴이 분들의 만족도 어떠한가?

- 다른 일자리에 비해 만족도가 높고 지원자도 많다. 최대 2년까지 참여할 수 있고 1년은 쉬고 다시 지원하게 되는데 1년 쉬는 사이에 다른 인력이 유입이 된다. 일자리로서 만족도도 높고 학교 봉사라는 점에서도 만족도가 높다.

■ 장 소	대전 중구 00 초등학교
■ 일 시	2014년 6월 17일 오후 2시 ~ 4시
■ 대상자	학교 담당직원 (교사) / 학교 지킴이 담당업무 경력 3년

1. 지킴이 사업(지킴이 봉사)가 학생들의 안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이 사업이 처음에는 자리를 못잡 고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본다. 지킴이로 오시는 자원봉사자 (?) 분들의 역할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몇 년전에는 방향이나 역할이 너무 모호했다.
- 최근 우리 학교의 경우를 보면 지킴이 선생님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마음들이 좋다. 역할에 대해서도 자리를 많이 잡았다고 본다. 우리학교의 경우 임대아파트에서 오는 학생들이 철길도 건너야 하는데, 일찍부터 아파트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오시고 주변 주택가에서 오는 아이들까지 돌면서 등교를 돕고 있다. 그리고 학교 앞이 4차선 대로변이라서 위험한데 많이 신경 쓰고 계신다. 아이들의 등하교와 방문관리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2. 지킴이 홍보 및 모집 선발에 있어서 여성을 고려하지는 않았는가?

- 모집에 있어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추천이 오면 그 중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발한다.
- 만약 여성 노인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성이라서 특별히 고려하거나 배재하지는 않는다.

3.만약 여성이 선발된다면 예상되는 애로점은 무엇인가?

- 특별한 애로점은 없을 것 같다.

-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인드와 본인의 역할을 꾸준히 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다.

4. 만약 여성이 선발된다면 더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남성이든 여성이든 장단점은 있는 것 같다.
- 남성 어르신의 경우 할아버지 같이 친근한 이미지가 있고 여성 어르신이라면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좀더 부드럽고 세심하지 않을까 싶다.
- 중요한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분의 인품과 마인드인 것 같다.

5. 학교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 배움터 지킴이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도 되었고, 많은 부분 도움이 된다.
- 특히 등하교 지도, 방문자 관리는

6. 선정 대상이 만 60세 이상의 퇴직 교원, 제대군인, 및 경찰, 전직공무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 전문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요건들이 지킴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가?

- 모집과 1차 선발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60%의 점수를 가지고 추천되어 온다.
우리 학교의 경우 현재 봉사하시는 근무자 2명이 모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역량평가(40%)를 할 때 면접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전문성 부분에서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나 인성, 성품 등을 많이 본다. 그런 요건이 지킴이 활동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오히려 전직으로 인한 고정된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품과 아이들에 대한 생각, 건강,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등이다.

7. 꿈나무 지킴이 관련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아이들 안전에 꿈나무 봉사자 선생님들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친근한 이미지이다. 봉사하시는 분들도 손녀 같은 느낌 이신 것 같다.
- 몇 년전까지는 2년 정도 한 학교에서 활동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년에 한번씩하고 2년까지 한다음 한해 쉬고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의 친밀성이라든지 역할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진다. 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한명은 2년을 남고 1명은 순환하든지 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안정성을 보장 했으면 학교 입장에서는 더 좋겠다.

장 소	대전 중구 00 초등학교
일 시	2014년 6월 17일 오후 2시 ~ 4시
대상자	지킴이 봉사자 / 올해 위촉

1. 지킴이 모집은 어디에서 정보를 알고 지원하게 되었는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에 공고가 나면 지원한다.
 - 지원은 집이 가까운 곳으로 일차로 하고, 몇 명이 같은 학교에 지원하면 면접에서 선정한다.
2. 주변에 지킴이 봉사를 하고 있는 여성은 있는가?
- 거의 보지 못했다. 1명 정도 본 것 같다.
3. 내가 하는 지킴이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아이들의 등하교시 안전지도가 우선 이다.
 -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 파악해서 관리하고, 등하교시 배회하는 아이들 있으면 지도하고, 특히 하교시 학교 운동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귀가지도도 한다.
 - 수업 시작하면 주면 순회도 하고 학교 밖에 주택가도 가끔 나가 볼 때도 있다.
4. 지금하고 있는 일을 여성이 한다면 어떤 점이 어려울 것 같은가?
-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다.
 - 힘으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 학기 초에 가끔 책상을 나르거나 할때 하기도 하지만 크게 힘이 드는 일은 없다.
5. 지킴이 사업(지킴이 봉사)가 학생들의 안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
 - 특히 우리 학교는 등하교시 위험요소가 좀 있어서 특히 저학년은 등하교 지도가 필요하고 방문자도 파악해야 하고 학교를 순회하다보면 운동장이나 주변에서 배회하는 아이들도 지도하고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
6. 배움터 지킴이가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 되는가?
- 사실 60 넘어서 일하기는 전문직이 아니면 어렵다. 다른 일보다 하는 일에 대한 보람도 있고, 건강하게 일할 수도 있고, 노인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저소득층부터 접수를 받고 있어서 가게 소득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고 본다.
7. 지금하고 있는 봉사가 만족스러운가? (역할, 기여도, 보수 등)
- 학교에서 일하니까 일단 좋다고 본다.
 - 사실 돈이나 대우만 보고 하는 건 아니다. 나도 손자 손녀가 있고 아이들이 예쁘니까 한다. 아이들 보면 즐겁고, 다른 일보다 육체적 피로도 덜하고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서 보람도 느낀다. 보수가 작아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다.

8. 학교에서 내 업무외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뭐 무리하거나 부당하게 시키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내 손자 손녀를 생각하면 책상도 날라 줄 수 있고, 운동장에 풀이 많거나 쓰레기가 있으면 줍는다. 그거는 꼭 시켜서라기보다, 어차피 학교 안에서 함께 일하는 처지에 뭔가 할 수 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든다.
- 그리고 어째든 계약을 해 줘서 일하는 처지다(쉽게 말해서 갑을 관계?). 그렇다 보니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지만 어떤 부분(쓰레기 줍기, 운동장 정리)은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업 분야	학교지킴이사업(꿈나무지킴이운영)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 6. 18, 23, 30
모니터링 장소	서구 00초등학교, 00학교(특수학교), 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회
인터뷰 대상자	각학교 배움터 지킴이 담당(생활부장) 배움터 지킴이(00초 2명, 00학교 2명) 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회(꿈나무지킴이 모집 및 선발 담당)
참고자료	2012 꿈나무지킴이 운영계획,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12.2.6) 2012학년도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2013 꿈나무 지킴이 운영 계획 2013학년도 배움터 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작성자	천 현 옥

1 사업 개요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학생생활지도 (꿈나무지킴이 운영)	초등교육과	꿈나무지킴이 운영 계획 [시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738(2013.0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특수학교 147교 . 295명(1교 1~3명씩 배치) . 만60세 이상 전직공무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으로 초등학생 지도 및 선도 업무가 가능한 자 * 한국노인개발원 중부지역본부에서 참가자 모집, 홍보 	295명 (여성8명)	1,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전과' 집행유예 기록을 가진 신청자 선발 제외 대상화 · (노인인력개발원)여성 꿈나무지킴이 인력풀 확대(여성 노인의 고급 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보이는 각종 사업체에 홍보 강화) · 집행유예 기록을 가진 신청자 제외되는지 모니터링 실시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 선정(세출예산서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컨설팅 1회 진행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관련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분석 내용 보강 ⇒ 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차이 본문에 반영됨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음. - 배움터 지킴이 선발시 성폭력 관련 집행유예의 기록을 가진 신청자는 제외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여성노인의 인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4~5학년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꿈나무 지킴이를 배치하는 것을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 여성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체에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특성 분석과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 결과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 성인지예산서 작성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 평등 조치사항 중 여성노인의 인력참여를 꿈나무 지킴이 여성비율이라는 성과목표로 반영됨.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 (노인인력개발원)에 여성 인력풀 확대 관련 조치를 취했나	Y	새일센터(경력단절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공고
	· '성폭력 전과' 집행유예 기록을 가진 신청자 선발 제외 대상화하는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나	Y	2013학년도 꿈나무 지킴이 운영계획 중 세부추진계획 4) 선정 시 유의사항
	· 지킴이 선발과정에서 집행유예 기록관련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나	Y	집행유예기록 확인함.

㉞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위상	'안전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추진체계에 지킴이 활동이 연계되어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구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중 추진배경 및 추진목적	추진배경 : 학교 내 폭력 사안의 지속적 발생으로 학교 내·외 안전망 구축필요 추진목적 :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가와의 연계지도 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킴이 활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의지가 지침 등으로 표명되어 있는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20조의 5	① 국·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지킴이 활동이 학교 상담기관, 지역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역 사회의 여타 활동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00초 : 없음 00특수학교 : 없음	지킴이 활동관련 꿈나무 지킴이 사업 담당 교사 재량으로 진행됨.
	지킴이 활동이 학교 상담기관, 지역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의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예방적 훈계 등으로 마무리 될 수 있어 아직 필요성 인지못함	초등학교는 처벌보다는 훈계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수위의 내용이 많아 지킴이들의 연계는 대부분 담당교사임.
학교 안전 및 지킴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수렴하는 장치가 있는가?	학교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킴이 활동에 반영되어 있는가?	반영됨.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반영되어 있다면) 어떤 장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수렴되는가?	반영됨.	00특수학교 : 특수학교로 아이들의 통학이 잦아 지킴이들이 학부모를 대할 수 있는 경험이 잦으며 이에 따라 의견이나 요구를 수렴할 수 있고, 이를 담당교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시정된 사례가 있음. 예) 인지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교출 행위가 잦아 자바라게이트를 잠금장치 해놓음으로써 수업시간 중엔 가급적 외부인을 한곳에서 통제할 수 있음.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반영안됨.	00초 : 윤리부장님께 전달되어지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아직 그런 요구를 들어본 적 없음.
선발	지킴이 모집과 관련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지킴이 활동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짐.	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회에서 일괄처리하므로 홍보담당자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홍보가 이루어짐.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었는가?	홈페이지, TV등	홈페이지 및 TV등에서 홍보가 이루어져 응시율이 높음.
		홍보 내용은 쉽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는가?	쉽고 정확함	
	지킴이 선정위원회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지킴이 선발을 위한 관련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학교별 재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1차 재무, 역량, 건강 등을 평가하고 합격자에 한해 학교 추천후 2차 면접이 이루어짐. 00초: 교감, 행정실장, 학부형, 외부인사 00특수학교: 교장, 교감, 윤리부장, 학부모, 담당교사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지킴이 선정위원회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전문성의 측면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은 적절한가?		적절하다	학교 교장선생님 및 담당교사와 지킴이 관련 학부모 등 학교안팎 안전을 걱정하고 책임지는 인물로 구성되어 있음.
	선정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00특수학교: 80% 00초: 50%	선정위원회의 여성비율보다 실제 의견을 강행할 수 있는 비율이 확인되어야겠음.
지킴이 선발 기준은 적정한가?	지킴이 선발 기준이 '안전한 학교'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적절하다	학생 등 학교 지도 및 취약 시간대 지역 교내 순회 지도 등 '안전'을 위한 선발기준임.
	지킴이 선발 기준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적절하다.	적절함. 실제로 지킴이들은 만족도가 높음. 현재 2년 위촉 후 1년 휴무도 많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음. 예전엔 연임이 가능해서 거의 새로운 지킴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함.
현재의 자격 요건은 직무 관련 필요 조건인가?	지킴이 선정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 가운데 특정 성 또는 계층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없다.	00초 : 초등 지킴이는 일의강도, 근로내역 등 특정 성에 제한이 없음 00특수학교 : 업무상 남성과 여성이 2대1이 좋겠음. 교출행위의 초중고가 모두 모여 있다 보니 지킴이가 3명일 필요가 있음.
	불필요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사업 수혜에 제한이 있지는 않은가?		대상확대필요	00초 : 6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면 꿈나무 지킴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더불어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촉연한을 제한하는 것도 좋겠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직무	지킴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가?	학교폭력 예방,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과 같은 지킴이 활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가?	1년 1회	발대식포함 2회
		지킴이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안전 문제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가?	실시안됨.	00특수학교: 비정기적 실시
	지킴이 배치와 근무 여건은 적절한가?	지킴이로서의 업무가 노인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배되어 있는가?	안배되어있음	근무시간, 노동강도 등 유연성 제공
	지킴이 배치와 근무 여건은 적절한가?	노동 강도나 근로조건 등에서 특정 성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없다.	꿈나무지킴이는 특정성에 구분되지 않음.
	지킴이 역할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 처리 창구가 있는가?	고충처리 창구가 상시적으로 열려있는가?	00초:없다. 00특수학교:있다.	
		(상시적으로 열려 있지는 않다면) 다른 형태의 유사 장치가 존재하는가?	꿈나무지킴이 담당교사	꿈나무 지킴이 담당교사에게 건의함.
		접수된 고충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담당교사-> 학교로전달됨	00특수학교-교문 자바라 게이트 무거워 바닥에 레일요청
	휴게 공간 또는 관련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킴이들이 업무를 준비.마감하고 필요한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제공되는가?	제공됨	컨테이너 박스라 여름과 겨울에 적절한 쉼을제공하지 못함.
		업무 준비와 휴식 등에 필요한 관련 물품들은 적절하게 지원되는가?	00초:안됨 00특수학교:제공됨	00특수학교는 셔틀버스 기사 등 많은 이들이 있어 학교에서 제공함.
	활동일지 작성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긍정하다고 인식하는가?	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는가?	공정함	만족도 조사보다 안전에 더 민감함.
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적극적인 지킴이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여겨지는 않는가?		제약안됨	제약요소라기보다 업무로 받아들임.	

4] 모니터링 결과

가)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총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성폭력 전과' 집행유예 기록을 가진 신청자 선발제외 대상화등 구체적으로 제안됨.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여성꿈나무 지킴이 인력풀 확대방안으로 새일센터 및 각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함.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음. 아직 꿈나무 지킴이가 현저히 적음.

나)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① '여성 꿈나무 지킴이' 인력풀(자격 구비될 수 있는 단체, NGO등)의 확대방안 및 선정 대상의 유연성 필요. : 여성의 재택비율이 높고 TV 보급률이 높으므로 방송 및 자막 홍보가 효과적임.
- ② '성폭력'등의 범죄 집행유예자 또한 사업 신청제외자로 됨으로써 '안전'에 대한 지킴이의 위상을 높임.
- ③ 안전장비(조끼, 호루라기, 모자, 랜턴 등) 제공 및 1인의 최대 위촉연한제한으로 보다 많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꾀함.
- ④ 지킴이 역할에 대한 고충처리 및 지역주민 수렴 창구가 제도화 되고 실시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지킴이 위촉확대 등 성 주류화 정책의 환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학교지킴이사업(배움터지킴이운영)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6월11일(수)
모니터링 장소	D중학교/E고등학교 (모두남.녀공학)
인터뷰 대상자	배움터지킴이 2인
참고자료	2014년도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
작성자	강 전 희

1] 사업 개요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학생생활 지도 (배움터지킴 이 운영)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에 지킴이 1~3명 배치 · 중88교, 고62교, 각종1교 · 등 . 하교 시 교문지도, 취약 지 및 취약시간 순찰, 상담,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배움터지킴이 연수 확대 	302명 (여성9명)	2,5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참여 위해 홍보 강화 (예산 배분 격차 감소) · 남성 참여 독려 위한 이벤트 · 배움터지킴이 2인 이상 배치된 남 녀공학 학교는 1인 이상을 여성배 움터지킴이로 위촉하도록 학교에 협조 요청(학교장 위촉 권한 있음) · 1년에 2회 시행하는 연수에 성폭 력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 선정(세출예산서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컨설팅 1회 진행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교육 실시 ⇒ 반영되지 않음 · 배움터 지킴이의 근무환경 개선 ⇒ 반영되지 않음 · 1학교 1명이 배정된 경우 2명으로 배정하도록 제안 ⇒ 반영되지 않음 	
분석 평가 총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되었음. · 여학교와 배움터 지킴이 2인 이상 배치된 남녀공학학교는 1인 이상 여성배움터지킴이로 채용하도록 학교에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제안된 1명이상 지킴이가 추가로 배치되는 경우 또는 여자 중·고등학교에 섬세한 감성의 여성 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없애는 등 안전한 학교 구축을 하겠다는 개선안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 성인지예산서 작성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 평등 조치사항 중 여성노인의 인력참여를 배움터지킴이 여성비율이라는 성과목표로 반영됨.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 홍보가 확대되었으며 여성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나?	N	운영계획에는 '2명이상 배치학교 중 남녀공학 학교에서는 1명이상의 여성배움터지킴이가 채용될 수 있도록 협조'라는 문구는 있으나 실제 실행여부는 미흡하다고 사료됨. '여성배움터를 찾을 수 없다와 여자가 하기에는 힘들것이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상황임. 모집과정이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학교장에 '남녀공학 학교는 1인 이상을 여성배움터지킴이로 위촉'하는 요청 공문이 발송(또는 운영계획에 반영)되었나?		
	· 연수에 성폭력 예방 교육이 포함되었나?	Y	청소년의 사고변화와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뒷받침하는 교육으로 년1회 실시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사료됨.

㉞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위상	'안전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추진체계에 지킴이 활동이 연계되어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구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3월에 실시하는 발대식 때 지침서 배부 및 교육실시.	학생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사항의 활동내용이 지킴이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에 의지가 보임. 그러나 다양하면서 질적 향상을 요하는 교육이 요구됨.
		지킴이 활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의지가 지침 등으로 표명되어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학교 상담기관, 지역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역사회의 여타 활동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증빙자료 미흡	학교폭력이나 상담의 필요성을 있을 경우는 생활지도교사, 교내 상담교사 혹은 위센터에 연계하지만 사안이 거의 없었음.
	지킴이 활동이 학교 상담기관, 지역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의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는가?	증빙자료 미흡	폭력이나 비행적발 시 학생지도교사에 인계하고, 그 이후 위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해당없음	없음
학교 안전 및 지킴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수렴하는 장치가 있는가?	학교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킴이 활동에 반영되어 있는가? (반영되어 있다면) 어떤 장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수렴되는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없음	배움터지킴이는 교내에서 활동이기 때문에 학교 밖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장치의 필요성을 못 느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선발	지킴이 모집과 관련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지킴이 활동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는가?	각자 활동하셨던 곳에서 연계되고 있음.	지킴이 2인 모두 경찰관 퇴직하시고 연계됨→2인이지만 전직활동이 고르게 활용하여 안배하기 바람.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었는가?	두 분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연락받고 알게 되었다고 함.	각자 활동하셨던 곳에서의 홍보보다 좀더 다양한 홍보가 요구됨.
		홍보 내용은 쉽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는가?	Y	홍보내용은 어려움이 없었다고함.
	지킴이 선정위원회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지킴이 선발을 위한 관련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Y	교장.교감선생님, 학생생활지도부 교사, 학교운영위원회로 구성은 되어있으나 학교장에 의해 선정되고 학생지도부교사가 관리함.
	지킴이 선정위원회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전문성의 측면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은 적절한가?	N	2014년도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의 '선정 시 유의사항'에 위원회구성 내용을 지키지는 않음.
		선정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남녀 구분 없이 학교관계자로 구성	
	지킴이 선발 기준은 적절한가?	지킴이 선발 기준이 '안전한 학교'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안전'의 키워드로 배움터는 경찰관 배치가 다소 많은 편임. 다양한 계층의 노인의 배치가 요구됨.	
지킴이 선발 기준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노인일자리로 적절하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노인으로 선발되길 바람. 일정부분은 저소득층 노인에게도 혜택은 있으나 연금 받고 계시는 노인들은 일자리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현재의 자격 요건은 직무 관련 필요 조건인가?	지킴이 선정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 가운데 특정 성 또는 계층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N	- 2명이상 배치 학교에서는 1명을 저소득층 일반인 중에서~선발.위촉 - 2명이상 배치 학교에서는 1명 이상의 여성 배움터지킴이가 채용될 수 있도록 협조
		불필요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사업 수혜에 제한이 있지는 않은가?	Y	-배움터지킴이 선정대상의 요건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여성노인의 참여도를 높이는 아이디어가 요구됨.
직무	지킴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가?	학교폭력 예방,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과 같은 지킴이 활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가?	년1회워크숍 실시:여름방학에 1박2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년1회는 전시용에 불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분기별, 혹은 최소 발대식을 제외한 년2회 교육이 요구됨.
		지킴이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안전 문제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가?	N	안전교육이 요구됨
	지킴이 배치와 근무 여건은 적절한가?	지킴이로서의 업무가 노인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배되어 있는가?	Y	퇴임 후 노인일자리로서는 좋은 편임. 그러나 연령이 낮은 노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크므로 다양한 연령의 노인일자리로 확대가 요구됨
	지킴이 배치와 근무 여건은 적절한가?	노동 강도나 근로조건 등에서 특정 성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N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이며, 하시는 일이 교내 순찰, 학생안전지도, 시설물 안전, 교통정리 등이므로 여성지킴이가 활동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지킴이 역할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 처리 창구가 있는가?	고충처리 창구가 상시적으로 열려있는가?	Y	오랜 기간의 근무로 서로 알아서 조정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면 잘 조치해주므로 하여 힘든 점은 없음.
(상시적으로 열려 있지는 않다면) 다른 형태의 유사 장치가 존재하는가?		.		
접수된 고충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휴게 공간 또는 관련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킴이들이 업무를 준비.마감하고 필요한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제공되는가?	Y	.지킴이분들이 활동하시는 어려움이 없어 보임. .당사자는 매우만족하고 있었음
		업무 준비와 휴식 등에 필요한 관련 물품들은 적절하게 지원되는가?	Y	
	활동일지 작성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하는가?	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는가?	N	2014년부터 활동일지 작성 금지로 인해 출근부만 기록하고 활동하고 있음.
		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적극적인 지킴이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여겨지는 않는가?		

4]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여성배움터지킴이를 채용하도록 학교에 협조요청의 조치사항은 실행되었으나 강제성이 요구됨.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여성노인의 배움터지킴이 여성비율확대와 현재 활동 중인 지킴이의 분기별 안전교육과 성인지교육이 절실히 요구됨.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여성노인의 인력참여를 배움터지킴이 여성비율이라는 성과목표로 반영은 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음.

㉞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 ① 배움터지킴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제안된 개선안은 일부분만 반영되었음. 2인 이상 배치된 남녀공학학교는 1인 이상 여성배움터 지킴이로 채용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현장에는 여성분이 극히 드문 상태라 반영이 어려움. 공문이 반영될 수 없는 상황임. 여성지킴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함.
- ② 남.녀공학의 경우는 지킴이활동을 남자2인과 여자1인의 배치가 요구됨. 여자화장실점검의 불편함과 여학생 관련한 사안 등이 발생 시 접근이 어려우므로 여자1인을 배치해야 함. 물론 예산의 문제는 있으나 교내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여성노인일자리 확대측면에서 볼 때 예산증대가 요구됨.
- ③ 발대식이외에 여름방학에 실시하는 교육보다는 분기별 교육이 요구됨(안전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청소년의 연령별 발달과정의 특성에 따른 지킴이의 역할 교육 등).
- ④ 지킴이는 학교장이 자원봉사자로 위촉하는 것이지 채용계약이 아니므로 발대식 때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 등에 교육이 요구됨. 지킴이의 개선사항을 대한 질문 시 임금을 최저임금(근로기준법)으로 맞추길 원하며, 오랜 근무로 인해 퇴직금을 언급하기도 했음. 재능기부 차원의 자원봉사를 확대하여 많은 노인에게 고르게 기회를 부여하길 제안함(대부분의 배움터지킴이는 전 직장에서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학교지킴이사업(배움터지킴이운영)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 6. 11(수) 13:00 ~
모니터링 장소	D중학교, 대전E고등학교
인터뷰 대상자	배움터지킴이
참고자료	2012~2013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
작성자	김 순 영

1 사업 개요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학생생활 지도 (배움터지킴 이 운영)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에 지킴이 1~3명 배치 · 중88교, 고62교, 각종1교 · 등 . 학교 시 교문지도, 취약 지 및 취약시간 순찰, 상담,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배움터지킴이 연수 확대 	302명 (여성9명)	2,5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참여 위해 홍보 강화 (예산 배분 격차 감소) · 남성 참여 독려 위한 이벤트 · 배움터지킴이 2인 이상 배치된 남녀공학 학교는 1인 이상을 여 성배움터지킴이로 위촉하도록 학교에 협조 요청(학교장 위촉 권한 있음) · 1년에 2회 시행하는 연수에 성폭 력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 선정(세출예산서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컨설팅 1회 진행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교육실시 ⇒ 반영되지 않음 · 배움터 지킴이의 근무환경 개선 ⇒ 반영되지 않음 · 1학교 1명이 배정된 경우 2명으로 배정하도록 제안 ⇒ 반영되지 않음 	
분석 평가 총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p>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학교와 배움터 지킴이 2인 이상 배치된 남녀공학학교는 1인 이상 여성배움터지킴이로 채용하도록 학교에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 사업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제안된 1명이상 지킴이가 추가로 배치되는 경우 또는 여자 중·고등학교에 섬세한 감성의 여성 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학생들에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게 심리적 거리감을 없애는 등 안전한 학교 구축을 하겠다는 개선안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 평등 조치사항 중 여성노인의 인력참여를 배움터 지킴이 여성비율이라는 성과목표로 반영됨.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 홍보가 확대되었으며 여성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나?	N	· 지킴이들은 주로 경찰, 소방관 출신의 퇴직자들이며 근무지에 지킴이로 활동하기 위한 공문을 받고 학교에 와서 면접을 본 후 활동하고 있었음. · 한 번 채용되면 몇 년을 지속할 수 있는 근무여건으로 채용여건이 바뀌지 않음.
	· 학교장에 '남녀공학 학교는 1인 이상을 여성배움터지킴이로 위촉'하는 요청 공문이 발송(또는 운영계획에 반영)되었나?	N	
	· 연수에 성폭력 예방 교육이 포함되었나?	Y	연 1회 연수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수시로 교육받고 있음.

㉞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위상	'안전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추진체계에 지킴이 활동이 연계되어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구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Y	교육청의 추진목적과 방침에 학교폭력 및 폭력예방 지원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음.
		지킴이 활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의지가 지침 등으로 표명되어 있는가?	Y	
	지킴이 활동이 학교 상담기관, 지역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역사회의 여타 활동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N	학교내의 순찰 및 학생지도를 하고 있으며 학교 후 학교 밖의 순찰은 하나 지역사회와의 긴밀성을 가지고 활동하지는 않음.
	지킴이 활동이 학교 상담기관, 지역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의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는가?		학생들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위센터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학교 안전 및 지킴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수렴하는 장치가 있는가?	학교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킴이 활동에 반영되어 있는가?	N	학교 내에서만 활동하므로 학교 밖의 여건들과의 상관관계는 없으며 상황 또한 알 수 없고 상관하지 않고 있음.
(반영되어 있다면) 어떤 장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수렴되는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선발	지킴이 모집과 관련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지킴이 활동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는가?	N	대부분 경찰서와 소방서의 퇴직자로 근무지로 연락이 와서 서류내고 간단한 면접 후 취업이 되는 상태임. 매년 계약직으로 4년, 6년째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음.(E고) 경찰서로 홍보공문이 와서 09년, 12년부터 시작하심.(D중)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었는가?	N	
		홍보 내용은 쉽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는가?	Y	
	지킴이 선정위원회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지킴이 선발을 위한 관련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학교의 관계자(학생부장, 운영위원회 위원, 교감등)가 참석함.
	지킴이 선정위원회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전문성의 측면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은 적절한가?	N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고 학교의 관계자(학생부장, 운영위원회 위원, 교감등)가 참석함. 선정위원회 여성의 비율은 상관없음
		선정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지킴이 선발 기준은 적정한가?	지킴이 선발 기준이 '안전한 학교'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Y	지킴이의 역할이 등하교지도, 쉬는 시간에 학교 주변을 돌아보면서 문제 학생이 있는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선발기준에는 문제없음.
		지킴이 선발 기준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Y	퇴직 후에 하는 일자리로서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음.
	현재의 자격 요건은 직무 관련 필요 조건인가?	지킴이 선정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 가운데 특정 성 또는 계층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N	학생들의 지도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남녀공학에 여자지킴이를 채용. 배치하도록 협조요청이 있음. 하지만 적극적인 지침으로 바뀌어야 할 것임.
		불필요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사업 수혜에 제한이 있지는 않은가?	N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직무	지킴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가?	학교폭력 예방,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과 같은 지킴이 활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가?	Y	여름방학 중에 1박 2일의 워크숍으로 진행되며 청소년폭력예방 사례발표, 성폭력예방교육의 형식으로 진행됨.
		지킴이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안전 문제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가?	N	안전문제방생의 대처방안 교육은 없음
	지킴이 배치와 근무 여건은 적절한가?	지킴이로서의 업무가 노인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배되어 있는가?	N	퇴임 후의 노인일자리로서는 좋은 편임.
	지킴이 배치와 근무 여건은 적절한가?	노동 강도나 근로조건 등에서 특정 성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Y	근무시간: 07시~15시이며 하는 일이 교내순찰, 학생안전지도, 시설물안전, 교통정리 등이므로 여성이 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봄.
	지킴이 역할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 처리 창구가 있는가?	고충처리 창구가 상시적으로 열려있는가?	Y	힘든 점이 없으며 오래 근무하였으므로 서로 알아서 조정하고 불편한 점은 이야기하면 잘 조치하여 줌.
		(상시적으로 열려 있지 않다면) 다른 형태의 유사 장치가 존재하는가?		
		접수된 고충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휴게 공간 또는 관련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킴이들이 업무를 준비.마감하고 필요한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제공되는가?	Y	독립된 공간이 있으며 물품들은 부족함이 없고 만족해하고 있음.
		업무 준비와 휴식 등에 필요한 관련 물품들은 적절하게 지원되는가?	Y	
	활동일지 작성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하는가?	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는가?	N	올해부터 일지를 쓰는 제도가 없어져서 출근부 기록하고 활동 하면 됨.
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적극적인 지킴이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여겨지지 않는가?		N		

④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개선하기에 적절하기는 하나 구속력이 없으며 추진목적과 학교의 방침이 변하지 않는 한 개선되기 힘들다고 봄.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302명 중에 8명이 여성지킴이로 2013년에 협조요청 지침으로 제시되었으나 비교할 근거가 없어서 성과를 볼 수 없으나 숫자상으로 볼 때 매우 미미한 상소아이라고 볼 수 있음.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① 남녀공학의 경우 남녀지킴이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반반으로 하면 좋겠다고 봄.

→ 2013 운영규정에는 협조사항으로 되어있으나 협조사항으로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함.

이미 채용된 분들이 4년~6년 정도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며 바뀔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임.

지킴이분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남녀공학의 경우 남성지킴이만 있으면 여학생의 지도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됨.

→ 여자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관심 갖고 봐야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문제 등에 있어서는 남자로서 힘든 면이 있음.

→ 여학생의 경우라도 문제가 있다면 좀 힘든 학생들 일 것이므로 여자지킴이는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 것이라고 함.

→ 여자지킴이와 한 사무실에 둘이서만 있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므로 지내기가 힘들 것이라고도 함.

② 지킴이들의 생각으로는 이 일이 여성들이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나 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예방을 중점으로 생각하

므로 유사시에 민첩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남성지킴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됨.

③ 교육의 경우 대부분 연 1회 방학을 이용한 1박 2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교육내용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례관리에 대한 경험나누기 등으로 진행되는데 성평등교육, 학생심리교육, 안전에 관한 위기대응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며

→ 교육내용을 감안하면 연 1회의 교육으로는 부족하고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서 시간을 갖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방학을 이용한 1박 2일의 워크숍을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례인데 학기 초 또는 선정을 조금 일찍하고 발대식을 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봄.

→ 교육의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다면 평생교육원 등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봄.

④ 대부분의 지킴이들이 초등학교와 달리 수 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근로여건이라고 한다면 주로 하는 업무를 학생의 안전 등 폭력에만 초점이 맞추지 말고 학생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의 이면에 있을 문제들)를 포괄하여 친근하게 다가가서 문제의 해결은 힘들다 하더라도 문제를 감지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음.

→ 그러기 위해서 여성지킴이도 채용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봄.

⑤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인맥이나 공공기관의 추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 공직에 근무했던 경험자의 우선채용으로 연금수혜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삶의 질에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음.

→ 공채를 하거나 공문처리를 하여 지킴이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조건을 구비한 사람들을 상담, NGO 기타의 단체에 의뢰하여 채용하는 것도 좋겠음.

. 이러한 것은 ②, ③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봄.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공무원들보다 훨씬 적은 연금을 받는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됨.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학교지킴이사업(배움터지킴이운영)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년 6월 25일 오후 1시 ~ 2시 30분 2014년 6월 25일 오후 3시 ~ 5시
모니터링 장소	대전 00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 대전 00여자고등학교
인터뷰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00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담당교사 - 대전 00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봉사자 3인 - 대전 00여자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담당교사 - 대전 00여자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봉사자 2인
인터뷰 학교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00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 · 학교 현황 : 학급수 27학급 / 학생수 1976명 · 주변환경 : 학교앞 6차선 대로 교문 2곳, 중,고교 함께 있음. - 대전 00여자고등학교 · 학교 현황 : 학급수 43학급 / 학생수 1690명 · 주변환경 : 학교앞 6차선 대로 교문 2곳, 중,고교 함께 있음.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 학년도 꿈나무지킴이 운영 계획 (대전광역시 교육청) - 인터넷 00학교 홈페이지 - 배움터 지킴이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jikimi2008)
작성자	안 명 희

1] 사업 개요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학생생활 지도 (배움터지킴이 운영)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5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에 지킴이 1~3명 배치 · 중88교, 고62교, 각종1교 · 등 . 하교 시 교문지도, 취약지 및 취약시간 순찰, 상담,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배움터지킴이 연수 확대 	302명 (여성9명)	2,5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참여 위해 홍보 강화 (예산 배분 격차 감소) · 남성 참여 독려 위한 이벤트 · 배움터지킴이 2인 이상 배치된 남녀공학 학교는 1인 이상을 여성배움터지킴이로 위촉하도록 학교에 협조 요청(학교장 위촉 권한 있음) · 1년에 2회 시행하는 연수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 선정(세출예산서 근거)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컨설팅 1회 진행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교육 실시 ⇒ 반영되지 않음 배움터 지킴이의 근무환경 개선 ⇒ 반영되지 않음 1학교 1명이 배정된 경우 2명으로 배정하도록 제안 ⇒ 반영되지 않음 	
분석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p>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학교와 배움터 지킴이 2인 이상 배치된 남녀공학학교는 1인 이상 여성배움터지킴이로 채용하도록 학교에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사업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제안된 1명이상 지킴이가 추가로 배치되는 경우 또는 여자 중·고등학교에 섬세한 감성의 여성 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없애는 등 안전한 학교 구축을 하겠다는 개선안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목표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예산서 작성 성 평등 조치사항 중 여성노인의 인력참여를 배움터 지킴이 여성비율이라는 성과목표로 반영됨.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 홍보가 확대되었으며 여성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나?	N	· 없음. ·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란 참조하여 보면 자격요건에 선정대상만 명시되어 있음.
	· 학교장에 '남녀공학 학교는 1인 이상을 여성배움터지킴이로 위촉'하는 요청 공문이 발송(또는 운영계획에 반영)되었나?	Y	· 2013년도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대전광역시교육청)에 "여학교 또는 배움터지킴이가 2명 이상 배치 학교 중 남녀공학 학교에서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1명 이상의 여성 배움터지킴이가 위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
	· 연수에 성폭력 예방 교육이 포함되었나?	Y	· 배움터 지킴이 인터뷰 과정 중에서 교육이 있음을 확인 · 워크숍의 교육은 형식 위주이고 사례 중심이다보니 포괄적 교육이 진행됨.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및 모니터 의견
위상	'안전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추진체계에 지킴이 활동이 연계되어 있는가?	·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에 명시되어 있음. · 실제 현장 활동과 차이가 있음.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구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지킴이 활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의지가 지침 등으로 표명되어 있는가?	

영역	지표		결과 및 모니터 의견
	지킴이 활동이 학교 상담기관, 지역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역사회의 여타 활동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에 명시되어 있음. · 실제 현장 활동과 차이가 있음.
	지킴이 활동이 학교 상담기관, 지역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의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하교시 교통봉사대와 연계해서 주변도로 질서유지 ·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와 연계되어 추진되지는 않음.
	학교 안전 및 지킴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수렴하는 장치가 있는가?	학교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킴이 활동에 반영되어 있는가? (반영되어 있다면) 어떤 장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수렴되는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로 의견이 오면 지킴이실로 전달되는 시스템이기는 하나, 별도의 의견이나 요구는 없음.
선발	지킴이 모집과 관련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지킴이 활동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는가?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었는가? 홍보 내용은 쉽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인력란에 위촉 공고문 공지 · 공고문은 역할과 자격요건 근무시간 등 명시
	지킴이 선정위원회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지킴이 선발을 위한 관련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위원회가 선정위원회의 역할을 담당. · 선정위원회가 있으며, 구성은 교감, 교사, 생활부장, 123학년부장 등으로 구성.

영역	지표		결과 및 모니터 의견
	지킴이 선정위원회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전문성의 측면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은 적절한가?	· 학부형대표. 관련기관의 참여가 아쉬움.
		선정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 여성 비율을 따로 염두해 두지 않으며, 교사의 구성이 여성이 많으면 여성 위원 참여가 높으나 대부분 교감, 교사 부장은 남자교사가 많은 편임.
	지킴이 선발 기준은 적정한가?	지킴이 선발 기준이 '안전한 학교'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 선정대상을 퇴직교원, 군인, 경찰,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건강상태, 연령, 활동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고 명시 되어 있음. 학교에서는 선정대상요건이 학교 안전이 상징적 의미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함.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일반 노인보다는 좋다는 생각임.
		지킴이 선발 기준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 학교 지킴이 선정대상자는 대부분 연금 수령자로서 경제적 여건 때문에 활동을 하다가보다 활동 동기가 사회참여 및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활동함. 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경제적 부분보다 사회참여 부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현재의 자격 요건은 직무 관련 필요 조건인가?	지킴이 선정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 가운데 특정 성 또는 계층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 선정대상을 퇴직교원, 군인, 경찰,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는 일반적 노인이나 여성노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임.
		불필요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사업 수혜에 제한이 있지는 않은가?	· 학교 담당자는 위의 자격 요건을 선호하는 편이나, 일반노인이나 여성노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임.

영역	지표		결과 및 모니터 의견
직무	지킴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가?	학교폭력 예방,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과 같은 지킴이 활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에 상반기 발대식, 하반기 워크숍 진행 · 우수사례로 진행되며 주민과 공조하는 영상교육
		지킴이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안전 문제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이지 않다.
	지킴이 배치와 근무 여건은 적절한가?	지킴이로서의 업무가 노인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배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터 지킴이 활동 선정대상자는 56세 퇴직이후부터 가능하여 꿈나무 지킴이에 비해 활동 연령이 낮으며 경제적 요건도 일자리로서의 개념보다 활동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
	지킴이 배치와 근무 여건은 적절한가?	노동 강도나 근로조건 등에서 특정 성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킴이 인원수에 따라 교대로 활동을 하고 있음. 00여자고등학교의 경우 밤 10시에 끝나는 시간이 있고 야간에 주변 순회 및 외부인 통제 등을 함으로써 다소 여성노인에게는 불리한 여건임.
	지킴이 역할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처리 창구가 있는가?	<p>고충처리 창구가 상시적으로 열려있는가?</p> <p>(상시적으로 열려 있지는 않다면) 다른 형태의 유사 장치가 존재하는가?</p> <p>접수된 고충은 어떻게 처리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담당교사 (생활부장)를 통해 접수가 됨. · 고충을 토로하지 않음.
	휴게 공간 또는 관련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킴이들이 업무를 준비.마감하고 필요한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제공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 고등학교의 경우 별도의 지킴이실이 교실 옆에 마련되어 휴식과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00 여자고등학교의 경우 출구가 여러 곳이라서 교사 옆에 별도의 공간이 있으며, 교문 옆에도 경비실 수준의 별도 공간이 있으나 협소함.

영역	지표		결과 및 모니터 의견
		업무 준비와 휴식 등에 필요한 관련 물품들은 적절하게 지원되는가?	· 책상, 쇼파, 정수기 등 비치
	활동일지 작성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하는가?	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는가? 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적극적인 지킴이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여겨지는 않는가?	· 자체적 활동일지 양식을 작성하고 있으나, 고용형태가 아니라서 공식적인 일지를 작성하지 않음. · 1년에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하나 형식에 그침.

4]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 위촉이 이뤄지면 개인적 이유나 크게 문제화 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수요가 빈번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집 및 선정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불필요함. · 여성의 참여를 위해서는 홍보강화보다는 선정대상 여건을 보완하거나, 학교의 환경을 감안한 활동 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연수 프로그램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 1인 이상의 여성배움터 지킴이를 위촉하도록 학교에 협조하는 것은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나 선정대상, 학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짐.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 미비함.

㉞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①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의 안전과 폭력예방을 위한 상징적 의미에서 선정대상을 퇴직교원, 군인, 경찰,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근무 여건도 오전 7시30분부터 밤 10시 까지 교대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는 여성노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임.
- ② 학교 입장에서도 남성 배움터 지킴이를 선호하는 형편임.
- ③ 또한 여성노인의 경우 선정 대상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 아님을 고려한다면, 홍보나 재제를 통하여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역할, 활동요건, 환경을 개선하여 여성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④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 봉사 위축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문제 발생시 통제나 재제를 할 필요도 있겠으나 그 권한이나 책임은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며 고용관계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고용과 관련된 복리부분은 보장 받지 못한 상태로, 역할이나 처우에 있어서 현실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⑤ 배움터 지킴이의 역할이 등하교지도, 교내순회, 외부인 통제 등 물리적 활동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워크숍이 1년에 한번정도이고 형식에 지나지 않아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학교 폭력 관련한 실질적 교육이 필요함.
- ⑥ 활동영역에 대하여 확대 규정되어 지는 면이 있음.

■ 참고자료 : 학교 지킴이 관련 인터뷰 설문 내용(배움터)

■ 장 소	대전 중구 00 남자고등학교
■ 일 시	2014년 6월 25일
■ 대상자	학교 담당직원 (교사) / 학생부 부장 교사
<p>1. 지킴이 사업(혹은 지킴이 봉사)가 학생들의 안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교사 업무가 많다보니 직접적인 지도가 어려운 일을 합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등하교 교문지도,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문지도, 화장실에서의 흡연지도, 점심, 저녁 급식시간 질서 유지, 교내 순찰 등을 하시는데, 상당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죠. 등하교나, 급식시간에 많은 수 학생이 움직이게 되니까 질서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게 되죠..</p> <p>2. 지킴이 홍보 및 모집 선발에 있어서 여성을 고려하지는 않았는가? - 홍보나 모집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특정 성을 명시하지는 않고요. 규정으로 정해진 자격요건이 있으니까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인력 모집하는 란에 공고를 올립니다. 특별히 여성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p> <p>3. 만약 여성이 선발된다면 예상되는 애로점은 무엇인가? - 우리 학교는 남학교인 특성상 아이들 통제가 어렵죠. 물리적인 면 체력적인 면에서 힘이 들 때도 있고요. 특히 화장실 흡연지도라든지, 간혹 학생 제재도 필요 할때도 있고요. 여성이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p> <p>4. 만약 여성이 선발된다면 더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글썄요.. 특히 뭐 더 좋다고는 생각 못합니다. - 그리고 남자 고등학생들이다보니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p> <p>5. 학교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 안전관련은 야간당직이 있고요. CCTV가 있고, 안전 지킴이 선생님이 3명 정도입니다. 그 중 안전 지킴이 역할이 많이 도움이 되죠.. 특히 쉬는 시간, 교문 관리 라든지, 흡연관리 등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p> <p>6. 지킴이 봉사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 학생들 통제나 질서유지에 상당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내 질서나 안전문제에는 많은 부분 역할을 하고 계시죠.</p>	

■ 장 소	대전 중구 00 남자고등학교
■ 일 시	2014년 6월 25일
■ 대상자	배움터 지킴이 봉사자 / 경력 3~4년차 / 3명
<p>1. 지킴이 모집은 어디에서 정보를 알고 지원하게 되었는가? -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우리는 전직 경찰이라서 사전에 관련 모임에서 정보도 들었고 해서 지원한 거죠.</p> <p>2. 주변에 지킴이 봉사를 하고 있는 여성은 있는가? - 거의 보지 못했다.</p> <p>3. 내가 하는 지킴이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우선 등하교시 교문지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교문 통제 특히 학교앞에 큰 대로가 있으니, 교통 안전지도도 필요하죠. - 그리고 교내순찰, 흡연지도, 등을 하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 지침이나 역할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처음 시작할 때 교육을 다 받았고, 거기에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p> <p>4. 지금하고 있는 일을 여성이 한다면 어떤 점이 어려울 것 같은가? - 여성이 한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 남자 고등학생들이라 아무래도 역센 아이들도 있고, 좀 어렵죠.</p> <p>5. 지킴이 사업(지킴이 봉사)가 학생들의 안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 - 등하교시 학생들이 천명이 넘기 때문에 안전지도가 필요하다. - 교내순찰을 통해서 수업 일탈하는 학생이라든지 흡연 지도 등,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p> <p>6. 배움터 지킴이가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 되는가? - 우리는 전직 경찰이었고, 퇴직을 해서 연금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가 급해서 일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기적으로 (출 퇴근)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공적인 자리에서 봉사를 하다는데 의미가 있다.</p> <p>7. 지금하고 있는 봉사가 만족스러운가? (역할, 기여도, 보수 등)</p>	

- 지금 학교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3명인데 다들 3년에서 4년 정도 된 사람들이다.
 활동시간이 7:30분~ 3:30분 / 9:00~ 5:00 / 11:00 ~ 7:00 인데 3명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에 아주 만족한다. 특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안전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거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것에 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약간의 활동비를 받고 있지만, 보수를 본다면 아침시간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그 정도 보수를 받고는 하기 힘들다.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8. 학교에서 내 업무외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뭐 무리하거나 부당하게 시키지는 않는다. 자발적으로 교내 순회 하다가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하기는 하는데 뭐 크게 역할과 다른 일을 하지는 않는다.

■ 장 소	대전 중구 00 여자고등학교
■ 일 시	2014년 6월 25일
■ 대상자	학교 담당직원 (교사) / 생활부 부장 교사

1. 지킴이 사업(혹은 지킴이 봉사)가 학생들의 안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학교는 여중고가 함께 교문을 쓰고, 학생이 1,700명 정도가 한꺼번에 30분 사이에 등교하고 교사 차량까지 아주 복잡하죠. 등하교 질서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행사 때라든가, 주차관리 등 상당부분 도움이 됩니다. 교내 순회도 하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자연 텃밭 가꾸는 사업과 연계하여 지킴이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도 갖고 있습니다.

2. 지킴이 홍보 및 모집 선발에 있어서 여성을 고려하지는 않았는가?

- 홍보나 모집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특정 성을 명시하지는 않고요.
 - 우리 학교는 현재 계신 분들이 2분은 3년 정도 있으셨고, 한분은 올해 초에 오셨습니다. 전임자가 5년 정도 했었는데 건강상 문제가 있으셔서 새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3. 여학교의 경우 지킴이 2명중 1명은 여성으로 선발하도록 권고 하는데 알고 있는지?

- 아 그런가요?
 - 그런 상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만약 여성이 선발된다면 예상되는 애로점은 무엇인가?

- 제 생각에는 여성이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학교는 3분에서 하는데, 아침 7:30분부터 밤 10시까지 교대로 활동을 합니다.
 특히 밤에는 학교 주변에 순회도 해야 하고, 취객이나, 잡상인 상대도 해야 하고, 여학생이라고 해서 안전하거나 예의 바른 학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

친 학생들도 있어서 상처 받는 일도 있고, 여학교이고 교사 비율도 여자가 높고 만약 유사시에는 대처 할 만한 인력도 없는데, 지킴이 선생님까지 여자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만약 여성이 선발된다면 더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글썄요. 좀 더 세심한 면이 있을 까요? 요즘은 근데 여자 교사라고 해도 학생들 몸수색이나 가방 검사 같이 개인적인 것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학생들 동의도 다 얻어야 하고 특별히 여성이라고 해서 더 좋은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6. 상담업무나 교육도 담당하나요?

- 상담은 상담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은 주로 등하교 장내 질서유지, 외부인 통제 등을 담당 합니다. 문제가 되는 학생을 발견 할 경우 교사나 상담전문가에게 인계하는 것 까지 합니다.

7. 학교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 등하교 봉고차나 학원 픽업차가 교내까지 들어 왔었습니다. 1700여명의 학생과 70이 넘는 교사 차량이 움직이는 등하교 시간에 봉고차량까지 진입해서 아주 복잡했었는데, 지킴이 선생님들이 다 통제하시고 유지 하셔서 정리 되었습니다. 대 규모의 학생들이 이동하다보니 질서유지나 안전문제는 지킴이 선생님들이 상당 부분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이 주택가 이고 공공도서관 시설이 있다 보니, 외부인 통제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야간학습이 끝나는 10시 하교시간에 안전 문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8. 지킴이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지킴이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활동하시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자격요건에서 퇴직한 경찰, 군인, 교원들이 해당 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춘 여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외부인 통제라든지 물리적으로 대처해야 할 일도 있고, 요즘여학생이라 하더라도 통제가 힘든 학생도 있고, 버릇없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상처 받는 부분도 있고. 여성이 전직 경찰 정도 수준이라서 민첩하거나 대처가 가능하다면 모를까, 그리고 그 정도 생활수준이라면 지킴이로 활동하려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우스개소리로 학생들에게 지킴이 선생님들이 전직 경찰이라서 수사 노하우가 있어서 너희들 심리도 다 파악한다. 뭐 그러기도 하거든요. 일부 효과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면, 물리적 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이 어렵다고 봅니다.

■ 장 소	대전 중구 00 여자고등학교
■ 일 시	2014년 6월 25일
■ 대상자	배움터 지킴이 봉사자 / 경력 1~4년차 / 2명

1. 지킴이 모집은 어디에서 정보를 알고 지원하게 되었는가?
 -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전임자가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급하게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위촉해서 바로 활동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바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알아보니 다들 한번 오면 오래 있어서 그렇게 자리가 많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 주변에 지킴이 봉사를 하고 있는 여성은 있는가?
 - 못 봤습니다.
3. 내가 하는 지킴이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교육을 받거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걸 보면, 등하교지도, 학교질서유지, 학생들이나 방문객 교문통제, 교내 순회 그리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관리 등이죠.
4. 지금하고 있는 일을 여성이 한다면 어떤 점이 어려울 것 같은가?
 - 아주 어렵다기 보다는 애로 사항이 있겠죠.
 - 학생들이 생각보다 억세기도 하고요. 주변 외부인 취객이라던지 통제도 어렵고요. 하겠다면 하겠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5. 지금하는 있는 일을 여성이 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은가?
 - 글썄 뭐 더 좋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 흡연지도 하거나 할때 가끔 숨기고 하면 가방이나 호주머니라도 뒤져야 하는데 그럴 때 여자라면 더 좋을까? 그것도 사실 여자든 남자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특별히 더 좋은 것 보다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학생이라 해도 요즘 학생들 중에 말이나 행동이 거친 아이들이 있어서 상처 받기도 쉬울 거고요.
6. 지킴이 사업(지킴이 봉사)가 학생들의 안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글썄 우리는 뭐 나름대로 많이 된다고 보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 특히 등하교때는 중고 학생이 함께 30분 안에 다 등교를 하니깐, 몇천명이 되죠. 거기에 선생님들 차량까지 하면 아침에는 아주 복잡하고요. 학교 앞이 대로라서 차도 많이 다니잖아요. 야간에는 10시에 하교하면 통학 봉고차하고 학원차하고 질서유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학생이지만 담배도 피우고, 교내 지도도 하고요..또 교문이 여러 개고, 교내에 주변 주택가의 도로가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외부인들도 출입이 자유롭죠. 그래서 교문하고 학생들 나가는 교실 입구하고 지킴이 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6. 배움터 지킴이가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 되는가?
 - 우리는 전직 경찰이었고 연금도 받습니다. 이 활동이 꼭 경제적 일자리 차원은 아니고요. 아직 활동할 나이에 퇴직해서 집에만 있을 수 없고, 나름대로 전 직을 살려서 활동도 하고 약간의 보수도 받는 거죠. 보수 차원에서 생계를 해야 한다면 어렵고요. 활동도 하고 매일 출근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또 학교 이다보니 다른 일보다 보람도 있고 그렇죠..

7. 지금하고 있는 봉사가 만족스러운가? (역할, 기여도, 보수 등)

- 네 저는 뭐 좋은 활동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보수를 떠나서 사실 퇴직해서 연금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일 출근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학생들이다보니, 자식 같은 마음도 있고, 다른 일보다 보람을 많이 느끼지요.. 그런데 우리 활동이라는 것이 때로는 학생들을 제재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 권한이나 결정권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지도할 때 간혹 학생들이 그런 면을 알기 때문에 잘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하는 역할과 권한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감안하고 조절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일보다는 보람 있다고 봅니다.

8 학교에서 내 업무 외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 특별히 다른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 교문 옆에 텃밭을 저와 학생들이 함께 가꾸기도 하는데, 이거는 참 좋은 일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육도 되고 저도 즐겁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과 교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학교지킴이사업(배움터지킴이운영)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2014. 6. 25
모니터링 장소	도시중심형 배움터지킴이(00여고, 00고등학교)
인터뷰 대상자	각학교 배움터 지킴이 담당(생활부장), 배움터 지킴이(00여고 2명, 00고등학교 3명)
참고자료	2012 꿈나무지킴이 운영계획,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12.2.6) 2012학년도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2013 꿈나무 지킴이 운영 계획 2013학년도 배움터 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작성자	천 현 옥

1] 사업 개요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학생생활 지도 (배움터지킴 이 운영)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중.고에 지킴이 1~3명 배치 : 중88교, 고62교, 각종1교 . 등 : 하교 시 교문지도, 취 약지 및 취약시간 순찰, 상 담,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배움터지킴이 연수 확대	302명 (여성9명)	2,545	. 여성 참여 위해 홍보 강화 (예산 배분 격차 감소) . 남성 참여 독려 위한 이벤트 . 배움터지킴이 2인 이상 배치된 남 녀공학 학교는 1인 이상을 여성배 움터지킴이로 위촉하도록 학교에 협조 요청(학교장 위촉 권한 있음) . 1년에 2회 시행하는 연수에 성폭 력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동의로 분석평가 절차 종료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 선정(세출 예산서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컨설팅 1회 진행 · 컨설팅 내용 수용, 반영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교육실시 ⇒ 반영되지 않음 · 배움터 지킴이의 근무환경 개선 ⇒ 반영되지 않음 · 1학교 1명이 배정된 경우 2명으로 배정하도록 제안 ⇒ 반영되지 않음 	
분석 평가 충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되었음. · 여학교와 배움터 지킴이 2인 이상 배치된 남녀공학학교는 1인 이상 여성배움터지킴이로 채용하도록 학교에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조치사항은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이 반영된 조치사항임.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서 제안된 1명이상 지킴이가 추가로 배치되는 경우 또는 여자 중·고등학교에 섬세한 감성의 여성 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없애는 등 안전한 학교 구축을 하겠다는 개선안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 성인지예산서 작성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 평등 조치사항 중 여성노인의 인력참여를 배움터 지킴이 여성비율이라는 성과목표로 반영됨.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 홍보가 확대되었으며 여성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나?	N	교육청 홈페이지 위촉공고시 업무 및 자격(제외사항)외 여성참여 독려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음
	· 학교장에 '남녀공학 학교는 1인 이상을 여성배움터지킴이로 위촉'하는 요청 공문이 발송(또는 운영계획에 반영)되었나?	Y	요청 공문은 받았으나 각각 남, 여 학교이며 또한 학교 사정에 맞추어 이해되는 권고사항으로 실질적 위촉은 이루어지지 않음.
	· 연수에 성폭력 예방 교육이 포함되었나?	Y	7월 연수에 포함.

⑥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위상	'안전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추진체계에 지킴이 활동이 연계되어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구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중 추진배경 및 추진목적	추진배경 : 학교 내 폭력 사안의 지속적 발생으로 학교 내·외 안전망 구축필요 추진목적 :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가와의 연계지도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킴이 활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의지가 지침 등으로 표명되어 있는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20조의 5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지킴이 활동이 학교 상담기관, 지역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역의 여타 활동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00고:별점제도 00여고:상담지도	배움터 지킴이 활동의 제약성으로 교내 생활지도부와 연계하여 별점 및 상담지도 함.
	지킴이 활동이 학교 상담기관, 지역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의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는가?	지킴이들의 한계(통제&제재)를 생활지도부와 연계하여 처리	00여고: 흡연 및 복장불량에 관한 상담지도 교통 봉사대와 연계하여 외부버스(학원차량등) 학교안 진입 금지 00고: 흡연 및 교출행위 등 학생 지도부 선생님들과 연계하여 별점제도 및 상담이루어지도록 연계되어 있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학교 안전 및 지킴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수렴하는 장치가 있는가?	학교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킴이 활동에 반영되어 있는가?		
(반영되어 있다면) 어떤 장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수렴되는가?		00여고:한지붕세가족	한지붕 세가족이란 00여중, 00여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 인접해있어 함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장치이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차량(학원버스) 진입을 통제하였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조하여 처리함.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00고:의견없었음	
선발	지킴이 모집과 관련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지킴이 활동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는가?	홈페이지에 위촉공고를 게재하는 것 외에 적극적 홍보 없었음.	교육청 홈페이지와 지킴이들간의 정보전달체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지킴이 활동 대상자들에게 좀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겠음.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었는가?	아니오	교육청 홈페이지와 지킴이들간의 정보전달체계
		홍보 내용은 쉽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는가?	네	홍보 내용은 쉬움.
	지킴이 선정위원회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지킴이 선발을 위한 관련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학교별 인사위원회	00고 : 교장+교감+윤리부장+학부모+담당교사 00여고: 교감+생활지도부장+인성부장+교무
	지킴이 선정위원회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전문성의 측면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은 적절한가?	적절	학교 안전에 관한 측면 적절
		선정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00고:알수없었음 00여고 :20%	00고 : 학교 인사위원회에 관한 내용 확인 안됨. 00여고: 20%(남 4, 여1) * 영향력있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중요. - 단순 여성비율은 의미가 없음
지킴이 선발 기준은 적절한가?	지킴이 선발 기준이 '안전한 학교'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적절	등하교 지도 및 교내순찰 등의 지킴이의 역할이 '안전한 학교'라는 목표에 부합됨.	
	지킴이 선발 기준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적절	약간의 보수와 안정된 일자리(자원봉사) 제공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현재의 자격 요건은 직무 관련 필요 조건인가?	지킴이 선정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 가운데 특정 성 또는 계층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자격요건을 만족할 만한 여성이 별로 없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위촉하는데 컴퓨터 사용이 원활하지 못해 공고를 볼 수 없거나 선정대상기준 정도의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60세 이상의 여성 혹은 취약층이 많음.
		불필요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사업 수혜에 제한이 있지는 않은가?	사업수혜:국한됨	00여고 : 4년, 6개월 00고: 5년, 4년, 3년 연임될 정도로 새로운 지킴이 활동자가 위촉되지 못함
직무	지킴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가?	학교폭력 예방,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과 같은 지킴이 활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가?	1년에 1회	학교 폭력 예방 지킴이 사업관련 7월 연수
		지킴이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안전 문제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가?	1년에 1회	7월-8월 연수 및 비공식적 워크숍
	지킴이 배치와 근무 여건은 적절한가?	지킴이로서의 업무가 노인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배되어 있는가?	출퇴근 : 교대로 정해 시간업무	학교 공고 후 근거리, 교대근무 등 노인일자리의 특성에 맞게 안배됨.
	지킴이 배치와 근무 여건은 적절한가?	노동 강도나 근로조건 등에서 특정 성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안전'에 관해 등하교 시간이 비교적 늦은 배움터 지킴이는 남성을 선호	00고 : 남학생들에게 훈계 혹은 지도시 '여성'은 어려울 것이라 이야기함. 00여고: 늦은 시간 외부 순찰시 '여성' 지킴이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고 생각함.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지킴이 역할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 처리 창구가 있는가?	고충처리 창구가 상시적으로 열려있는가?	없음	각 배움터 지킴이 담당교사에게 고충을 이야기해야 하기에 실질적인 고충을 이야기하기 어려워 보임
		(상시적으로 열려 있지는 않다면) 다른 형태의 유사 장치가 존재하는가?	배움터지킴이 담당교사	
		접수된 고충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접수된바 없음	
	휴게 공간 또는 관련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킴이들이 업무를 준비.마감하고 필요한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제공되는가?	있음	00여고 : 컨테이너 박스 00고: 학교내 일정공간 있음.
		업무 준비와 휴식 등에 필요한 관련 물품들은 적절하게 지원되는가?	있음	음료, 테이블, 의자
	활동일지 작성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하는가?	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는가?	없음 00고: 기록안함	00여고는 활동일지 및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부담은 없음. 이는 00고처럼 대다수의 학교가 현재 활동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어 부담감이 없을 수도 있으며, 활동일지를 기재하는 않는 것은 퇴직금등의 행정소송 문제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임.
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적극적인 지킴이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여겨지는 않는가?		없음		

4]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정책개선안 관련 여성참여 홍보강화 및 남성 참여 독려 등 추진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나 발대식포함 1년 2회 등의 연수는 실질적이지 않으며 성폭력예방 교육은 발대식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함.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여성참여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나 모니터링 결과 홍보는 공문관련한 사항이 전부임.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여중, 여고에서조차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여성 배움터 지킴이를 기피하고 있음. '안전'에 관한 합의된 직무와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어야 여성 배움터 지킴이의 필요성과 예방에 관하여 좀 더 관심을 둘 수 있으리라 생각됨.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 ① '안전'과 '여성배움터 지킴이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 및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사례 워크숍' 진행 : 평생교육원 및 교육청 홍보사업에서 진행할 수 있음.
- ②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학교폭력' 등을 연2회 이상 실시하되, 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VOD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지킴이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③ 인력풀(자격 구비될 수 있는 단체, NGO등)을 작성하여 보다 많은 지킴이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함.
- ④ 지킴이 역할에 대한 고충처리 및 지역주민 수렴 창구가 제도화 되고 실시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위촉을 넘어 소통하는 제도적 안전과 여성지킴이 위촉확대 등 성 주류화 정착의 환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부 록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양식

부록.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양식

1. 공원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모니터링 장소	
인터뷰 대상자	
참고자료	
작성자	

□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분석 평가 총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어떤 분석을 근거로 어떤 개선안 내었는지 요약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이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는가? (※ 단순 시설계획은 제외함)	조성(또는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또는 의견 수렴 단계가 있는가? (그런 단계가 있다면) 어떤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그런 단계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은 어떠한가?	관련 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참여 비율은?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은? 여성 위원의 직업군은?	
	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참여 장치가 있는가?	공원 관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장치가 있는가? (그런 장치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가? 지역 여성들의 참여 비율은?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그런 장치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접근성	공원의 물리적 환경이 돌봄 책임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는가? (※ 소규모 공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모차, 휠체어, 실버카 대여 서비스 (관리사무소 내부나 인근) .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설치 . 장애인 화장실 설치 ※ 법령 확인 요 . 휴게시설(의자 등)의 규칙적 설치 (200m 이내마다) (※ 200m² 미만 제외) . Barrier-Free 보행로 : 보도폭 2m이상 (최소 1.5m 이상),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 단차가 없거나 2cm 이하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근력 운동 관련 시설의 경우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분리 설치나 높이·무게 등의 조정 가능)		
	운동·체육시설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디)축구장 설치 시 게이트볼장 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그 밖의 부대시설 설치 시, 여성·남성 모두 이용 가능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한가? (※ 어린이 공원 제외)	대중교통 시설에서 출입구까지 이내도 보로 5분 이내—300m— 거리에 위치하여 누구나 이용이 용이한지 점검		
	시설 이용 관련 불편사항 접수창구가 개방되어 있으며, 민원 대처는 신속히 이루어지는가?	<p>불편사항을 고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창구(또는 관련 정보)가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p> <p>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되는가?</p>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안전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적용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조도 (가로등은 20미터 간격이 내 또는 3-4m 전방에 있는 사람 얼굴 인식) . 안전한 시야 확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에 개방된 조경 - 휴식공간의 시야확보 - 시설물 주변(화장실 등) 		
	공원 조성(또는 리모델링) 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요소(CPTED)가 고려·적용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이 용이한 위치에 놀이 공간 설치 여부 . 비상시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 설치 여부(대형 공원, 지하 주차장, 화장실) . CCTV 설치 여부 (사각지대 방지에만 활용) . 정기적인 순찰 여부 		
	공원 내 설치 시설물의 안전 상태는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합격 여부 (www.cpf.go.kr) 		
	공원 내 설치 시설물의 안전 상태는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 여부 (2년마다 검사기관 정기시설 검사) 		
	공원 내 설치 시설물의 안전 상태는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 안내판 : 놀이터 구조물이 2-5세 대상인지 또는 5-12세 대상인지 연령대별 놀이터 디자인 명시 여부 		
	공원 내 설치 시설물의 안전 상태는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기구의 안전성 여부 (파손, 돌출, 엮매이면 빠지기 힘든 구조, 충돌 방지 공간 및 낙하할 때 적정 높이) 		
	공원 내 설치 시설물의 안전 상태는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치와 간이 정자 등 휴게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4]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조 치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2. 방문건강관리사업

2-1. 동구, 서구, 유성구(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는 경우)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분 야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모니터링 장소	
인터뷰 대상자	
참고자료	
작성자	

□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분석 평가 총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어떤 분석을 근거로 어떤 개선안 내었는지 요약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수립에 지역 여성 건강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가?		
	(참여한다면)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가?	※ 위원회, 자문단 등 서술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참여 계획이 있는가?		
접근성	관내 사업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자 및 생애전환기검진자 중 검진사후관리 동의자)에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누구를 대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가?		
	정보 제공 방식은 무엇인가?	※ 팸플렛, 홈페이지 등... 서술	
	제공되는 정보에는 '검진사후 관리 동의'해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되고 있는가?		
사업 대상자는 성별 취약계층(기초 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인 취약계층(기초 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별 성별 현황.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는 실적 보고서에는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 내 가구수, 등록가구수 현황이 있음.(성별 분리통계 상태는 아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프로그램별 (행태개선, 만성질환관리, 생애 주기 건강문제관리, 다문화 및 이탈주민관리, 장애인 재활관리)성별 대상자 현황 차이가 있는가?		<p>_____ 프로그램남_명여_명</p> <p>_____ 프로그램남_명여_명</p> <p>_____ 프로그램남_명여_명</p> <p>_____ 프로그램남_명여_명</p> <p>_____ 프로그램남_명여_명</p>	
방문건강관리사업 조사(가구조사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보건복지부 실적보고 이외에 자체 모니터링을 의미	※ 가구조사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의 부록 참조		
	누가 모니터링 하는가?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모니터링에서 여성 건강문제 인식을 통한 사업개선실적이 있는가?		
	대상자 재평가(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없거나, 미방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퇴락하는 대상자의 성별 현황 차이가 있는가?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내부 자원 연계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내부 자원 연계(대상자 기준) 남성 ()명,여성()명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프로그램별 (행태개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 건강문제관리, 다문화 및 이탈주민관리, 장애인 재활관리)성별 대상자 현황 차이가 있는가?	_____ 프로그램남_명여_명 _____ 프로그램남_명여_명 _____ 프로그램남_명여_명 _____ 프로그램남_명여_명 _____ 프로그램남_명여_명	
	방문건강관리사업 조사(가구조사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보건복지부 실적보고 이외에 자체 모니터링을 의미	※ 가구조사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의 부록 참조	
		누가 모니터링 하는가?	
		모니터링에서 여성 건강문제 인식을 통한 사업개선실적이 있는가?	
	대상자 재평가(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없거나, 미방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퇴락하는 대상자의 성별 현황 차이가 있는가?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내부 자원 연계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내부 자원 연계(대상자 기준) 남성 ()명,여성()명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보건소 외부 자원 연계 대상에는 지역사회 내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고루 포함되어 있는가?	※ 연계 기관명 확인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외부 자원 연계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외부 자원 연계(대상자 기준) 남성 ()명,여성()명	
		남성들에게 주로 연계된 서비스는 무엇인가?		
		여성들에게 주로 연계된 서비스는 무엇인가?		
		무력감과 우울 등의 정서적인 문제 관련 서비스 연계도 추진되고 있는가?		
서비스 제공 자근 무 여건	전문 인력 채용시 저소득 및 무직 가구원(특히 여성) 우선 채용(사업지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간호사 1인당 관리 가구 수는 적정한가?	간호사 1인당()가구		
	요주의 대상자 방문 시 동행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동행방문여부 주요 동행자		
	다른 성(sex)의 대상자를 방문하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가?			
	가구 방문까지의 이동 여건은 적정한가?	주요 통행 수단 통행 수단 접근성		
	휴게 및 휴식 여건은 적정한가?			

4]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 조치의 총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2-2. 동구, 서구, 유성구(성별영향분석평가가 없는 경우)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보고서(성별 분석 없는 경우)

사업 분야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모니터링 장소	
인터뷰 대상자	
참고자료	
작성자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근거 법률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2 사업 모니터링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수립에 지역 여성 건강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가?		
	(참여한다면)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참여 계획이 있는가?	※ 위원회, 자문단 등 서술	
접근성	관내 사업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자 및 생애전환기검진자 중 검진사후관리 동의자)에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가?		
	정보 제공 방식은 무엇인가?	※ 팸플릿, 홈페이지 등... 서술	
	제공되는 정보에는 '검진사후관리 동의'해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되고 있는가?		
	사업 대상자는 성별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중 건강	* 사업대상자인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p>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가?</p> <p>거노인 등)별 성별 현황.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는 실적 보고서에는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 내 가구수, 등록가구수 현황이 있음. (성별 분리통계 상태는 아님)</p>		
	<p>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프로그램별 (행태개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 건강문제관리, 다문화 및 이탈주민관리, 장애인 재활관리)성별 대상자 현황 차이가 있는가?</p>	<p>____ 프로그램남_명여_명 ____ 프로그램남_명여_명 ____ 프로그램남_명여_명 ____ 프로그램남_명여_명 ____ 프로그램남_명여_명</p>	
	<p>방문건강관리사업 조사(가구조사표)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건복지부 실적보고 이외에 자체 모니터링을 의미</p>	<p>※가구조사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의 부록 참조</p>	
		<p>누가 모니터링 하는가?</p>	
		<p>모니터링에서 여성 건강문제 인식을 통한 사업개선실적이 있는가?</p>	
	<p>대상자 재평가(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없거나, 미방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퇴락하는 대상자의 성별 현황 차이가 있는가?</p>		
	<p>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내부 자원 연계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p>	<p>내부 자원 연계(대상자 기준) 남성()명,여성()명</p>	
	<p>보건소 외부 자원 연계 대상에는 지역사회 내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고루 포함되어 있는가?</p>	<p>※ 연계 기관명 확인</p>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외부 자원 연계는 성별로 고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외부 자원 연계(대상자 기준) 남성 ()명,여성()명	
		남성들에게 주로 연계된 서비스는 무엇인가?	
		여성들에게 주로 연계된 서비스는 무엇인가?	
		무력감과 우울 등의 정서적인 문제 관련 서비스 연계도 추진되고 있는가?	
서비스 제공 자근 무 여건	전문 인력 채용시 저소득 및 무직 가구원(특히 여성) 우선 채용(사업지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간호사 1인당 관리 가구 수는 적정인가	간호사 1인당()가구	
	요주의 대상자 방문 시 동행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동행방문여부 주요 동행자	
	다른 성(sex)의 대상자를 방문하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가		
	가구 방문까지의 이동 여건은 적정인가	주요 통행 수단 통행 수단 접근성	
	휴게 및 휴식 여건은 적정인가		

③ 사업에 대한 약평 및 제언

3. 평생교육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업 분야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모니터링 장소	
인터뷰 대상자	
참고자료	
작성자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분석 평가 총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어떤 분석을 근거로 어떤 개선안 내었는지 요약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적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는가?	
		(절차가 있다면) 어떤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절차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주민을 참여토록 할 계획이 있는가?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과정은 누가, 어떻게 모니터링·평가하는가?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진다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주민 참여 모니터링·평가 실시 계획이 있는가?		
전문성	프로그램의 강사진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강사 선발 기준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며, 관련 자격 요건은 구비되어 있는가?		
		강사 구성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강사로 참여하는 데 성별에 따른 제한 요소는 없는가?		
	프로그램의 강사진에게 전문성에 적합한 근무 여건이 제공되는가?	성별에 따른 불평등 요소는 없는가?		
		강사 1인당 수강생 수는 적정한가?		
		휴게 및 휴식 여건은 적절한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접근이 쉬운가?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가?		
		쉽게 눈에 띄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전달되는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전달되는가?		
	프로그램의 신청·접수는 용이한가?	프로그램 이용자의 성별·연령별 및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는가?		
		프로그램 신청·접수에 필요한 적절한 안내가 제공되는가?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p>교육비/이용료 부담 등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없는가?</p> <p>성별 역할로 인해 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없는가?</p> <p>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 기회 접근의 제약 요소가 없는가?</p>		교육비/이용료의 1인당 평균 수준은?		
		해당 교육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비/이용료가 책정되었는가?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비/이용료 지원이 있는가?		
		교육 시간대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일시 돌봄 지원(연계 또는 정보 제공) 등의 조치가 취해져 있는가?		
		교육 장소가 보행 및 대중교통 접근 가능 지역에 위치하는가?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든' 주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가?	프로그램은 주민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프로그램 정원은 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되는가?		
		성별 분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예: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제과제빵, 반찬 / 남성 취창업 프로그램-제도, 목공)은 개설되어 있지 않은가?		
	취업자/비취업자의 이용 가능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연계성 (대전시와 서구만 평가)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이후 후속 프로그램으로 적절히 연결되는가?	해당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또는 구정 참여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있다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가?		
		(효과가 없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 개선 계획은 있는가?		

4]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조 치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4. 지킴이사업

2012년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 모니터링 보고서

사업 분야	
모니터링 일시 및 시간	
모니터링 장소	
인터뷰 대상자	
참고자료	
작성자	

1] 사업 개요

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추진 근거	주요 내용	실적	예산(백만)	성 평등 조치사항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영역	지표	해설	센터 작성	비고
추진 절차 적정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한 추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 분석평가서 제출 여부 · 종합분석보고서에 해당 과제 실적 제출 여부 등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회 구성(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현황 · 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 위원회 이외의 방법이였다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는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팅턴트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단계에 컨설팅이 활용되었는지 · 컨설팅은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컨설팅 내용이 적절히 수용·반영되었는지 		
분석 평가 총실성	분석평가 제안된 개선안은 모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사업 수혜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개선안의 성 평등 조치사항 반영 	※어떤 분석을 근거로 어떤 개선안 내었는지 요약	
	성인지예산서 작성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 성 평등 조치사항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반영 여부 		

3]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영역	지표	반영결과	
		평가(Y/N)	모니터 의견
이행 점검			

㉡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위상	'안전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추진체계에 지킴이 활동이 연계되어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구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지킴이 활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의지가 지침 등으로 표명되어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학교 상담기관, 지역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역사회의 여타 활동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 연계 활동 명 확인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의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학교 안전 및 지킴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수렴하는 장치가 있는가?	학교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킴이 활동에 반영되어 있는가?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반영되어 있다면) 어떤 장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수렴되는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가?		
선발	지킴이 모집과 관련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지킴이 활동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는가?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었는가?		
		홍보 내용은 쉽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는가?		
	지킴이 선정위원회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지킴이 선발을 위한 관련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전문성의 측면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은 적절한가?		
		선정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지킴이 선발 기준은 적절한가?	지킴이 선발 기준이 '안전한 학교'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지킴이 선발 기준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현재의 자격 요건은 직무 관련 필요조건인가?	지킴이 선정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 가운데 특정성 또는 계층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불필요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사업 수혜에 제한이 있지는 않은가?			
직무	지킴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가?	학교폭력 예방,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과 같은 지킴이 활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가?		
		지킴이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안전 문제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가?		

영역	지표		결과	모니터 의견
	지킴이 배치와 근무 여건은 적절한가?	지킴이로서의 업무가 노인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배되어 있는가?		
		노동 강도나 근로조건 등에서 특정 성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지킴이 역할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처리 창구가 있는가?	고충처리 창구가 상시적으로 열려있는가?		
		(상시적으로 열려 있지는 않다면) 다른 형태의 유사 장치가 존재하는가?		
		접수된 고충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휴게 공간 또는 관련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킴이들이 업무를 준비.마감하고 필요한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제공되는가?		
업무 준비와 휴식 등에 필요한 관련 물품들은 적절하게 지원되는가?				
활동일지 작성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긍정하다고 인식하는가?	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는가?			
	지킴이 활동일지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적극적인 지킴이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여겨지는 않는가?			

4] 모니터링 결과

㉠ 성 평등 조치의 타당성

영역	지표	내용	모니터 의견
성평등조 치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정책개선안이 구체적인가?	정책개선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	
	정책개선안의 내용은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정책개선안이 해당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점검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는지 점검	

㉡ 제언(행정의 책무성 및 분석평가 실효성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

발행일 2014년 9월
발행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대전발전연구원
전화: 042-530-3548~50 팩스: 042-530-3559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gfcenter/main.do>

이 보고서의 내용은 모니터링 활동가들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